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 및
인권보호 개선방안**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 및
인권보호 개선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책임연구관 김 윤 영

차 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연구의 검토	4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9
1. 연구의 방법	9
2. 연구의 한계	11
3. 연구의 방향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5
제1절 개념 정의	15
1. 탈북자의 개념 및 법적 지위	15
가. 탈북자 개념	15
나.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한계	17
2. 강제송환 개념	20
3. 인권 개념	20
가. 보편적 인권 개념	20
나. 북한의 인권개념	21
제2절 탈북 과정	25
1. 탈북 요인	25
가. 내부적 요인	26
나. 외부적 요인	31
다. 탈북여성의 증가 요인	34

2. 탈출 경로	35
3. 탈북 유형	36
가. 단순 왕래형 탈북	36
나. 장기체류 탈북	37
다. 완전 탈북	38
4. 국외체류 기간	38
제3장 중국의 탈북자 정책 및 강제송환	40
제1절 중국의 탈북자 대책 및 체류유형	40
1. 중국의 탈북자 대책	40
가. 중국의 탈북자 처리 지침	40
나. 중국정부의 탈북자 대응 태도	42
다. 탈북자 구금시설	43
2. 중국체류 탈북자 유형	45
가. 친인척의 도움	45
나. 노동력 제공 후 은신처 확보	45
다. 현지인과 동거	46
라. 주거지 없이 배회	47
마. 현지 적응	47
제2절 중국체류 탈북자 및 강제송환 실태	48
1.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및 감소 요인	48
가.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48
나. 중국체류 탈북자 감소 요인	56
2. 중국체류 탈북자 강제송환 규모	59
제4장 북한의 탈북자 정책 및 탈북자 구금시설	64

제1절 북한의 탈북자 처벌 규정 및 대책	64
1. 탈북자 처벌 규정 및 과정	64
가. 탈북자 처벌 규정	64
나. 탈북자 처벌과정	67
2. 북한의 탈북자 대책	69
가. 탈북방지 단속 강화	69
나. 해외체류 탈북자 강제송환과 회유	77
다. 남한정착 탈북자 협박과 역공작	81
제2절 북한의 탈북자 구금시설	84
1. 인민보안부 구금시설	84
가. 구류장	85
나. 로동단련대	86
다. 집결소	87
라. 교화소	88
2. 국가안전보위부 구금시설	91
가. 보위부 구류장	92
나.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92
제5장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98
제1절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98
1. 체류과정에서의 인권침해	98
가. 인신매매	98
나. 노동력 착취	101
다. 건강악화	101
2. 체포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103
가. 공안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103

나. 변방부대에서 인권침해	103
제2절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104
1.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104
가. 인민보안부	104
나. 국가안전보위부	111
2. 공개처형에 의한 인권침해	119
3. 위장탈북 남파간첩	122
제6장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보호 개선방안	125
제1절 국내차원의 탈북자 인권보호	125
1. 범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125
가. 국민의 인식전환	125
나. 국민적 여론수렴 및 정책홍보	126
다. 사회적 관심과 역량 제고	127
2. 국내법의 재검토	128
가. 탈북자 인권보호법 마련	128
나. 탈북자 정착지원법 개정	130
다. 대규모 탈북난민 수용법 마련	130
3. 신변보호 시스템의 재검토	132
가. 위장탈북 검증체계 강화	132
나. 신변위해 요인 차단	133
다. 인권보호 활동의 과학화	136
4. ‘탈북자 인권침해기록 보존소’ 신설	138
5. 탈북자 인권침해 사례 분석자료 지원	139
제2절 국외차원의 탈북자 인권보호	140
1. 국제법의 재검토	140

가. 탈북자의 난민자격 지원	140
나. 난민협약에 의한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142
다. 범인 인도협정상 강제송환 재검토	143
2. 탈북자 관련국과의 관계 재정립	144
가. 중국	144
나. 북한	146
3. 국외 탈북자 체류지 지원	147
가. 현지인 중심의 지원 활동	147
나. 재정착 시스템 지원방안	148
다. 자본주의 체제 동화 프로그램 지원	150
라. 무국적 아동의 보호	151
4. 국제적 지위 보장을 위한 협력	153
가. UN기구와의 협력	153
나. UNHCR의 지원활동	155
다. 국제 NGO의 지원	155
라. 지역 난민협정 체결	156
5. 국제사회 네트워크 구축	156
제7장 결론	159
<참고 문헌>	164
<부 록>	173
I. 북한 탈북자 비난 및 위협 보도 자료 원문	173
1.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173
2.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연합성명	176
3. 남조선에 끌려간 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178
II. “휴먼라이츠워치(HRW) 『북한 도강자(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정책』 보고서 원문	179

표 차례

<표 2-1> 탈북자의 분류	16
<표 2-2> 탈북자 관련 용어	17
<표 2-3> 북한의 사전적 인권개념 변화	25
<표 2-4> 배급중단 후 생계수단(복수응답)	27
<표 2-5> 탈북자 가족 비율	33
<표 2-6> 탈북자 탈출 및 국내입국 경로	35
<표 2-7> 국외체류탈북자 국가별 국내입국 대기 기간	38
<표 3-1> ‘국경지역업무협정’ 주요 조항	42
<표 3-2> 중국정부의 탈북자 대응 태도	43
<표 3-3> 1990년대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추정	50
<표 3-4> 좋은벗들의 2005, 2006 중국체류 탈북자 조사 결과	53
<표 3-5> 2000~2010년 각 기관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추정	54
<표 3-6>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경험이 있습니까?	60
<표 3-7> 탈북자의 강제송환 경험자 비율	61
<표 3-8> 중국변방 부대 수감 탈북자 현황(2003년 12월 현재)	62
<표 3-9> 2010년 국내입국 탈북자 대상 강제송환 경험 조사	62
<표 4-1> 북한형법의 탈북관련 처벌 조항	66
<표 4-2> 강제송환 탈북자 국경보위부 처벌 내용	67
<표 4-3> 주요 정치범수용소(관리소) 현황	95
<표 5-1> 2004~2007년 6월 탈북자 건강검진 수검현황	102
<표 5-2> 귀하께서 노동단련대 이상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 ·	108

<표 5-3> 귀하께서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노동단련대 이상을 벌을 받았다면, 재판절차를 거쳤습니까? 108

<표 5-4> 북한 국경지역 보위부 현황 및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침해 내용 .. 113

<표 6-1> 국외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안 수정(안) 128

<표 6-2>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과 154

그림 차례

<그림 1-1>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시공간적 이동 경로 10

<그림 2-1> 귀하는 왜 탈북했습니까?(%) 26

<그림 3-1> 2006년 재중 탈북자 실태조사 지역 52

<그림 4-1> 강제송환 탈북자 처벌과정 68

<그림 4-2> 국경지역 탈북단속 강화 사례 71

<그림 4-3> 탈북단속 교양 사례 73

<그림 4-4>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탈북자 회유 성명서 80

<그림 4-5> 인터넷을 통한 국내탈북자 갈등 조장 83

<그림 4-6> 농포집결소 88

<그림 4-7> 함북 회령 전거리 교화소(제12교화소) 89

<그림 4-8> 북한 관리소 및 교화소 90

<그림 4-9> 북한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현황 93

<그림 4-10> 북한 요덕수용소 94

<그림 4-11> 제14호 정치범수용소 형태 97

<그림 5-1> 변방부대 인권침해 사례 104

<그림 5-2> 귀하의 투옥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105

<그림 5-3> 보안서 구류장 인권침해 사례	106
<그림 5-4> 본인이나 가족의 로동단련대 수감 경험 여부	107
<그림 5-5> 집결소 인권침해 사례	109
<그림 5-6> 교화소 수용자 생활준칙 예	110
<그림 5-7> 본인이나 가족의 북한교화소 수용 경험 여부	110
<그림 5-8> 교화소 인권침해 사례	111
<그림 5-9> 보위부 구류장 인권침해 사례	113
<그림 5-10> 사형집행 알림	115
<그림 5-11>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지켜야할 10대 법과 규정	115
<그림 5-12> 귀하는 수용소로 보내진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17
<그림 5-13> 귀하가 북한의 수용소에서 경험한 폭력은 무엇입니까?(%)	117
<그림 5-14> 본인이나 가족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 경험 여부	118
<그림 5-15> 정치범죄 재판 인지 여부	118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 및 인권보호 개선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목적

최근 언론매체들은 북한주민들이 탈북을 시도하다 북한당국에 적발되어 사살되는 사례를 빈번하게 보도하고 있다.¹⁾ 그럼에도 이들은 목숨을 담보로 국경을 넘는 순간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라는 최악의 신분으로 전락되어 인신매매나 성매매, 노동력 착취와 폭력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당하지만 현지 국가나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주민들의 탈북 요인은 북한의 정치 경제적(식량난) 상황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전체주의적 일인독재체제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소수의 주민들이 탈북을 했다면, 1990년 중반부터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생존권 차

* 김윤영(문학박사: 북한문학전공)

1) “김정은 “탈북자 사살해도 좋다” 명령에… 北, 중국땅 밟은 5명 추격해 사살”, 조선일보, 2011.1.11.

원에서 수십 만 명의 탈북자가 발생하자,²⁾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북한당국의 국경경비 및 국경지역에 대한 감시와 통제 강화, 중국당국의 대대적인 탈북자 단속과 강제북송 등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 최근의 중국 체류 탈북자는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5만 명 선으로 추정되고, 국내입국 탈북자는 2011년 5월 현재 2만 1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주민들의 탈북행렬은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 등 북한체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여있다.

우리정부는 그동안 국외체류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최대의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북한과 처리할 당사국과의 문제로 보고 국제기구나 제3국의 관여를 거부하며 불법월경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1960년 북한과 체결한 ‘조·중 밀입국자범죄인상호인도협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여 검거한 후 강제 송환하고 있다. 중국동포(조선족) 역시 탈북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거나 지원하다 적발되면 ‘국경관리방해죄’로 처벌 받는다. 중국정부는 2008년 북경 올림픽 기간 중 탈북자들이 소요(외국공관 진입, 국경질서 문란, 난민신청 등)를 일으킬 수 있다는 미명하에 동북지방(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중심으로 3만 여명을 체포하여 강제 북송하였다.³⁾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북한주민과 탈북자는 우리국민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정부는 불법체류자로 체포되어 인간 이하의 인권침해를 당하고

2)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최대 10-40만명의 탈북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6, 237면).

3) 한영진, “北 국경강화, 中 올림픽 대비 탈북자 3만명 체포 돌입”, 북한, 2008년 3월호, 북한연구소, 121면에서 재인용.

있는 강제송환 탈북자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해야하는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다. 결국, 강제송환 탈북자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정일 이후의 북한체제의 변화가 예상되고 남북통일시대가 구호가 아닌 현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는 속에서 그들의 성공적인 국내외 정착과 국제사회의 포용 여부는 향후 남북통합의 성과를 좌우하는 바로미터(barometer)가 될 수 있다.⁴⁾

북한은 탈북자 문제를 책임지고 보호해야 당사국이나 중국 내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외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공화국’을 배반한 배신자로 낙인찍어 강제송환한 후 노동단련형이나 노동교화형, 정치범 수용소 강제수용, 공개처형 등의 정치적 탄압을 통해 체제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⁵⁾ 특별히 정치적 이용 가치가 있는 자는 다시 한 번 김정일 부자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명분하에 대남공작원으로 양성시킨 후 탈북자로 위장시켜 남파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그동안 탈북자 문제와 관련된 연구들은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통한 기존 체험을 토대로 탈북자들의 국외체류 생활실태나 국내입국 경로, 국내정착 문제 등에 주된 관심을 가져왔을 뿐,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⁶⁾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중국 및 북한의 강제송환 탈북자 정책과 탈북자 수용시설 및 인권침해 실태를 중심으로 고찰한 후 탈북자들의

4)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0, 3-4면.

5)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각종 박해를 받다가 1992년 탈북한 조선일보 강철환 기자는 2005년 9월 5일 영국의회 기자회견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 중 3분의 1은 김정일 정권에 의해 처형당하거나 고문으로 생명을 잃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강제송환된 탈북자 중 3분의 1가량이 처형됩니다”, 데일리 차이나; <http://dailychina.net>, 2009.9.9); 2011년 6월 2일 면접한 강제송환 탈북여성 김○○(여 40세, 양강도 출신)도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 주었다.

6)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4-10면 참조.

인권보호 개선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글이 경찰과 관련한 보고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탈북자 신변보호시스템과 관련해서는 미시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북한의 탈북자 인권탄압 문제를 국내외적으로 공론화하여 인권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한과 중국 등 제3국을 모두 경험한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지원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는 물론, 향후 남북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남북주민의 의식과 문화의 갈등문제, 치안환경의 과도기적 현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선행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의 검토

탈북자와 관련한 그동안의 연구는 국내정착 탈북자 및 국외체류 탈북자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탈북자들의 시공간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국내정착 탈북자 문제 및 국외체류 탈북자 문제 그리고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 문제로 대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입국 탈북자와 관련한 연구경향이다. 이와 관련한 초기 연구는 폐쇄된 북한체제의 정보나 첩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면,⁷⁾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이 본격화되었던 1990년대 중반부터는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과 정착지원 문제가 주된 관심사가 되어 복지학, 사회학, 교육학, 정치학, 심리학, 종교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탈북자의 심리적 적응문제, 청소년

7) 이 시기의 연구는 국토통일원이나 정보기관이 주도하였는데, 대표적인 연구를 보면 국토통일원(1978)의 북한이집화실태조사, 민병천(1980)의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 국토통일원(1989)의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체제변화 실태연구, 국가안전기획부(1990)의 북한주민의식조사연구: 월남귀순자 진술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년 학교적응 문제, 각종 교육 훈련, 신변보호경찰관의⁸⁾ 지원 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⁹⁾ 이러한 연구는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해야할 주체라는 관점에서 그들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는가 여부를 분석하고, 그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제도와 대책을 제안하는데 있었고, 그 성과는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¹⁰⁾

둘째, 국외체류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연구 경향이다. 1990년대 후반 수십만 명의 북한주민들이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중국으로 탈출하여 불법 체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침해 문제와 해외공관에 무단 침입한 후 국내입국이나 서방국가로의 망명을 요청하는 사건 그리고 몽고나 태국 등 동남아시아를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 과정이 빈발하게 보도되면서 국내외 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물론 국제기구와 NGO 등이 탈북자들의 난민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외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과의 인터뷰나 현지국가 사정을 감안하여 탈북자 규모와 실태 등을 추정한 가운데, 그들의 생활 및 인권실태와 법적 지위, 난민인정 문제, 국내입국 경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¹¹⁾

8) 최근의 탈북자관련 연구서들조차 경찰청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이 2008년 6월 9일 전부 개정된 사실을 인지 못하고 신변보호경찰관을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오기하고 있다.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자가 하나원에서 소정의 사회정착교육을 받은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편입하게 되면 신변보호경찰관서에서 신변보호경찰관을 지정하여 외부의 신변위해요소에 대한 보호업무를 담당한다. 신변보호기간은 보호대상자의 신변에 위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실시한다. 주요 임무로는 탈북자의 신변위해요소 제거 및 위해로부터 신변보호,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 파악, 애로사항 파악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9)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사회정착 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김윤영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7, 2-7면),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9, 3-9면),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0, 4-11면)를 참조할 것.

10) 유지용,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5, 8-9면.

11) 대표적인 연구서로는 윤여상, “해외 탈북자 실태와 대책”(北韓, 2008년 5월호, 북한연구

셋째, 국외체류 탈북자들의 국내입국과 서방국가로의 망명이 증가되는 가운데,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사회에 공론화되자 북한의 인권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북한주민의 인권침해와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로 대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국제사회를¹²⁾ 비롯한 국내외 인권단체와 연구소,¹³⁾ 개별연구자들이¹⁴⁾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보

소), 69-76면; 김수암, “해외탈북자 인권 현황과 수용대책”(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탈북자의 역할, 북한민주화위원회 제1회 정책 세미나 자료집, 2008.2.15, 8-17면); 이신화, “재외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현황 과제”(국회탈북자 공청회 발표논문, 2002.9); John Grogan 영국 의원, “유럽지역 탈북자 난민 현황”(북한자유이주민 동남아시아 난민의 국제사회역할, 제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대한민국국회, 2008.10.24~26, 57-74면); 정옥임, “해외 체류 북한자유이주민 현황과 대책”(북한자유이주민, 동남아시아 난민의 국제사회역할, 제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대한민국국회, 2008.10.24~26, 52-54면); 이영환, “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실태와 인권”(국내외 탈북자 실태변화와 금후 과제, (사)북한전략센터, 2009.6.5, 65-86면); 이장희, “재외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재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 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자료집, 2008.9.18, 7-34면); 장복희, “무국적 탈북자의 법적 지위”(재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 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자료집, 2008.9.18, 35-62면); 이광수, “재외 탈북자의 국내법적 지위”(재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 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자료집, 2008.9.18, 63-86면); 김성구,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실상과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논문, 2008 등이 있다.

12) 유엔 인권위원회, 미국무부, 아시아 감시위원회, 미네소타변호사국제인권위원회, 인권감시협회(HRW),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프리덤하우스 등이 있다. 유엔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 결의안은 북한의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실태, 기아, 입산부 강제낙태, 인신매매, 탈북자문제 등의 심각성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미국무부는 매년 연례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아시아 감시위원회와 미네소타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는 1988년 12월 22일 처음으로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실증적, 체계적,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북한의 인권’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바 있다. 인권감시협회(HRW), 국제사면위원회(AI), 프리덤하우스 등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한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다.

13) 국내 연구소와 북한인권 단체로는 국가인권위원회,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대학원대학, 국제평화전략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시민연합, 좋은벗들 등이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탈북자 증언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2009년 탈북 및 정착과정에서 여성 인권침해와 함께 북한정치범수용소(강제송환·강제실종) 실태를 조사한 바 있으며, 최근 북한인권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북한인권팀’(2010.4)을 신설하여 주목받고 있다.

14) 개인 연구자들에 의한 북한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황무임, “북한의 인권실태와 탈북자의 현황”(복지행정연구 제14권, 안양대학교 복지행정연구소, 1998); 최성철, 국제사회와 북한인권(한양대학교 출판부, 1996); 최의철, 인권과 국제정치 그리고 북한인권(백산자료원, 2001); 김윤영·조용관,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한울출판사,

서를 생산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작성한 북한인권 실태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북한의 공개처형이나 정치범 수용소의 가혹한 생활 실태를 고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는 북한당국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행하는 인권침해 실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시켜 개선방안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 연구소와 북한인권 단체에서 작성한 연구서들은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하면서 정책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사회 역시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는 주체이자 해결해야 할 당사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 실태 실증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데 치중하다 보니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었다.

후자의 연구경향은 국외체류 탈북자와¹⁵⁾ 국내입국 탈북자들의¹⁶⁾ 인권

2009); 정태욱,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 법철학적 기록(한울아카데미, 2009); 김종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와 제재 강화”(북한 제457호, 북한문제연구소, 2010); 정운중,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인권 실태”(북한 제458권, 북한문제연구소, 2010); 장해암, “북한 인권문제, 근본 해결책은 김정일의 침략야욕의 제거뿐”(한국논문 제245권, 한국논단, 2010);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실태와 인권보호 개선방안 연구(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0) 등이 있다. 이외에도 학위논문으로 이주임, “통일독일선례를 통해 본 북한 인권문제 개선방안 연구”(부산대 석사논문, 2009); 이연재, “한국 정치·사회세력의 북한 인권문제 인식”(경북대 석사논문, 2009); 정영옥,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에 관한 연구”(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09) 등이 있다.

- 15) 대표적인 연구로는 백영옥, “중국내 탈북여성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북한연구학회 보 제6권 제1호, 북한연구학회, 2002); 김태현·노치영,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1,2): 해석학적 현상학을 통한 중국생활체험 분석”(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8호, 대한가정학회, 2003); 문숙재·김지희·이명근,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여성들을 중심으로”(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5호, 대한가정학회, 2000); 민지원, “난민자격 결정기준으로서의 ‘젠더’ 박해: 북한 여성의 난민자격 가능성을 중심으로”(여성학논집,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2003); 이동윤, “동남아의 북한 인권정책: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동서연구, 제21권,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2009); 조정현, “국제인권법상 탈북자의 보호가능성 및 그 실행”(국제법학회논문집 제54권, 大韓國際法學會, 2009); 정영선, “동북아시아 탈북자에 대한 인권 보호적 접근”(동북아법연구, 제2권 제2호, 전북대동북아연구소, 2008); 장복희, “탈북자(자발적 북한이탈자)의 인권보호와 국제인권법”(土地公法研究, 제40권, 2008); 국가인권위원회, 제중 탈북자 인권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국가인권위원회, 2007); 김윤영,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9); 김수암, “해외탈북자 인권 현황과 수용대책: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탈북자의 역할”(북한민주화위원회 제1회 정책 세미나 자료집, 2008.2.15); 이영환, “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실태와 인권”(국내외 탈북자 실태변화와 금후 과제, (사)북한전략센터, 2009.6.5); 이

침해 문제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주로 국외탈북자의 인권을 국제사회에서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인식하면서 그들의 인권과 관련된 기본권 확장문제, 법적 지위 및 보장문제, 제도적 개선 등을 국제사회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가운데, 주로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여성들의 인권침해 상황과 국제인권법상 보호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찾고 있다. 즉, 국외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중국체류 탈북여성들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물론, 국내입국 탈북자들이 사회정착을 하는 가운데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부분적으로 다룬 초기적인 연구서들도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국내탈북자들이 겪고 있는 인권침해실태 전반을 아우르기보다는 여성탈북자라는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한 협의적 관점에 초점을 두다보니 국내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함께 구체적인 인권보호 방안이 논의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과정에서 보았듯이 탈북자와 관련한 연구 경향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탈북자 인권침해실태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정착 및 국외체류 탈북자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을 뿐, 북한의 강제송환탈북자 인권침해실태와 관련한 연구 즉, 북한의 탈북자 정책과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송환과정, 공안기관의 탈북자 구금시설, 공개처형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와 그에 따른 인권보호 개선방안과 관련한 연구는 북한자료 접근의 태생적

장회, “재외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등이 있다.

- 16) 국내입국 탈북자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동국대학교 북한인상생활연구센터,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9); 이경미, “탈북자 문제를 중심으로 본 ‘인도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에 관한 연구”(서울대 석사논문, 2007); 박순옥, “북한 인권문제와 한국의 대 인권정책 : 탈북자문제의 현황과 전망”(고려대 석사논문, 2007); 이화여자대학교, 탈북자 및 북한인권문제의 대안과 전략(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2009); 박순성 외,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09); 대한변호사협회의, 2008 북한인권백서(대한변호사협회, 2008) 등이 있다.

한계와 더불어 탈북자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 탈북자 관련기관의 정보 제공 및 연구진의 관심 부족 등으로 인해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결국, 선행연구의 검토 과정을 통해서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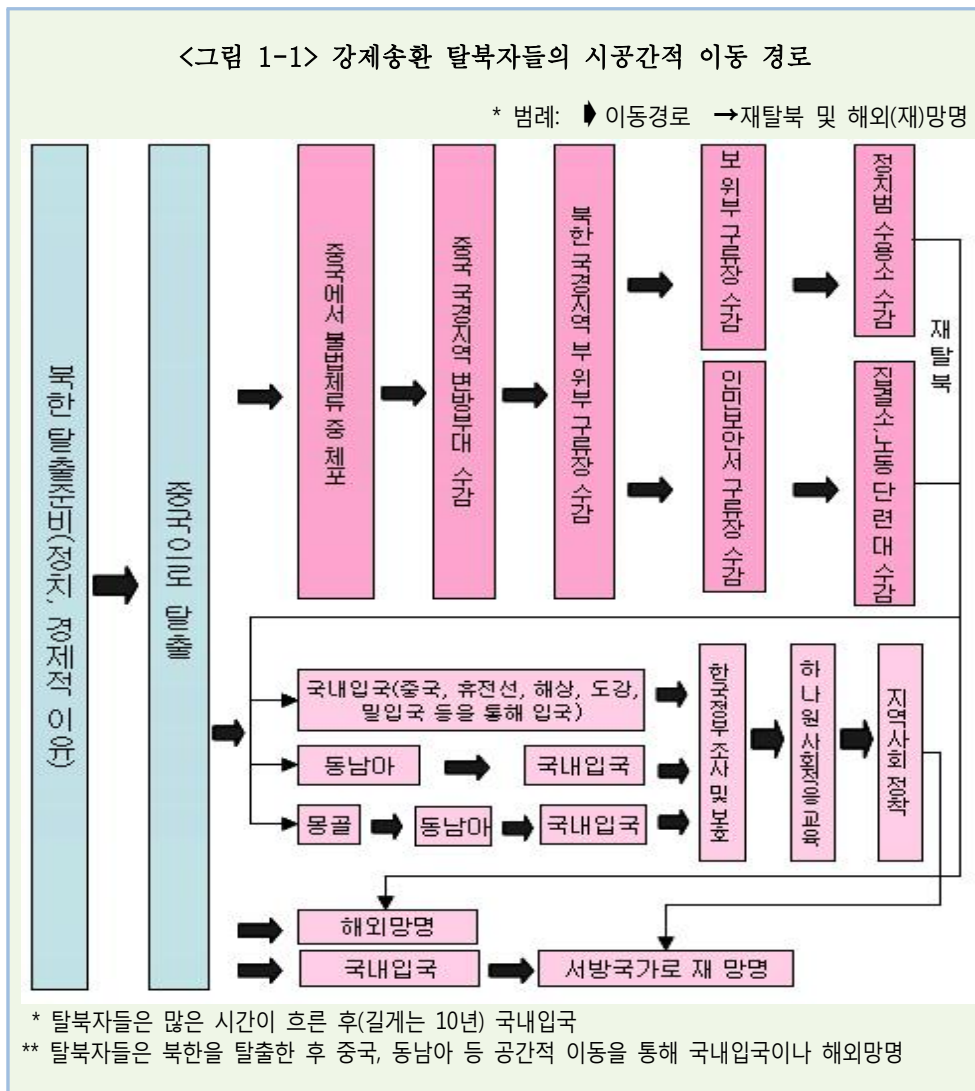
1. 연구의 방법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본격화 되었던 199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 관련 학계, 단체, 개별 연구자들은 문헌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관찰 및 현지조사, 법 및 제도적 분석, 심리적 분석, 수기분석, 사회·문화적응 이론, 사회복지이론, 인간생태이론, 정신분석적 접근방법, 통계적 접근, 종교적 접근 방법을 통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이 보고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문헌조사 및 통계론적 접근방법과 국내외 탈북자 실태 조사자들의 면접 자료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자 한다. 선행 연구 자료로는 국내외 서적과 학술지 논문, 간행물, 유관 기관 정책연구자료,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자료, 시민단체 자료 등을 참고할 것이고, 통계자료는 정부당국에서 제시한 자료와 함께 국내외 NGO 단체의 국외체류 탈북자 실태조사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설문조사가 필요한 분야는 연구시간의 제약과 개인조사의 신뢰도를 고려해서 공신력이 높은 연구조사기관의 연구결과를 2차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 글의 전개과정은 아래 <그림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북자들의

이동시간과 체류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강제송환 경과 과정에 따라 기술하고자 한다. 즉, 북한주민들이 국경지역을 넘는 순간 불법체류 탈북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면 국경지역 변방부대 구류장으로 이송되어 일정기간 조사를 받은 후, 북-중 세관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처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2. 연구의 한계

북한에서 발생하는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봉착하는 문제가 자료수집의 한계성에 있다.

북한의 탈북자 정책과 관련한 북한당국의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가 북한지역에 들어가서 보고 들을 수 없고 설혹 북한에 간다고 하더라도 연구자가 원하는 자료에 접근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리고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해당국을 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하나 예산과 시간 등의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이 글을 마무리하는 단계인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칭도(칭다오) ‘중국해양법정학원’ 및 ‘칭도공안국’과 한국영사를 방문하여 탈북자 실태와 인권침해 자료 등을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¹⁷⁾ 이러한 아쉬운 점을 나름대로 극복하고자 공인기관의 탈북자 인터뷰 자료,¹⁸⁾ 탈북자 체류국가 실태조사자와 탈북자 지원·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자 및 국내입국 탈북자들과의 면접,¹⁹⁾ 탈북자 혐의로 체포되어 강제

17) 필자는 치안정책연구소장을 비롯한 4명과 함께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칭다오 ‘중국해양대학’ 부설연구소인 ‘중국해양법정대학원’과 ‘칭도공안국’을 공식으로 방문한 바 있다. 특히, 칭도공안국 부국장 등 6명과의 면담과정에서 탈북자 체류 실태와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나, 소수민족을 차별화하지 않고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뿐 탈북자 체류실태(인권침해)와 관련한 이야기는 회피하여 필자가 요구하는 답변을 얻지 못했다. 칭도 한국영사를 통하여 탈북자 체류실태와 관련한 별도의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18) 경찰청 보안1과, 살맛나는 대한민국입니다(북한이탈주민 안보체험 수기모음집, 경찰청, 2010);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강제송환·강제실종 포함, 2009 북한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대한변호사협회, 2008) 등을 주 텍스트로 사용할 것이다.

19) “북한구원운동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처장 송부근 목사 인터뷰(2009.9.16)와 종교단체와 연계하여 17년간 탈북자 지원보호활동을 하고 있는 조○○ 박사와 수시 면담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필자는 1980년대 초 휴전선을 통해 넘어온 ○○○와 남파간첩 ○○○와는 20년간 교류하고 있으며, 그들로부터 북한실상에 대한 많은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특히, ‘민족화해위원회’에서 ‘하나원’과 연계하여 2011년 6월 2일부터 3일간 실시한 ‘새터민가정체험’ 1박2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봉사자 10명과 면담하였다. 봉사자들은 북한정권

송환되어 북한의 구류장과 교화소에 수감된 후 특사로 풀려난 탈북자 출신과의²⁰⁾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보강하였으나, 여전히 자료수집의 태생적 한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외에도 탈북자 체류 당사국인 중국은 외교적 문제의 민감성 등을 이유로 탈북자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공식적인 자료를 근거로 강제송환탈북자들의 실태 분석을 미시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 둔다.

3. 연구의 방향

이 글의 연구범위는 북한주민들의 탈출이 본격화되었던 199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강제송환 탈북자의 직접적인 당사국인 북한과 중국의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이외 러시아, 몽골, 동남아체류 탈북자의 경우 강제 송환되는 경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 대상으로 한다. 탈북자 대부분은 중국당국에서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각장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방법과 연구의 한계 및 연구 방향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침해 문제와 인권보호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이 글에서 사용되는

과 탈북자를 동일시하는 등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봉사자들은 신앙심이 높은 수준의 신자들로서 탈북자와 1박 2일간 먹고 자고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새터민가정체험’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하여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 김○○(여 40세, 양강도 출신)은 중국에서 인신매매되어 체류하다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되어 강제송환된 후 수용소 생활을 했던 여성으로, 그녀는 북한의 수용소 생활을 “인간이기를 포기한 짐승 같은 생활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이외에 탈북자 김○○(여) 등 10명(여성 7, 남성 3)과 면담을 한바 있다.

20) 비법월경(탈북)죄로 북한 전거리 교화소에 수감되어 복역을 한 후 다시 탈북에 성공하여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혁과(2009년 6월 11일)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외에도 영등포 교도소에 수용중인 탈북 재소자 ○○○ 등과 2009년 6월 20일 면담을 한바 있다.

주요 용어의 개념 정의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탈북 요인과 경로, 탈북유형, 해외체류 기간 등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중국정부의 탈북자 처리지침과 탈북자 처리실상 및 구금시설, 중국체류 탈북자 유형, 중국체류 시기별 탈북자 규모와 감소 요인, 중국체류 탈북자 강제송환 실태 등을 분석할 것이다. 제4장은 북한의 탈북자 처벌 규정과 과정을 비롯해 북한당국의 탈북자 대책으로 탈북방지 단속강화, 국외체류 탈북자 강제송환과 회유, 남한정착 탈북자 비방과 역공작 실태를 검토한 다음, 탈북자 구금시설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제5장은 제3, 4장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탈북자들이 중국체류 과정과 체포 후 겪게 되는 인권침해 문제와 더불어 강제송환 후 북한의 탈북자 구금시설 및 공개처형과 위장탈북 간첩 남파 등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제3, 4, 5장은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국외체류 탈북자 실태,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한 통계자료 및 인터뷰 자료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강제송환 후 다시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면접 자료와 함께 탈북자 체류국가 실태조사와 탈북자 지원 보호 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자와 면접한 결과를 보충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6장은 제2장~제5장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강제송환 탈북자에 대한 국내외적인 인권보호 개선방안을 제언할 것이다. 즉, 국내적인 탈북자 인권보호 지원방안으로 범국민적인 합의기반 조성, 국내법의 재검토, 신변보호 시스템의 재검토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다. 특히 연구목적에서 밝히 바와 같이 ‘치안정책연구소’가 경찰관련 연구기관이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탈북자 신변보호 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미시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국외차원의 탈북자 인권보호 개선안으로 국제법 재검토, 강제송환 탈북자의 직접 당사국인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 재정립, 국외탈북자 체류지 지원, 탈북자의 국제적인 지위보장을 위한 협력

과 국제사회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제언할 것이다. 끝으로 제7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총평한 후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할 정책적 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개념 정의

1. 탈북자의 개념 및 법적 지위

가. 탈북자 개념²¹⁾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 대한 용어는 과거 통일되지 않는 가운데 다양하게 사용되어왔다.²²⁾ 1990년 중반 이후 북한 주민들의 탈출이 급증하자 ‘탈북자’란 용어를 통상적으로 사용해오다가 1997년 1월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이하 ‘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사용하기 시작했다.²³⁾ 법률적으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²⁴⁾ ‘북한이탈주

21)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12-13면.

22) 주로 한국전쟁 이전에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을 월남인 또는 월남가족으로,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 대거 월남한 사람들을 통칭 ‘1·4후퇴자’로 불렀다. 이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월남 귀순자’는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되면서 사용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1993년 6월 제정된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에 따라 ‘귀순북한동포’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외에도 서방국가들은 이들을 난민, 망명요청자, 탈출자, 도강자 등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북한 당국은 그들을 도강자라고 부르며, 이는 문자 그대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만, 많은 경우 도강자(border crosser) 즉, 국경을 넘는 사람들, 탈북자로 번역되기도 한다.

23) 통일부는 2005년 1월 9일부터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호칭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을 미화하는 이름’이라며 비난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순수한 우리말로써, ‘북한이탈주민’이라는 호칭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여론조사를 통해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라는 용어로 바꿔 부르기로 한 것이다.

민'은 공식적으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주민을 의미하지만, 행정적 의미에서는 이들 중 '법률'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동법 2항) 받는 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다가 '북한이탈주민'이 지나치게 정치적 이미지를 띠고 있다고 보고 2005년부터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으나, 국내정착 탈북자들은 이 호칭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탈북자란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²⁵⁾

상술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탈북자'라는 용어는 북한주민이 북한지역을 탈출한 후 중국과 동남에 체류하고 있는 자와 서방국가로 망명한 자 그리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내정착 자 모두를 아우르고 19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통용되어 온 가치중립적인 의미라 할 수 있다. 즉, 탈북자는 북한지역을 탈출해 국내로 입국했거나 국외에 체류 중인 자 모두를 통칭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사용하는 탈북자라는 용어는 북한지역을 탈출한 후 중국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자를 주로 의미하는 협의적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²⁶⁾

〈표 2-1〉 탈북자의 분류

용어	내용
국내정착 탈북자	· 북한주민이 북한 지역을 탈출한 후 곧바로 국내로 입국하거나, 중국이나 태국 등 제3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후 한국 국적을 취하여 정착하고 있는 자
국외체류 탈북자	· 북한주민이 북한 지역을 탈출한 후 중국이나 태국 등 동남지역에 정착하거나 한국행 및 서방국가로의 망명을 목적으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탈북자	· 북한주민이 북한 지역을 탈출한 후 국외에 불법체류 중이거나 국내로 입국한 자들을 통칭하는 의미

24) 2007년 7월 23일 일부 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5) 통일부는 햇볕정책이라는 용어 수정과 더불어 지난 정부가 규정한 새터민의 용어를 재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2008. 9. 20).

26)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12-13면.

<표 2-2> 탈북자 관련 용어

용어	해설
탈북자	언론 기관 등에서 일반적·편의적으로 사용하는 통상적인 용어
새터민	2005년부터 정부 내부 문서, 보도자료 등에는 '새터민'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귀순자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1979년, 원호처) 및 「귀순북한동포보호법」(1993년, 보건복지부)에 규정되어 있던 용어 ※ '귀순자'는 주로 국내에 입국한 자에 대한 호칭이고, '탈북자'는 국내 입국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자유북한인 북한이주민	탈북자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

나.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한계

북한주민들의 탈북은 생사를 넘나드는 행위다. 탈북 후 국내 입국이나 국외망명에 성공하면 그들의 인권은 보장될 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이 되어 새로운 사회에 정착할 수 있다. 반면 이들이 탈북 도중 국경선에서 적발되거나 탈북 후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면 최고 사형을 당하거나 강제수용소에 수용되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등 극심한 처벌을 받는다. 그럼에도 탈북자 체류국가와 북한 및 남한과의 첨예한 정치적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탈북자 체류 관련 국가들의 의도적인 무관심 속에서 심지어 그들을 체포하여 강제복송 또는 강제추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탈북자들의 인간적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등 국제기구조차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²⁷⁾ 국외체류 탈북자 역시 한국의 재외국민으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헌법 제2조 2항²⁸⁾에 따라 정부는 이들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탈북자 관련 법률 역시 북한주민이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법률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동법 제3조)한 경우, 이들을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보호(동법 제4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한국정부는 불법체류자로 전락되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국외체류 탈북자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처벌받지 않도록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보호해야하는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다.²⁹⁾

그럼에도 국외체류 탈북자들은 애매모호한 법적지위로 인해 우리정부가 그들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보호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 한계가 따르고 있다. 첫째,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한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탈북자들은 국제법상 남한주민이자 북한주민이라는 2중적 국적을 지닌다. 따라서 남북한 동시 수교국에 탈북자가 체류할 경우 우리정부가 일방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데 한계가 따르고 해당국에도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의 재중 탈북자에 대한 영사보호권 행사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따른다.

둘째, 국외체류 탈북자 대다수는 난민자격을 얻지 못한 불법체류자의 신분이다. 한국정부는 헌법³⁰⁾ 및 세계인권선언³¹⁾ 기준에 따라 그동안 난민 처리 문제를 ‘국적판정제도’³²⁾에 따르고 있었지만, 탈북자의 경우

27)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체류 탈북자나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8)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29)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2-3쪽.

30) 헌법 제6조 2항: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31) 세계인권선언 제1조, 제2조, 제6조, 제7조, 제14조, 고문방지협약 제3조, 자유권규약 제16조, 제26조, 사회권규약 제2조, 아동권리협약 제22조 등이 적용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2007, 196면).

32) 국적법 제20조(국적 판정) 법무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이나 보유 여부가 분명하지 아

별도의 국적 취득절차 없이 혈통관계 등을 심사한 후 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탈북 배경과 유형이 매우 다양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이들을 단순히 난민차원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국제사회 또한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각국의 입장에 따라 다르다. 특히, 중국은 탈북자들이 식량구입을 위해 불법 월경한 불법체류자로 강제 송환해야할 대상자라는 인식하에 난민(refugees)자격 부여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은 강제송환 탈북자를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거나 사형으로 처벌하는 등 정치적 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³⁾ 따라서 국외체류 탈북자들에 대한 현지국가로부터 난민자격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분위기를 어떻게 성숙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관심사가 되고 있다.

결국, 국외체류 탈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하지만 국제법상 국적의 2중성과 탈북자 체류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탈북자의 난민 인정 여부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그들의 생존권적 인권 보장을 위해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하고 처리해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러한 해결과제는 단순히 탈북자들의 인권개선 문제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급변사태로 인한 예상치 못한 통일로 북한주민들이 국내로 대량 유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들을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데 있다.

니한 자에 대하여 이를 심사한 후 판정할 수 있다.

33) 형법 제62조(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2. 강제송환 개념

일반적으로 강제송환(強制送還)은 어떤 국가의 관할권 내에서 밀입국·폭력 등 범법행위를 한 외국인을 강제로 해당국이나 제3국으로 되거시키는 것으로, 국제법상 일정한 규칙이 없으며 국가의 자유재량에 좌우되고 있다. 그러나 범법자가 아닌 경우 세계 인권선언 제9조는 국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의적으로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체류 탈북자 대부분은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으로 대량아사자가 발생하자 생존을 위해 중국으로 탈출한 후, 북한으로 자진 귀환하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거나 현지인과 결혼하여 장기체류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북한은 탈북자들을 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에 의거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정부 또한 북한과 1960년대 초 비밀리에 체결한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국경지역업무협정” 그리고 1998년 적용된 “길림성변경관리조례”에 따라 탈북자를 체포한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되는 탈북자의 강제송환은 북한지역을 탈출해 중국이나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주민들이 밀입국과 불법체류를 이유로 현지국가 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복송되는 것을 의미한다.³⁴⁾

3. 인권 개념

가. 보편적 인권 개념

인권(Human Rights)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는 권리로서 인

34)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강제송환·강제실종 포함), 북한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175면 재인용.

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 즉, 인간 자신이 곧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중심적 주체임을 의미한다. 인권의 실질적 의미는 인간의 존엄성에서 나온 것이며, 그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는 국가나 실증법에 의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정되는 모든 인간의 생득적이고 절대적인 기본권이라 할 수 있다.³⁵⁾

인간의 존엄성이 생득적인 것이라고 해도 그냐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³⁶⁾ 그래서 인권은 비록 천부적 절대적 가치라고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법적·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음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반세기동안에 인류사회가 이루어낸 가장 소중한 문명적 성과는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정치적 선언의 차원을 넘어 모든 국가의 법적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인권 피해자에 대한 국제법적 보장방안을 이루어냈다.³⁷⁾ 따라서 경제·정치적 이유로 북한지역을 탈출한 탈북자들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의 일원으로 법적·제도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³⁸⁾

나. 북한의 인권개념

북한은 집단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며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라는 다원주의³⁹⁾와 양립할 수 없

35) 최성철, “인권선언의 역사와 인권의 내용”,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40-41면; 인권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 정리는 김수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연구”, 북한실태(사회)V, 통일부, 2001, 2-55면 참조.

36) 허영, 韓國憲法論, 박영사, 1995, 199면.

37) 백충현, 2003년 북한인권의 채택의 의의와 우리의 과제(북한인권시민연합주최 제22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 기조연설), 2003.5.26.

38) 김윤영,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치안정책연구소, 294면.

39) 북한은 다원주의에 대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른바 《다원주의》가 허용될수 없습니다.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방식입니

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인권개념은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권 개념과 다르다. 즉, 북한에서의 인권은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 및 전체주의적 가치관 등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고 그것에 의하여 채택된 개념으로, 북한사회에 유용성이 인정될 때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⁴⁰⁾ 실제로 북한은 다수 인류가 추구하여 온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을 거부하고 주체사상에 입각한 이른바 우리식 인권을 주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의 인권은 전체주의와 집단주의 하에서 개인주의,⁴¹⁾ 인격주의, 반전체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서구적 개념의 인권은 보장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⁴²⁾ 북한의 인권 개념은 그들이 발간한 정치용어사전에 잘 나타나 있다

인민이 응당 가져야 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를 말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다.

《우리 혁명의 목적이 모든 사람들을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에

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통일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이므로 사회주의와 《다원주의》는 양립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사회에 《다원주의》를 끌어들이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가 조장되어 사회공동의 리익을 침해하게 되며 인민대중의 통일과 단결을 파괴하고 사회적 자유화와 정치에서의 다당제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사회주의사회의 기초를 허물고 인민의 정권을 전복하기 위한 반혁명적책동에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됩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선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283면).

- 40) 북한은 인권의 보편적 개념에 대해 “인권은 하늘이 주는 행운도 아니고 더욱이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가 주는 선사품도 아니다”라며 천부인권론을 부인하고 있다. 즉,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할권 내에 있는 인민들이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물질적 조건을 구비해줄 때 인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다(“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6.24).
- 41) 북한은 개인주의에 대해 “사회주의사회는 모든 사회생활이 개인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자본주의사회와는 달리 전체 인민이 공통된 목적과 이해관계를 가지고 함께 투쟁해 나가는 집단주의 사회이다.”(김정일, “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교훈과 우리 당의 총로선”, 김정일선집 12, 306면);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그 본성에 있어서 집단적인 것이며 사회적인 것이다. 반대로 사회와 집단을 떠난 개인은 무력하며 그러한 개인의 삶은 본질에서 짐승의 삶과 같다.”(김창렬, “체국주의자들이 떠벌이고있는 <인권옹호>와 그 반동적 본질,” 근로자 2월호, 1990, 96면;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6.24,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통일연구원, 2010, 19면 재인용).
- 42) 백충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모색”, 최성철 엮음,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440-441면; 김윤영·조용관,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도서출판 한울, 2009, 197-201면.

게 최대한의 인권을 보장하여주자는데 있습니다. 인권옹호는 우리활동의 기본이며 출발점입니다»

인권옹호는 착취와 억압으로부터 인민대중을 해방하기 위한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의 기본이며 출발점이 된다. 인권은 온갖 착취와 억압이 청산되고 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제도 하에서만 철저히 보장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공민들에게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기위하여 헌법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신앙의 자유, 주택 및 인신에 대한 불가침 및 기타 공민의 기본적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들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튼튼한 물질적 조건에 의하여 담보된다. 우리 인민정권은 계급적 원수들에게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면서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를 철저히 보장한다. 자본주의 나라들에게서 인민들에게 환상을 조성하기위하여 《인권》과 《인권옹호》를 떠벌이고 있으나 그것은 지주, 자본가계급을 위한다 지나지 않으며 근로대중은 인민을 흑심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남조선에서인민대중은 미제와 그 앞잡들의 가혹한 식민지파썸통치에 의하여 초보적인 민주주의적자유와 생존은 여지없이 유린당하고 있다. 남조선에서 근로대중의 인권은 오직 미제를 몰아내고 그 앞잡이들을 쓸어 벌려야만 보장될 수 있다.⁴³⁾

1990년대 접어들면서 북한은 인권문제를 정치문제로 인식하고 ‘서방식 인권’과 ‘우리식 인권’으로 규정하여 대응하고 있다. ‘우리식 인권’이란 용어는 1995년 6월 24일자 로동신문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라는 사설에서 구체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가 기반’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식 인권’론에 따라 “우리는 그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정정당당하게 우리식대로 살아나갈 것이며 궤변으로 가득찬 서방식 인권론을 철저히 배격할 것”(로동신문, 1995.6.24)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서방식’이란 정치적으로 다당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 서방식 인권 기준을 의미한다.

북한당국의 인권관의 변화에 대해 사전적 의미의 인권 개념을 정리해보면, 첫째, 1950년대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유, 평등의 권리’⁴⁴⁾로 규정하였다. 둘째, 1970년 『정치용어사전』은 ‘인민이 응당 가져

43)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0, 718면.

44) 대중정치용어사전,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213면;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통일연구원, 36면에서 재인용.

야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라고 정의하였다. 인권의 물질적 조건을 들어 발전권을 강조하면서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것이 인권'이라고 명시하였다. 셋째, 1980년대에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라는 점에서 인권주체를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구체화함으로써,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해 가져야 할 권리'⁴⁵⁾로 정의하였다. 넷째, 1990년대의 경우 "참다운 인권은 인민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서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 권리로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면서 '자주적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⁴⁶⁾ 이러한 인권개념은 200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삶의 권리가 인권이다'⁴⁷⁾라고 규정하고 있다.⁴⁸⁾

특히, 최근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강도 높게 비난하며 인권개선을 촉구하자, 북한은 2009년 개정헌법 제8조를 통하여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은 태어나면서 집단이나 국가에 충성하고 수령에게 절대복종해야한다는 사상교육을 받아 왔기 때문에 '집단이나 국가의 권리'가 '개인의 권리보다' 앞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들어 본적이 없다'고 하면서, '나도 사람이고 인간이다', '나도 자존심이 있다', '인간대접을 받고 싶다'라는 식으로 인권이라는 말로 대체할 뿐,⁴⁹⁾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은 인권개념조차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⁵⁰⁾

45)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3, 718면.

46)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노동신문, 1994.11.4.

47) "공정한 인권기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노동신문, 2007.3.25; "제국주의의 인권공세를 단호히 짓부시자," 노동신문 편집국 논설, 2007.8.17; 김수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38면 재인용.

48)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18면.

49) 김○○, 2011년 6월 2일 면담.

〈표 2-3〉 북한의 사전적 인권개념 변화

년대	주요 내용	출처
1950년대	· “사람으로 마땅히 가져야할 자유, 평등의 권리”로 규정	· 대중정치용어사전,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213면
1970년대	· “인민이 응당 가져야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및 사회적 제반권리”로 정의하면서, “계급적 원수들에게 철저한 독재를 실시”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 정치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3, 718면
1990년대	· “인권은 정치, 경제, 사상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인민들이 행사하여야 할 자주적권리”로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고’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 인민들에게는 결코 인권이 보장될 수 없음’을 강조 · 인민정권이 인민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세력과 요소에 대하여 독재를 실시하는 것은 인권유린이 아니라 철저한 인권옹호입니다. 인권은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인간의 신성한 권리입니다. 참다운 인권의 체현자는 인민대중입니다.	· 김정일, “사회주의는 과학이다(1994.11.1)”, 김정일 선집 13,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77면. · 김정일, “우리 인민정권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자(1992.12.21)”, 김정일 선집 13,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275면.
2000년대	·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의 권리가 인권이다’라고 규정	· “공정한 인권기준이 보장되어야 한다”, 로동신문, 2007. 3. 25
2009년	· “국가는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된 노동자 농민 군인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근로인민의 이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2009년 개정헌법 제8조

제2절 탈북 과정

1. 탈북 요인

북한 주민들의 국경탈출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정치·사회·경제 등 내적 문제와 외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얽힌 결과로 파생된 것이다. 탈북원인은 다음과 같이 대내외적 요인으로 대별하여 정리할 수 있다.

50) 물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일부 북한주민들이 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인권개념조차 없는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109면).

가. 내부적 요인

첫째,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과 극심한 식량난 그리고 체제불안이 주민들의 탈북을 촉진시켰다. 북한주민들은 1990년대 초 북한 핵문제에 따른 북미간의 갈등과 김일성의 사망(1994.7.8)에 따른 체제위기감 그리고 1990년 이후 계속된 경제성장 하락과 1995-1997년 수해와 가뭄으로 가중된 최악의 식량난으로 중앙통치와 배급체제가 무너지면서 국가배급제에 익숙해 있던 주민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식량, 생필품, 의료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생존권 차원에서 탈북을 시도하였다.

북한주민들이 탈북을 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이 경제난과 극심한 식량난에 있었음은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에 잘 드러나 있다. 즉, 미국 피터슨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 연구원이 2004년 8월~2005년 9월 중국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 1,346명과 2008년 11월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여건(56.7%)이 정치적 자유(27%)보다 훨씬 큰 요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⁵¹⁾



탈북자 지원 종교단체인 ‘좋은벗들’이 1998년 12월 발표한 『북한 식량난민, 1989년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식량난

51) 마커스 놀랜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억압과 처벌”, 북한경제리뷰, 2009년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KDI), 2009.10.31, 55면; “탈북자, 北수용소서 생체실험 당해”, 동아일보, 2009.11.5.

을 해결하고자 내부에서 다양한 생존수단을 찾았지만 해결되지 않자 탈북을 시도하였다. 즉, 아래 <표 2-4>에서와 같이 탈북 전(前) 내부적 수단을 통해⁵²⁾ 생계를 유지하다가 아사(餓死) 위험이 있는 본인과 가족들이 생계수단이나 의약품을 찾아 월경하게 되었다. 특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배급 중단이후 지역별 생계수단은 함경북도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친지의 도움을 받았다는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경인접 주민들의 경우 중국에 거주하는 친척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탈북을 했던 자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⁵³⁾

<표 2-4> 배급중단 후 생계수단(복수응답)

배급중단 후 생활	응답수	인원빈도(%)	응답빈도(%)
나무, 산나물, 옷 등으로 장사했다	458	49.3	25.4
풀뿌리, 버 뿌리, 소나무껍질을 먹음	397	42.7	22.0
가구, 집기를 팔아서	371	39.9	20.6
친지의 도움을 받았다	187	20.1	10.4
땀기발을 일구어서	71	7.6	3.9
도둑질	67	7.2	3.7
식량을 구하러 다른 지역을 다님	53	5.7	2.9
집을 팔아서	52	5.6	2.9
구걸	48	5.2	2.7
약초를 캐어서 식량과 바꾸어 먹음	28	3.0	1.6
하루벌이를 했다	10	1.1	0.6
기타	62	6.7	3.4
합계	1,804	194.1	100.0

* 출처: 좋은벗들, 북한 식량난민 1,694명 면담조사 결과 보고서, 1998.12.

둘째, 북한주민들의 외부정보 습득은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켜 체제 불만으로 작용하여 탈북을 촉진시켰다.⁵⁴⁾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

52) 탈북하기 전 가구나 집기 등을 팔아 생계를 유지한다.

53)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실태: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5, 22면.

54) 북한 주민들은 당국의 엄격한 주민 통제에도 불구하고 방북교포, 외교관, 유학생, 무역업자

량난에 따른 국가의 주민통제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해외 유학생, 외화벌이 일군을 비롯한 해외 파견자, 중국동포 보따리 장사, 해외교포, 국제기구 민간단체의 종사자들과 접촉을 통해 중국과 남한의 발전상 등의 외부 정보를 습득하게 된 주민들은⁵⁵⁾ 상대적 박탈감과 더불어 체제불만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 가난과 배고픔을 피해 탈북을 시도하였다.⁵⁶⁾ 이외에도 외부 정보 획득으로 인한 자유에 대한 갈망, 그리고 출신성분으로 인한 진학 및 진로, 직업선택의 한계, 자녀들이 각종 노력동원이나 경제적 착취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만에 따라 보다 나은 교육 기회와 삶을 찾아 탈북을 시도하기도 했다.⁵⁷⁾ 특히, 2009년 12월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중산층 이상이 탈북하는 등 탈북자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 대북 소식통은 2010년 8월 3일 “화폐개혁 실패로 민심이 떠난 데다 비디오·DVD 등을 통해 한류가 북한에 퍼지면서 중산층 이상의 탈북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화폐개혁 때문에 재산을 날린 ‘시장 세력’(시장에서 돈을 번 계층) 중 탈북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⁵⁸⁾

셋째, 북한사회의 기강해이에 따른 사회일탈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 역시 탈북원인이 되었다. 북한사회는 ‘고난의 행군’⁵⁹⁾ 이후 물질 만능주

등 외국 경험자들을 통해 유입된 서방 문물과 정보를 접하면서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이는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이념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의식 변화를 불러왔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함께 트랜지스터라디오가 보급되어 남한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이 늘어나 남한 사회의 발전상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경제정책의 실패와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자 생존 차원의 탈북을 시도되었다.

55) 탈북자의 대다수는 북한 국경지역 주민들이다. 이들은 외부세계 정부를 비교적 쉽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8년 12월 31일 현재 국내입국 전체 탈북자(15,057명) 중 함경도 출신이 78%(11,750명)를 차지하고 있다.

56) 2000년 이후의 탈북은 중국과 경제교류가 확대되어 외부세계의 정보가 유입되고, 나아가 계속된 경제정책 실패와 식량난 악화, 정치적·계층적 구조의 심화에 따른 불만 때문이었다.

57)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안보연구원, 2005, 8면 참조.

58) 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11, 42면.

59) ‘고난의 행군’이 국가적 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구호로 다시 등장한 것은 사회주의권의

의 풍조가 팽배해지고 스스로 살길을 찾는 행태가 증가하면서 주민은 물론 상류층도 사회일탈 현상이 늘어났다. 즉,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과 김일성의 사망(1994) 그리고 극심한 경제난(식량난)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허용될 수 없는 개인주의가 확산되어 주민들의 사회일탈현상을 증가시켰다.⁶⁰⁾ 그 결과 상·하층 간부에 의한 뇌물수수와 부정부패, 절도 및 강도, 부화(간통) 방탕, 성범죄, 청소년범죄, 위조화폐 범죄, 마약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가 만연하면서, 북한당국에 체포되어 처벌받았거나 체포될 위험성이 있는 자들이 중국이나 남한으로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⁶¹⁾ 이외에도 경제난으로 인한 해외공관의 자금난과 공관원들의 공핍한 생활, 마약 등의 밀수·밀매 및 위조지폐(미화)의 유통, 공관 내 조직원들간의 갈등 증폭과 감시와 밀고로 인한 강제송환은 공관원들의 탈북을 촉진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또한 외화벌이사업 중 한국 상사원이나 선교자들과 접촉한 경우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탈북을 결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⁶²⁾

넷째, 개인적인 사정이 탈북 요인으로 작용했다. 북한에서 정치범으로 분류되어 정치범수용소에 극적으로 탈출한 경우, 혁명과업의 파로나 실적부진, 비리혐의 및 각종 비법 행위 연루자들이 문책이나 출당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탈북을 결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외에도 식량난으로 가족 대부분이 아사하거나 부모가 사망하는 등 생활기반을 상

붕괴로 인한 경제난과 최악의 수해로 아사자가 속출한 1990년대 중반이다. 1996년 1월 1일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 등은 신년 공동사설에서 ‘모자라는 식량을 함께 나눠먹으며 일본군에 맞서 투쟁한 항일빨치산의 눈물겨운 고난과 불굴의 정신력’을 상기시키며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자”고 호소했다. ‘고난의 행군’을 통해 최악의 위기를 넘긴 북한 지도부는 1998년에는 경제 건설을 위한 ‘사회주의 강행군’을 제시했다. 2000년 1월 1일 노동신문은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우리 인민의 투쟁으로 여러 해째 계속된 어려운 행군이 마침내 ‘구보(驅步) 행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공식 선언했다.

60)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교정담론 제3권 1호, 아시아교정포럼, 2009, 1-2면.

61) 북한의 범죄 실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위의 글을 참조할 것.

62)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실태: 변화와 전망, 24-25면.

실한 자들이 탈북을 한다.

다섯째, 경제난과 식량난이 악화되는 가운데 자본주의 풍조가 확산되자 북한주민들은 돈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돈을 벌기 위해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자본주의 문화가 확산되자 이를 ‘얼빠진 사고 방식’ 또는 ‘썩어빠진 부르주아적 유행’으로 비판하는 한편, 김정일은 ‘군대문화 따라 배우기 운동’과 ‘모기장 교육’⁶³⁾을 통해 ‘자유화바람’을 차단하여 주민들의 사상이탈을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⁶⁴⁾ 조선노동당 역시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반대 배격”해야 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⁶⁵⁾ 김정일은 2006년 여름 평안북도 신의주 방문시 학생들의 ‘한국 풍 옷차림새’ 등을 본 후 학생들 문화에 대한 제재 내용의 방침⁶⁶⁾을 하달한 바 있다.⁶⁷⁾

여섯째, 최근에는 굶주림, 경제적 곤란, 인권 억압보다는 보다 나은 세계를 향한 갈망과 자녀 교육을 위해 탈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 계층만이 아니라 중류계층 출신의 탈북자들이 늘어나는 등 전 계층 주민에게서 발생되고 있다. 이 때문에 2000년 이후 가족 단위로 국내에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먼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의 입국을 돕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⁶⁸⁾

63) 자본주의 사상을 막아 내는 모기장을 빈틈없이 쳐서 차단해야한다는 의미이다.

64)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 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265-266면.

65) 학습제강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데 대하여”(조선로동당출판사, 2002)는 16절지 16면 분량의 1시간 30분짜리 간부용 학습지침서이다. ‘제강’은 강연이나 강의의 기본내용을 체계 잡아 적은 글을 의미한다(조선말대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92, 440면).

66) 동 방침은 “옷차림이 모두 우리나라 학생답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퇴폐적인 노래를 부르거나 영화를 보지 말라”, “생일파티를 금지한다”, “거리에서는 절대 교복을 입고 다녀라”는 등의 내용이다. 이후 규찰대·청년동맹들의 감시활동이 강화되었으나, 대부분 학생들은 적발되지 않을 정도로만 방침에 순응하고 있다.

67)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18면.

나. 외부적 요인

북한주민들의 탈북을 유도하는 외부적인 요인은 넓은 국경선과 국경경제의 미비, 국경 인접의 중국동포 거주지 및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수준, 국내외 종교단체 및 민간단체의 구호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중국 동북삼성을 중심으로 한 중국동포사회의 탈북자 보호와 지원이 탈북자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동포 사회는 북한에 친인척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매우 강한 민족의식과 전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혁명기에 개인적으로 북한사회로부터 상당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 때문에 1990년대 중반 중국동포사회는 탈북자들에게 많은 동정심을 가지고 개인적 차원 혹은 지역단위에서 상당한 보호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의 종교단체 및 개인들의 간접적인 지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다.⁶⁹⁾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장기화되면서 절도, 강도, 인신매매 등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중국당국의 처벌 강화, 경제난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은 중국동포들의 탈북자 보호 의지를 약화시켰다.⁷⁰⁾

둘째, 국내외 종교단체 및 민간단체의 구호활동 역시 북한주민들의 탈북현상을 촉진시켰다. 1990년 중반 북한사회가 최악의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탈북자들이 급증하자 국내 종교단체들은 북한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식량지원과 함께 월경자의 생계비 지원과 은신처 제공 등은 물론 국내 입국을 추진하였으며, 민간단체들은 탈북자들의 인권을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난민지위 부여 활동을 전개하였다.⁷¹⁾ 그러

68) 2001년의 경우 국내정착 탈북자의 도움을 받아 국내에 입국한 사례는 115건, 116명으로, 2001년 전체 입국자(583명)의 28%를 차지했다.

69) 조선족 교회를 중심으로 탈북자들의 보호활동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는 외부의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주민을 돕는 일에 종교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70)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실태: 변화와 전망, 28-29면.

나 2001년 이후 중국의 단속강화로 국내 민간단체들의 현장인력이 추방되어 중국현지 지원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탈북자 지원활동은 초기와 비교해 크게 감소되고, 지원활동 역시 은밀히 추진되고 있다.⁷²⁾

셋째, 북한의 만연한 경제난으로 배급체제가 붕괴되자 북한주민들은 의식주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외부에서의 취업을 통해 해결해야할 문제였다. 즉, 북한주민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수준이 높은 중국이나 러시아로 월경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 탈북을 시도하게 되었다.

넷째, 중국의 산업화는 탈북여성들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탈북 초기에는 농촌의 힘든 일에 남성 탈북자들이 대거 유입되어 노동자로 은신할 수 있었지만, 열악한 노동환경 하에서 체류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는 불만이 각종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자, 남성 탈북자들의 은신 근거지가 좁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탈북여성의 경우 중국의 개혁개방에 따른 산업화로 여성들이 대도시나 한국으로 대거 이동하면서 농촌지역 총각들은 배우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급증하게 되자,⁷³⁾ 상대적으로 탈북여성들의 수요를 증가시켜 체류영역을 확대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남성탈북자들이 감소하는 반면에 여성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국내에 먼저 입국한 탈북자의 지원에 의해 가족들의 탈북을 유도하고 있다. 아래 <표 2-5>에서와 같이 통일연구원이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입국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 1,055명(남성 20.7%, 여성 79.3%) 중 307(29.1%)명이 한국에 이미

71) 탈북자 난민지위부여 활동은 주로 북한인권연합과 좋은벗들,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등에서 실시하였다.

72)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실태: 변화와 전망, 34면.

73) 중국의 인구 억제정책에 따라 한 가구에 한 자녀 낳기 운동 결과 남녀 성비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었다.

입국해 있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⁷⁴⁾

<표 2-5> 탈북자 가족 비율

구분	사례수(명)	비율(%)
국내가족 입국 있음	307	29.1%
국내가족 입국 없음	748	70.9%
계	1055	100.0

* 출처: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25면.

국내로 먼저 입국한 탈북자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전문 브로커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돈을 지불한 후 연쇄 탈북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국내 입국 탈북자 중 가족단위 비율이 증가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 먼저 입국한 탈북자들이 정착금과 기타 소득 등을 활용해 가족들의 탈북을 지원하여 상당수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연구원이 1993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 2,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80명중 대수다수(90.1%)가 가족들의 국내 입국을 위해 정착금과 기타 수입을 활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⁷⁵⁾

여섯째, 한국정부의 탈북자 보호 및 정착지원정책 역시 북한주민들의 탈북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입국 탈북자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 정보가 조선족, 현지체류 한국기업인, KBS 사회교육방송 등 언론매체를 비롯한 반북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⁷⁶⁾ 등을 통해 북한으로

74)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24면.

75)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용실태연구, 통일연구원, 2003;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실태: 변화와 전망, 37-38면.

76) 최근 반북단체에서 대북전단지를 대형풍선에 담아 북한으로 띄워보내는 행사를 자주하고 있다. 2009년 10월 8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와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북한 노동당 창립일인 2009년 10월 10일 대북 전단(빠라)과 함께 휴대용 라디오 등을 북한에 날려 보낼 것임을 밝힌바 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0일 입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휴대용 라디오 300대, 북한화폐 500장(5000원권), ‘노동당간부들에게’라는 내용의 전단지 7만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에 담아 북한으로 띄워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반북단체 이번엔 ‘라디오 매단 풍선’ 살포”, 경향신문, 2009.10.8). 반북단체에 의한 대북전단지 대형풍선 살포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은 대남선전매체를 동원해 보복조치를

유입되면서 북한주민들은 탈북을 선택한 후 남한입국을 시도하고 있다.⁷⁷⁾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중 탈북하여 1994년 7월 입국한 조명철은 “남한의 방송과 언론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아 탈북을 결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⁷⁸⁾

다. 탈북여성 증가 요인

1990년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남성탈북자들이 대다수였고, 여성탈북자들은 소수에 거쳤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식량난을 계기로 아사자가 폭발하고 배급체제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탈북여성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 시기 가족들의 실제적인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던 북한 여성들은 식량을 구입하는 문제가 가장 절박한 과제였다. 북한 여성들이 자녀들과 가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시작한 장사활동은 주요한 생계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난과 식량난이 더욱 악화되고 장기화되면서 여성들의 장사활동만으로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친인척이 있는 중국으로 몰래 월경하여 식량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즉, 식량난에 의한 아사자, 연료난에 의한 동사자, 전염병에 의한 병사자들이 속출하면서, 초기에는 남성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노동력을 제공하고 어느 정도 식량을 구입하여 왔지만, 이마저도 중국당국의 단속강화로 남성들의 활동영역이 여의치 않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산업화로 인한 여성들의 이농현상이 급증하자, 농촌지역이나 소도시의 경우 여성들의 수요

자행할 것이라는 협박보도를 빈번하게 발표하고 있다.

77)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실태: 변화와 전망, 38-39면.

78) 조명철은 2004년 한 기고문에서 “남한의 방송과 언론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그가 17세이던 '1975년 1월 북한 고위층과 그 자체들만 다니는 평안남도 용강군 온천요양소에서 후배 덕분에 남한 라디오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당시 박정희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생중계를 듣던 그는 대통령이 직접 방송에 나와 기자들의 자유로운 질문에 답하고 대답하는 것에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김영식, “탈북박사 조명철 코리아안 드림”, 동아일보, 2011.6.8).

가 확대되었고, 북한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체류영역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 일부여성들은 브로커를 통해 중국의 농촌지역이나 오지의 남성에게 스스로 팔려가거나, 중국에 가면 돈을 벌고 식량을 구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로 중국으로 건너갔지만 일정한 주거지를 구입하지 못해 유랑하다 인신매매 브로커의 유혹과 강제 납치에 의해 인신매매되거나, 중국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복송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여성들이 식량구입을 위해 전면에 나서면서 남성들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었고, 여성들의 경우 심신건강의 악화, 여성인력의 질 저하, 가정위기, 자녀교육의 위기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가족의 생계부양자로서 혹독한 식량난을 겪는 과정에 북한여성들의 전통적인 가족관과 의식구조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의 가출과 이혼의 증가, 육아기피, 낙태, 독신선호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⁷⁹⁾ 결국, 북한의 가장 극심했던 식량난 속에서 실제적인 생계를 책임졌던 북한 여성들은 자신들을 희생하여 자녀들과 가족들을 살리고자 중국으로 수십만 명이 탈북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 탈출 경로

북한 주민들의 탈북은 1990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정치적 및 개인적 문제로 인한 처벌의 두려움을 피해 주로 휴전선, 해상, 강을 통해 직접 납하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생존권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두만강·압록강·백두산 지역의 국경(북·중, 북·러)을 이용해 중국 등지로 탈북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북한탈출 경로는 두만강→백두산→압록강 순으로 알려져 있는데, 두만강(북동쪽)의 경우

79) 이애란, “왜 북한의 여성 탈북자가 많은가?”, 한국논단, 2010년 7월호, (주)한국논단, 120면.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얇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은 결빙으로 인해 다른 경로에 비해 도강하기 쉬운 곳이다. 반면, 백두산은 중국 공안요원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이고 중국동포 집단 거주에 은신처를 확보할 수 있으나, 중국당국에 체포될 위험이 높다. 그리고 압록강은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을 뿐만 아니라 경비도 삼엄하여⁸⁰⁾ 위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경로에 비해 탈북 빈도가 낮은 곳이다.⁸¹⁾ 결국, 북한주민들은 탈출 경로를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짓기 보다는 국경경비 상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한 루트를 찾아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⁸²⁾

<표 2-6> 탈북자 탈출 및 국내입국 경로

구분	탈북 요인	탈출 경로	탈북 빈도
1990년 초반까지	정치적, 개인적 문제	휴전선, 해상, 강	휴전선을 통해 가장 많이 탈출
1990년 중반부터	식량난, 생존권 차원	두만강, 백두산, 압록강, 휴전선, 해상, 강	두만강 → 백두산 → 압록강 순으로 탈출

* 출처: 김윤영,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청소년 보호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0, 26면.

3. 탈북 유형

북한주민들은 경제난이 심각했던 1990년 중반의 경우 식량을 구한 후 빠른 시간 내에 귀환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탈북 후 장기 체류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국외체류 유형은 목적과 체류기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⁸³⁾ 이 글에서는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80)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가 급증하자 제10군단을 창설하여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81) 김문수, “탈북에서 입국까지”, 탈북자입국지원 법률개정 자료집, 2004, 13면 참조 재정리.

82) 김윤영,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297-298면.

83) 이우영은 중국 등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을 탈북 목적과 체류 기간에 따라 구분한 후, 이를 다시 탈북 목적에 따라 ‘완전한 북한 이탈과 북한으로의 귀환을 전제로 한 탈북’으로, 그리고 체류 기간에 따라 장단기 체류로 구분하고 있다(이우영 외,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59~62면).

가. 단순 왕래형 탈북

단순 왕래형 탈북은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 시기 북한주민들이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월경했던 유형이다. 이들은 탈북 시 국경 지역에서 체포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 혼자서 국경을 넘은 후 중국내 친인척의 도움을 받거나 중국동포 마을 등에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식량 및 생필품과 돈을 벌어서 빠른 시간 내에 자진 귀향을 한다.

단순 탈북자들은 처음부터 식량 및 생필품을 구입하고 돈을 벌면 곧바로 귀향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서방국가나 한국행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북한으로 귀환할 경우 간첩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남한 사람이나 선교사(선교단체) 등을 만나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장기화되고 탈북자들이 증가할수록 중국내 친인척들의 경제력이 어려워져 그들을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얻고 돈을 벌기 위한 탈북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탈북자들의 탈북 횟수가 거듭되는 동안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사회의 풍요로움, 한국의 발전상과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잘산다는 정보를 듣게 되고, 이러한 정보는 북한정권에 대한 회의는 물론 탈북 사실이 알려져 귀환 시 체포될 위험이 높아지면서 완전 탈북자로 전환하고 있다.

나. 장기체류 탈북

탈북자들은 처음 단기간 내에 돈을 벌고 돌아갈 계획 하에 친척 방문 등의 목적을 가지고 월경하였으나, 북한의 식량난이 장기화되고 탈북 횟수가 거듭되면서 장기 체류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탈북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돈을 벌지 못해 귀향하더라도 가사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일정한 주거지 없이 은신 생활을 하며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현지에서 농사일과 벌목, 잡일(남성), 현지

인과 결혼이나 가정부 생활(여성) 등을 하면서 현지에 정착하고 있다. 특히 중국남성과 결혼한 탈북여성 역시 중국국적을 얻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며, 한국행 또는 서방국가 망명을 위해 장기 체류하면서 기회를 찾고 있다.⁸⁴⁾ 이들의 경우 중국 내륙을 비롯해 태국 등 동남아 지역까지 분포되어 있다.⁸⁵⁾

다. 완전 탈북

처음부터 서방국가나 한국행에 목적을 두고 중국으로 월경하는 완전 탈북자의 경우이다. 이들은 북한을 탈출한 후 다른 국가에서의 새로운 삶을 희망하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목돈을 마련한 후 가족을 동반해 월경하게 되면 신변안전을 위해 중국 내륙이나 몽골, 태국, 미얀마 등 제3국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해당 국가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5년 동안 체류하면서 종교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한국입국이나 서방국가로 망명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 중국 등 제3국의 불법체류 신분을 벗어나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한국행이나 서방 망명을 선택하고 있다.⁸⁶⁾ 또한 먼저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지불하고 기획탈북을 시도하기도 한다.

4. 국외체류 기간

중국 등지로 탈출한 북한주민들 중에는 한국행이나 서방국가로의 망명

84) 위의 책, 13-15면.

85)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양운철은 2009년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태국의 메시아, 방콕 칸차나부리에 있는 탈북자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탈북자들 및 탈북자 정책과 관련된 태국 내 인사들과의 면담을 한 결과 방콕 수용소에 200여명 정도의 탈북자가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양운철, “출장보고소(요약)”, 세종연구소, 2009.3.2, 1면).

86) 이우영 외,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13-15면.

을 위해 장기체류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이 한국행을 결심하고 영사관에 보호를 신청한 뒤에 국내로 입국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6~8개월 정도가 걸린다. 이러한 사실은 강제송환 경험이 있었던 김○○ 등 10명은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국내로 입국하는데 걸렸던 시간이 5-8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⁸⁷⁾

국외체류 탈북자들이 한국 입국을 희망해 현지의 한국 대사관 및 영사관이나 제3국 대사관 및 영사관 혹은 유엔 난민시설에 보호를 신청한 후 대기하는 기간은 국가별로 차이가 나는데 통상 ▲몽골 4~6개월 ▲캄보디아 6~8개월 ▲태국 6~10개월 ▲중국 10~15개월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들은 장기간 대기하면서 비좁은 수용 생활과 외부와의 고립으로 인하여 대부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의 수용시설에서는 구타 등 인권 침해 사례도 발생해 수용기간의 단축과 수용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⁸⁸⁾ 이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한국행이나 해외망명에 실패하여 장기체류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강제송환되고 있다. 탈북자들의 해외체류 기간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강제복송의 위험도 그 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정부는 국제 사회와 기구, NGO 등과 유기적인 협조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해외체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야 한다.

〈표 2-7〉 국외체류탈북자 국가별 국내입국 대기 기간

국가	중국	몽골	캄보디아	태국	평균
체류기간	10~15개월	4~6개월	6~8개월	6~10개월	6~8개월

87) 김○○ 외 10명, 2011.6.2 면담 결과, 이는 앞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새터민가정체류' 1박2일 프로그램에 참여한 탈북자 10명과 면담한 결과이다.

88) 김당, "탈북자 수용시설, 미얀마는 '모텔급' 몽골은 '수용소'", 오마이뉴스, 2006.10.26: 최재천(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재외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6.10.25: "북한구원운동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처장 송부근 목사와 인터뷰(2009.9.16)한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송목사는 2007년 12월 10~12월 15일간 캄보디아와 태국을 방문하여 '캄보디아 및 태국 현지 탈북민 실태조사'를 한바 있다.

제3장 중국의 탈북자 정책 및 강제송환

제1절 중국의 탈북자 대책 및 체류유형

1. 중국의 탈북자 대책

가. 중국의 탈북자 처리 지침

중국정부는 북한과 1960년대 초 비밀리에 체결한 “조·중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 인도협정”(일명 밀입국자 송환협정)과 1986년 “국경지역업무협정”⁸⁹⁾ 그리고 1998년 적용된 “길림성변경(국경)관리조례”⁹⁰⁾에 따라 탈북자들을 월경(越境)죄를 범한 불법체류자로 규정하여 북한 당국과의 협조 하에 검거한 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중국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중국 국경지대 20km 내에서 탈북자들을 직접 검거하거나 감시초소를 세워 탈북자들의 밀입국을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⁹¹⁾ 그리고 중국정부는 “난민지위에 대한 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대한 의정서”의 당사국이지만 탈북자들이 정치적 난민이 아니라

89) 정식명칭은 “변경지역에서의 국가안전과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상호협력의정서”로 1986년 8월 12일 중화인민공화국公安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간에 체결되었다. 20년간 유효한 이 의정서의 주요 내용은 쌍방이 불법월경체류문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불법월경자에 대한 명단과 자료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제4조 2항)하고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한 월경은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고(제4조 1항) 적절한 구호(제1조 1항)를 하도록 하였다.

90) 1993년 11월 12일 제8기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길림성변경관리조례”가 통과된 후 199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91) 김진환, “국제법상 탈북자의 인권보호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52면.

는 이유로 탈북자 문제를 중국과 북한이 같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보고 있으며, 한국이나 제3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⁹²⁾

이외도 중국은 1997년 3월 14일 제9차 중국인민대표대회에서 형법을 개정하여 ‘국경관리 방해죄’를 신설하고 탈북자를 돕는 자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⁹³⁾ 1999년에 들어와 중국내 탈북자들에 대한 일제 검문·검색을 벌이고 있다.⁹⁴⁾

〈표 3-1〉 ‘국경지역업무협정’ 주요 조항

조항	내용
제1조	양국 국경지역의 안전유지와 국가사회 재산, 생명재산 보호업무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제4조	주민의 불법 월경방지업무에 관해 상호 협력한다. ①항 합법적인 증거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 월경자로 처리한다. ②항 상황에 따라 불법월경자의 명부 및 자료를 상대측에 넘긴다. 월경 후 범죄 행위는 본국의 법률로 처리해 상대측에 보고한다.
제5조	범죄자 처리 문제를 상호 협력한다. ①항 반혁명분자와 일반 범죄자가 상대측의 경계내로 도주할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대측에 반드시 통보한다. 자국으로 도망해 온 범인의 조사 체포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신속히 체포해 관련 자료와 함께 인도한다. ②항 상대측 국경의 안전, 사회질서를 위해하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에는 상호 통보한다.

* 자료: “北·中 ‘탈북자 송환’ 협정 체결”, 연합뉴스, 2003년 1월 6일자 재구성.

92) 임채완, “중국 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19집, 한국동북아학회, 2001, 72면.

93) 중국의 ‘국경관리방해죄’는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도록 조직한 사람에게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동시에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런 조직을 주도적으로 이끈 사람에게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과 동시에 벌금형이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것이 비록 조직적인 유형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것을 도와주면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돈을 받고 국경을 넘게 하는 행위, 이렇게 국경을 넘어온 사람의 인신을 강제로 구속하는 행위와 이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강간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더욱 엄중한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4) 2010년 8월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讀賣新聞)은 중국 당국이 천안함 침몰 사태 이후 500km에 걸친 북한과의 국경지대에 대한 경계를 강화해 탈북자 색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나. 중국정부의 탈북자 대응 태도

첫째, 중국정부는 지속적인 탈북자들이 급증하자 중국사회 안정에 미칠 영향과 북한의 입장, 국제사회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고 있다. 중국은 남북한 양측과 국교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보호나 강제송환 문제에 모두 어려움이 있어 비공개, 비공식 처리를 희망한다.⁹⁵⁾ 즉, 탈북자문제가 공론화되더라도 난민인정이나 남한으로 입국 절차를 허용하지 않고, 제3국으로 추방한 후 남한이 신병을 인도받는 방안을 선호한다. 그리고 탈북자문제가 공론화되지 않는 경우에는 탈북자의 탈출사유가 식량난으로 인한 생존곤란임을 고려하여 이들이 중국공안에 체포될 경우 의복, 식품 등을 지급하고, 북한 측의 적극적인 송환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소극적인 자세로 묵인 또는 방조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 현지 NGO관계자들의 증언이다.⁹⁶⁾

둘째, 중국은 탈북자를 보호해야 일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으나, 북한과의 우호관계와 치안질서유지라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탈북자들을 불법체류자로 간주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유랑탈북자들의 범죄 연루로 인한 사회불안, 탈북자 보호관련 중국동포 사회의 민족의식 강화로 인한 소수민족정책 위협, 변경지역에서의 밀수 등 자국 내 이해관계로 인해 북한당국과 협조하고 있다.⁹⁷⁾ 그러나 중국은 수 만 명이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소극적인 정책은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탈북자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방치 및 난민으로서의 불인정 태도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⁹⁸⁾ 향후 국제

95) 김인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탈북자의 인권토론회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02.12.2, 52면.

96) 양수려, “재외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27면.

97)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71면.

98) 이장희, “재외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14면.

사회와 NGO는 중국의 난민정책 변화를 촉구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인식은 한국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주권침해 우려와 함께 한·중·북간의 외교적 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재중 탈북자 문제를 소수민족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처리하여 탈북자 문제가 중국동포의 민족의식 고취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는데도 있다. 결국, 중국은 탈북자 문제를 자국의 사회 안정에 미칠 영향과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불법월경자’인 강제송환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편,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자는 북한과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한국이나 제3국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중국동포와 탈북자 격리, NGO 활동가와 탈북자와의 격리 등을 통해 탈북자 문제를 비공식적, 비공개적 방법으로 희석시켜 국제여론을 무마시키고 있다.

〈표 3-2〉 중국정부의 탈북자 대응 태도

년 월 일	주요 내용
1987	중국은 북한과 탈북자 송환협정 체결
1996.10.18	중국公安부 부부장 리지오우(李紀周)와 북한 국경경비총국 이명운 부국장이 북경에서 북한주민들의 불법월경문제를 논의. 즉, 중국은 탈북자들에 의한 범 죄행위가 중국 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북한측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 ⁹⁹⁾
1997.3.14	1997년 3월 14일 제8차 중국인민대표회의에서 개정되어 10월 1일 부터 시행된 새 형법에 ‘국경관리방해죄’가 추가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탈북과정상 어려움이 증가. 중국당국은 탈북자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자를 국경과의 거리에 따라 벌금을 차등 부과하여 중국 내 체류가능성을 최대한 억제 ¹⁰⁰⁾
1999.12.16	주한 주중대사(우다웨이)는 “탈북자문제는 중국과 북한 사이의 문제로 한국이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
1999	중국은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니라 ‘식량유민’으로 규정 왕광아(王光亞)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체류 탈북자를 경제적 이주자인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음.

다. 탈북자 구금시설

중국당국은 탈북자를 ‘불법체류자’로 보고 체포하면¹⁰¹⁾ 체포기관에 따라 지역의 구금시설에 감치하여 조사와 구호를 실시한 후, 북한으로 강제송환 시킨다.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는 강제송환 전까지 국경지역 변방부대 내의 구금시설(구류장)로 이송되어 수감되고 있다.

중국 국경지역의 변방부대로는 중국 길림성에 위치한 도문변방부대와¹⁰²⁾ 용정변방부대, 화룡변방부대 그리고 신의주 국경선과 맞댄 요녕성의 단동변방부대가 있는데, 중국에서 수감된 변방부대 위치에 따라 북한으로 이송되는 국경지역 보위부가 결정되고 있다. 즉, 중국의 도문변방부대에 구금된 탈북자들은 온성군 보위부로, 용정변방부대와 화룡변방부대에 구금된 탈북자들은 회령시와 무산군 보위부로 강제송환된다. 그리고 단동변방부대를 거쳐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신의주시 보위부로 인도한다.¹⁰³⁾ 북한시민연합은 “중국 단동 지역의 안전가옥에 숨어 지내던 탈북자 13명이 2010년 5월 29일 단동변방부대에 의해 체포돼 이 가운데 어린이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북한에 강제송환됐다.”면서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탄원편지를 유엔주재 북한대사관 앞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¹⁰⁴⁾

탈북자들이 중국의 변방부대에 체포된 경우에는 변방부대 구류장이 최초 수용시설이 되지만, 국경과 멀리 떨어진 내륙에서 체포된 탈북자는 중간 경유 시설을 거쳐 국경선 변방부대로 이송한다. 즉, 밀고에 의해

99)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1996~1997, 민족통일연구원, 1996, 60면.

100)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70면.

101) 이때 체포한 탈북자의 도주를 예방하고자 포승줄로 묶거나, 족쇄 또는 수갑을 채운다.

102) 도문구류소의 경우 탈북자 송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축 확장되었으며, 2000년 집단 폭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03)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182면.

104) 안윤석, “북 인권단체, 강제송환 탈북자 구출해 주세요”, 노컷뉴스, 2010.6.12.

공안당국에 체포된 경우에는 해당구역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탈북자’로 확인되면 구치소 혹은 공안 감옥으로 이관되어 1주일 정도 억류되었다가 변방부대로 넘겨진다고 한다.

2. 중국체류 탈북자 유형

1990년대 중반의 대규모 탈북자가 발생할 경우만 하더라도 남녀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돈을 벌기 위한 탈북여성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체류 탈북여성들은 남성과 비교해 볼 때 80~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의 주된 대상이 되고 있다.

가. 친인척의 도움

북한주민들은 식량난이 극심했던 19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일가친척을 찾아 월경한 후 그들의 도움을 받아 식량을 획득한 후 귀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이 장기화되고 중국 내 일가친척들의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그들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보다는 그들의 도움을 받아 일자리를 구하거나 중국동포 집에 거주하면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식량과 약간의 임금을 받으면서 체류하다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북한으로 귀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¹⁰⁵⁾

나. 노동력 제공 후 은신처 확보

탈북 초기는 남성들이 노동력을 제공하고 현지인들로부터 은신처를 제공받는 방식이었다. 남성 탈북자들은 농촌이나 벌목현장, 공사현장 등에서 노동력을 인정받아 현지인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생활지원을 받았다.

105)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49-50면 참조.

그러나 장기간의 은신생활로 범죄와 폭력 같은 다양한 치안문제를 유발시키면서 남성노동력의 가치가 상실되어 은신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농촌일은 물론 식당 등 잡일을 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였고, 특히 1990년 후반 이후 중국 현지 남성과 혼인을 매개로 하는 은신처 확보가 쉬워짐에 따라 여성 탈북자의 비율이 급증하기 시작했다.¹⁰⁶⁾

다. 현지인과 동거

중국체류 탈북여성들 중에는 미혼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자식이 있는 기혼여성들까지 신변안전과 의식주 해결을 위해 중국남성들과 동거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⁰⁷⁾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인신매매되어 동거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인간적인 대우와 빈곤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기도 하지만, 배고픔을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탈북여성들이 매매형태로 거래되기 때문에 가족 및 이웃들의 지속적인 감시 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현실적으로 불법으로 월경한 탈북여성이 중국남성과의 동거생활 이외의 다른 체류방식을 찾기 어려웠던 것이 중국내의 현실이다. 따라서 중국으로 불법월경한 상당수 탈북여성들은 자신의 불가피한 현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중국 남성과의 동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¹⁰⁸⁾ ‘좋은벗들’의 탈북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8년 말과 1999년 초 당시 탈북여성의 비율이 75.5%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비율(51.9%)은 중국남성과 동거형태로 생활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식량난이 장기화되면서 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중국으

106) 윤여상, “해외 탈북자 실태와 대책”, 71-72면.

107) 강제송환 탈북여성 김○○과 2011년 6월 2일 면담 결과, 이 여성 역시 인신매매된 후 중국인가 동거생활을 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108)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9, 통일연구원, 2009, 321면.

로 불법일경한 후 귀환하지 않고 현지에 정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라. 주거지 없이 배회

중국에 친인척도 없이 무작정 국경선을 넘은 북한주민들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아 떠돌며 생활하고 있다. 특히, 탈북자들 중 10대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구걸과 떠돌이 생활을 한다. 이들은 잠잘 곳이 없어서 역전이나 아파트 계단, 공사관 등에서 잠자리를 해결하고 낮에는 구걸하면서 생활고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병을 앓고 있어서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구걸한 것으로 북한의 가족을 도와야 하는 형편이다. 특히, 이들은 영양실조로 신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또래보다 3~4살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차도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어 거리와 시장을 떠도는 부랑아로 전락하게 된다. 이들 중 소수는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이나 쉼터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이외의 아이들은 노동력이 없고 스스로 은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 체포되어 강제 송환되고 있다.¹⁰⁹⁾

마. 현지 적응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탈북한 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 체류하게 되면서 체류국의 사회 적응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중국내 친인척이나 조선족 집에서 기거하는 비율보다 현지인 가정에서 생활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탈북자들은 체류국의 언어를 습득하고 취업을 하는가하면, 돈을 벌어 셋집을 얻어서 생활하기도 한다. 중국

109)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53-54면.

내 한국인 기업이나 가정에서 일자리를 얻어 생활하는 경우도 있다. 극소수지만 탈북여성이 중국에 체류 중인 한국남성과 동거하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¹¹⁰⁾

제2절 중국체류 탈북자 및 강제송환 실태

1.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및 감소 요인¹¹¹⁾

가.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탈북자들은 국경을 넘는 순간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 탓에 신분노출을 피하고자 철저한 은신생활과 함께 떠돌이 생활로 인한 짧은 거주기간과 높은 유동성으로 인해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탈북자에 대한 통계는 공식 집계보다는 주로 탈북자 체류국의 현지 상황을 토대로 추산하거나 탈북자와의 면담, 탈북자 수기 등을 근거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 일부 비정부기구(NGO)의 추정치는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탈북자 규모 산출은 대체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활동가나 관련 개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중국지역 체류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다. 중국체류 탈북자들이 체포된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중국체류 탈북자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1990년대

110) 박영호 외, 2010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10.8, 376면.

111)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43-54면 재정리.

첫째, 1998년 윤여상 외 2명은 중국내 탈북자들이 신분에 따른 위협과 언어소통, 그리고 친척의 원조 등의 이유로 중국동포가 집단 거주하는 연변자치주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중국동포 거주지역의 취락구조와 인구분포 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중국내 전체 탈북자 수는 약 10만 명 선으로 대부분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의 동북 3성에 집중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¹¹²⁾

둘째, 1997년부터 중국에서 탈북자를 구호하면서 2,700명 이상과 인터뷰를 진행해온 ‘좋은벗들’은 1998년 11월 16일부터 1999년 4월 3일까지 5개월간 ‘좋은벗들’ 활동가 10여명과 보조 조사자 30여명이 중국 동북 3성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실태 및 인권 침해 양상에 대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를 작성하였다.¹¹³⁾ 이 보고서는 중국 내 체류 중인 탈북자 수를 최소 14만명, 최대 20만명으로 추정하였으며,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과 꽃제비 어린이 등과 같이 누락된 인원을 고려하면 30만 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¹¹⁴⁾

셋째, 1999년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가 중국 현지의 탈북자 2,193명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여 같은 해 12월에 발표한 『중국 내 탈북난민에 관한 현장조사 보고서』는 탈북자의 규모를 10만~20만 명으로 예상했다.¹¹⁵⁾

112) 윤여상,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실태 조사 보고서”, 생명과 인권, '98 겨울 No.10, 1998, 3면.

113) 조사지역은 중국 동북 3성 29개 시·현에 속한 총 2,479개 마을로 조사마을 거주민 3-5인의 면담을 통해 그 마을의 탈북자 관련 현황을 파악한 후, 조사마을 내 탈북자 878명과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좋은벗들 편,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정도출판사, 1999, 1-3면).

114) 불교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은 북한의 식량난민 실태 및 인권보고 기자회견을 비롯하여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좋은벗들 엮음, 1999.8.30)이라는 단행본 발간과 비디오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여 발표한 바 있다.

115)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CNKR 소식, 2004.10.18~11.2(<http://www.cnkr.org>, 검색일: 2007.10.1); 세계일보, 1999.11.21, 12면.

넷째,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탈북난민보호국제협의회)는 1999년 10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5개 조사반을 투입하여 탈북자 1,383명을 직접 면담한 후 『중국내 탈북난민 현장보고서』를¹¹⁶⁾ 발표하고, 탈북자의 규모를 10만-20만 명으로 추정했다.¹¹⁷⁾ 한편,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인 난민위원회(USCR)는 『세계 난민보고서』를 통해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가 5만 명, 북한출신 유랑민이 10만 명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¹¹⁸⁾

〈표 3-3〉 1990년대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추정

조사자 및 기관	조사기간	조사지역	규모	비고
윤여상 외	1998년	중국 헤이룽장 성(黑龍江省), 라오닝 성(遼寧省), 지린 성(吉林省)의 동북 3성	10만 명	중국동포 거주지역의 취락구조와 인구 분포 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현지 조사 실시
좋은벗들	1998.11.16-1999.4.3(5개월)	중국 동북 3성 29개 시·현에 속한 총 2,479개 마을	14-30만 명	조사마을 거주민 3-5인의 면담을 통해 그 마을의 탈북자관련 현황을 파악한 후, 조사마을 내 탈북자 878명과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	1999년	중국 현지 탈북난민 2,193명 대상 조사·분석	10-20만 명	『중국 내 탈북난민에 관한 현장조사 보고서』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1999.10.2-11.12	중국 현지 탈북자 1,383명 대상 직접 면담	10-20만 명	『국내 탈북난민 현장보고서』 * 탈북자 중 82%가 북한으로 귀환할 의사가 없으며, 탈북자 중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도 77%로 나타났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1990년대 말 탈북자 규모 추산은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 활동가나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중국체류 탈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중국내 탈북자 수를 10만~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116)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가 면담한 탈북자 중 82%(1,283명)가 북한으로 귀환할 의사가 없으며, 탈북자 중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는 77%로 나타났다.

117) 세계일보, 1999.11.21.

118) 중앙일보, 2001.6.27.

2) 2000년대

2000년부터 진행된 해외체류 탈북자 규모 추산 역시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나 관련 연구자들이 중국체류 탈북자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는데, 탈북자 수가 현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식량지원 등으로 식량난이 완화되면서 새로운 탈북자들이 감소하였고, 북한당국의 국경지역 통로의 검문검색과 경계강화로 월경이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국당국 역시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탈북자 규모가 둔화한 것으로 보이며, 대체적인 탈북자 규모를 2~5만 여명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¹¹⁹⁾

첫째, 2002년 2월 통일부가 전체 탈북자 규모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를 중국정부는 1만 명 이하, 한국정부는 2만~3만 명,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은 3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¹²⁰⁾

둘째, 2003년 6월 루드 루머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은 중국 지역 탈북자의 규모를 10만 여명으로 추정하였다.¹²¹⁾

셋째, 민주노동당은 2004년 중국 현지를 조사한 결과 2000년 이후 탈북자의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여 2004년 현재 3만 명 이하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¹²²⁾

넷째, 2004년 1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

119) 박상봉, “중국내 탈북자 현황, 정책 및 전망”, 원재천 편, 새로운 차원에서 접어든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46면.

120) 연합뉴스, 2002.3.14.

121) 조선일보, 2003.6.20.

122) 최규엽,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움(국가인권위원회, 2004.12.1); 2003년 경우 중국정부차원에서 북한으로 8,000명을 귀국시켰으며, 현재의 탈북문제는 북한에 있는 주민을 빼는 식의 기획탈북으로 소수라는 주장을 하였다.

지엄”에 초대된 중국인권연구협회 사무총장 양첵밍(Yang Chengming)은¹²³⁾ “중국의 탈북자문제와 해결책”이라는 논문을 통해 중국내 탈북자 규모가 3만 여명일 것으로 추정하였다.¹²⁴⁾ 중국 군사과학원 왕이성은 중국내 탈북자는 5만 명 이하이며, 그 중 상당수가 수시로 중국을 넘나드는 월경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3만에서 4만 명 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¹²⁵⁾

다섯째, 미 국무부는 2005년 2월 탈북자의 규모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절정에 달했으며, 2000년경에는 7만 5천~12만 5명 선으로 추산되었다고 밝혔다.¹²⁶⁾

여섯째, ‘좋은벗들’이 2005년 6~7월 국경에서 500km 반경에 있는 동북삼성 농촌지역에 대한 현장 표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밝힌 탈북자 규모를 5만 명 선으로 추정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미 국무부의 탈북자 규모 추정을 재확인한 것이다.¹²⁷⁾ 특히, ‘좋은벗들’은 2006년 중국의 동북 3성 서북쪽 오지 한족 마을(탈북 체류자 약 2만 명)과 심양(瀋陽), 대련(大連), 청도(靑島) 등 대도시 근교 지역(탈

<그림 3-1> 2006년 재중 탈북자 실태조사 지역



* 자료: 좋은벗들

북 체류자 약 3만 명)을 보충 조사한 결과 중국 내 탈북자가 약 10만 명

123) 양첵밍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직접 한국에 와서 논문을 발표를 하지 않았다.
 124) 양첵밍(Yang Chengming), “중국의 탈북자문제와 해결책”(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2004.12.1), 77면.
 125)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실태: 변화와 전망, 41면 재인용.
 126) US State Department, *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G Policy Toward them*, February 16, 2005.
 127) 연합뉴스, 2005.8.21.

으로 재 추정된 바 있다.¹²⁸⁾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도 다른 비정부기구들의 보고와 중국동포와의 현지 인터뷰를 토대로 탈북자의 규모가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¹²⁹⁾

<표 3-4> 좋은벗들의 2005, 2006 중국체류 탈북자 조사 결과

구분	2005년 표본 조사	2006년 보충 조사
조사기간	○ 2005년 6월, 12월(2차례 실시)	○ 2006년 1월~3월
조사지역	○ 연변자치주 및 요녕성 지역 1070개 마을	○ 동북3성 북쪽 오지 한족 마을과 셴양(瀋陽),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등 대도시 근교 지역 보충 조사
체류 규모	○ 조사지역 내 5만명 추정 - 조중 국경선 500km 이내의 지역 모집단 추정치로 계산	○ 조사지역 내 약 5만명으로 추정 - 상당수 탈북여성이 거주하는 조중 국경선에 500km 벗어난 내륙지역 및 대도시 조사
주요 특징	○ 탈북난민의 급격한 감소 ○ 국경변 및 농촌지역 난민이 거의 없음 - 국경변의 난민이 국경과 떨어진 내륙지역으로 이동 - 농촌마을에 난민이 대도시 근교로 이동	○ 심양, 대련, 청도, 천진, 위해, 연태, 상해 등 대도시 근교에 탈북자 분포가 높음(약 2만명) ○ 동북3성의 서북쪽 오지 한족 마을 탈북자 분포 높음 ○ 하나의 현에 1,000~3,000여명(약 3만 여명), 한족마을과 오지는 대부분 탈북여성들이 혼인 상대로 거주

* 자료: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실태: 변화와 전망, 41면

일곱째, 2006년 이후 국외체류 탈북자 규모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는 중국 내 탈북자가 크게 감소되어 2~4만 명 정도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¹³⁰⁾ 다만 중국 내 탈북자들이 연변조선족 자치주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 오지지역의 한족 마을 혹은 대도시 지역 체류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³¹⁾

여덟째, 2010년 10월 5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128)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9, 318면 재인용.

129) International Crisis Group, "Perilous Journeys: The Plight of North Koreans In China And Beyond", *Policy Report*(October 2006).

130) Yoonok Chang,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Migr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Survey Evidence from Chin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March 2008).

131)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9, 319면.

국정감사에서 중국 내 탈북자 수에 대한 박선영 의원의 질문에 “중국 안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10만 명은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변하였다.

<표 3-5> 2000~2010년 각 기관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추정

연구자 및 발표기관	발표 연도	체류 지역	규모	비고
중국정부	2002년 2월	중국	1만명 이하	통일부 국회제출 자료
한국정부	2002년 2월	중국	2~3만명	통일부 국회제출 자료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	2002년 2월	중국	3만명	통일부 국회제출 자료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HCR)	2003년 6월		10만 여명	
민주노동당		중국 현지조사	3만 명 이하	
중국인권연구협회 사무총장 양칭밍(Yang Chengming)	2004년 12월 1일		3만 여명	2004년 1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중국 군사과학원 왕이성	2005년		3~4만 명	
미 국무부	2005년 2월		7만 5천~12만 5천명	
졸은벚들	2005년 6~7월	동북3성 농촌 지역 대상 현장조사	5만 명	2005년 6~7월 국경에서 500km 반경에 있는 동북3성 농촌지역 대상 현장조사
졸은벚들	2006년 1월	동북 3성	10만 명(탈북여성 출산 어린이 5만 명)	2006년 1월 동북 3성 서북쪽 오지 한족 마을(탈북 체류자 약 2만 명)과 선양(瀋陽),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등 대도시 근교 지역(탈북 체류자 약 3만 명) 대상 135개 마을 표본조사
국제위기감시기구 (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년	중국 조선족과 현지 인터뷰	10만 명	
Yoonok Chang,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2008년		2~4만 명	working Paper Series(March 2008)
통일부장관 (현인택)	2010.10.5		10만명 추정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국내 탈북자 수에 대한 박선영의원 질문

3) 중국체류 무국적 아동

북한 여성들의 탈북이 본격화 된지 15여년이 지나면서 이들이 중국에서 낳은 2세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탈북 여성들 대부분은 북한에서 가정 붕괴(남편 사망, 이혼 등)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북한에 두고 온 자녀의 수도 늘고 있다. 부모만 탈북하고 아이만 북한에 남는 경우, 이들 대부분은 꽃제비(부랑아)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중국에서 버려지는 ‘무국적 꽃제비’들이다. 이들은 어머니가 강제 송환되거나 한국으로 간 이후에 중국인들의 책임 회피로 버려진 경우다. 탈북여성과 결혼하는 중국 남성들은 대다수 빈곤층이거나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¹³²⁾

중국에 거주하는 무국적 아동 규모의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통일부와 북한인권정보센터 자료, 현지인과의 인터뷰, 언론보도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무국적 아동이란 탈북자와 중국인 사이나 탈북자 사이에서 출생한 호적 없는 2세들을 의미한다. 즉, 중국내 무국적 아동은 부모 모두가 탈북자인 경우와 부모 한쪽만 탈북자인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데, 부모 한쪽만 탈북자인 경우는 중국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부모 모두가 탈북자인 경우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진다. 중국과 국내 입국 무국적 아동의 대부분은 탈북여성과 중국인(중국동포 포함)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들이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통일부와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국적 아동의 수는 최대 1만 5천명에 이르고, 특히 순수 탈북 고아는 2천명으로 추산하고 있다.¹³³⁾ “북한인권국민캠페인”

132) 양정아, “[中 탈북여성 현지르포 ③] 무국적 탈북 2세…국제사회 도움 절실”, 데일리NK, 2007.4.27.

133) ‘좋은 벗들’은 2006년 1월 국경주변 135개 마을을 표본 조사하여 이들 마을에서 북한여

은 2008년 자체 입수한 동영상을 통해 국내외 탈북고아 및 무국적 아동들이 1만 7천명이라고 밝혔다.¹³⁴⁾ 이러한 무국적 아동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수와 비슷한 수치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크지 않아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으며 생계와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범죄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¹³⁵⁾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고아인지 아닌지, 합법체류인지 불법체류인지를 상관치 않고 ‘무조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문명국가에서는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아이의 건강, 교육문제로 체류를 허가해주거나 연장하고 있다. 중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 인권에 대한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¹³⁶⁾ 그러나 이들은 신분 불안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그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무국적 아동들이 중국에서 겪는 고통은 신분불안, 가족해체와 생계위협, 언어장벽, 교육과 의료 및 사회서비스 배제, 육체 및 심리적 고통 등이다. 특히 부모의 사망을 목격하거나 인신매매와 굶주림에 의한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한 탈북 고아의 경우 심리적 충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나. 중국체류 탈북자 감소 요인

성과 중국남성 사이에 출생한 아이가 267명으로 파악했다. 1999년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북한여성의 수를 토대로 아동 출생률을 22%로 계산하고, 당시 북한여성 탈북자 규모 225,000명을 감안하여 탈북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규모가 49,500명이라고 추산하였다. 탈북 여성들이 강제 송환된 후 재탈북 혹은 중국내 이동을 통해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출산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9, 318면 재인용).

134) 연합뉴스, 2008.9.26; 국내 입국한 ‘무연고 청소년’은 부모 없이 한국에 온 미성년 탈북자를 의미하는데, 매달 1~2명 많게는 7~8명씩 입국하고 있다. 2009년 9월말 현재 국내에 총 90여명의 무연고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세 탈북소녀 남녘땅 첫 한가위 가슴 설레요”, 조선일보, 2009.10.1).

135) 최승진, “무국적 탈북 고아, 최대 1만 5천명 추산”, CBS 노컷뉴스, 2008.10.6.

136) 김소열, “자식 키워본 사람은 탈북고아 외면하지 말아야”, 데일리NK, 2008.9.5.

1990년대 후반 10~30만 명 규모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은 2~5만 명¹³⁷⁾ 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중국체류 탈북자들이 감소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³⁸⁾

첫째, 북한당국이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한 탈북자들을 사형에 처하는 등의 가혹한 처벌을 함으로써,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탈북 용기를 저하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1990년 중반 이후 북·중 국경을 통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들이 급증하자,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규정할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의 외국대사관 무단진입 사건 등의 사회문제를 우려하여 공안당국이 체포하여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켜 왔다. 이외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중국과 북한당국의 국경통제가 강화된 것도 탈북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국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은 중국감옥에 1~3개월 구속되어 있는 기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다. 북한은 강제 송환한 탈북자들을 정치범 수용소, 교화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에 수용한 후 강제노동에 동원하여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어 방출하는데, 그들은 또 다시 사회적 고립과 식량난에 시달리게 된다. 중국공안 당국에 체포되어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의 40%는 1~2년 안에 사망하고 있으며 10%만이 재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탈북한 후 잡혀온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북한주민들은 겁에 질려 탈북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³⁹⁾

137) 최근 미국의 소리방송은 미국 정부의 인권보고서와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중국 체류 탈북자가 3만-5만 여명이라고 밝힌바 있다(“중국, 최근 탈북자 단속 강화”, 미국의 소리방송, 2009.6.10).

138) 윤여상, “해외 탈북자 실태와 대책”, 북한, 2008년 8월호, 북한연구소, 46면 재정리.

139) 임연선, “위기에 처한 탈북민보호 구출과 그 의의”(탈북난민보호UN청원 1,180만명 서명 전달 4주년기념 세미나 자료집), 탈북난민보호·구출의 현주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둘째, 탈북자들이 급증하자 북·중당국은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주민들의 국경 이동경로를 차단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미국의 「북한인권법」 통과에 맞추어 중국내 외국공간에 대한 탈북자들의 대량진입 사태가 중국당국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자국 내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를 강행함과 동시에 북한 정부에 탈북자 근절을 위한 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 역시 압록강-두만강지역에 대한 병력배치와 삼엄한 경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도 탈북자를 막기 위한 국경경비를 강화했다.¹⁴⁰⁾

셋째, 한국과 외부세계의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등으로 북한 내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경탈출을 위한 뇌물비용(국경수비대)의 증가 등 탈북비용과 더불어 한국행을 위한 제3국으로의 이동경비가 급증하자 경비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규 탈북자가 감소하게 되었다.

넷째, 북한 당국의 여권발급 확대로 합법적인 중국 방문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분상의 위협과 경비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경을 넘어야 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외에도 장사를 위한 단기체류의 증가, 한국 등 제3국 정착의 증가 등도 중국체류 탈북자의 감소 요인이 되고 있다.¹⁴¹⁾

이상의 논의와 같이 최근 중국체류 탈북자의 규모가 급감한 이유는 북한과 중국 당국의 국경경비와 단속강화, 지속적인 강제송환, 북한 내 식량사정 완화 및 탈북비용의 증가로 인한 신규 탈북자의 감소, 여권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인 중국방문 확대, 장사를 위한 단기체류의 증가, 한국 등 제3국 정착 증가 등으로 평가된다.

2005.5.17, 1면.

140) 위의 글, 1면.

141)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통일연구원, 2007, 46면.

2. 중국체류 탈북자 강제송환 규모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규모는 정확하지 않으나 매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 북송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인권단체 등에서 밝힌 강제 송환 탈북자 규모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 국무원 산하 국책 연구소가 1999년 2월부터 7월 12일까지 선양, 연지, 단둥, 훈춘 등 중국 국경도시를 실사한 후 작성한 『북한의 불법 월경 기아자 및 북한 사회의 현상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탈북자의 수는 1996년 589명, 1997년 5,439명, 1998년 6,3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¹⁴²⁾ 미국의 난민위원회(USCR)는 1999년 이후 중국 국경수비대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탈북자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1년 봄 중국당국이 탈북자 단속과 강제송환을 강화한 뒤 6월과 7월에 6,000명이 체포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탈북자 난민 보호 UN청원 운동 본부’는 1998년 중국 길림성에서만 6,500명의 탈북자들이 강제송환 되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처형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¹⁴³⁾ 중국 측이 집계한 탈북자 송환자가 연간 6,000명에 이른다면, 한국과 중국정부가 주장했던 1~3만이라는 중국체류 탈북자 수를 설명하기에 어려운 규모이다.

둘째,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정신철(鄭信哲) 연구원은 격월간 학술지 『중남민족 대학저널』 2007년 5·6월호에 기고한 “한반도 정세가 조선족 지역발전과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연변조선족 자치주

142) 한국일보, 1999.9.30.

143) 조선일보, 1999.11.13.

의 공식통계 자료를 인용하여 2002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송환한 탈북자가 4,809명에 이르고, 이들 중 중국동포 자치주가 직접 체포해 송환한 탈북자는 3,732명이었다고 밝혔다.¹⁴⁴⁾

셋째, 미국의 비영리 인권단체인 난민위원회가 발표한 ‘세계 난민보고서’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탈북자를 5만 명에서 6만 명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⁴⁵⁾ 그리고 미국의 민간단체인 난민·이민위원회(USCRI)는 『2006년도 국제난민조사』 보고서에서 중국 당국은 매주 100여 명의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으며, 2005년 한해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는 이후에도 유엔기구와 미국 NGO의 자료를 바탕으로 2007년에는 1,800명이, 2008년에는 대략 1,000명 미만의 탈북자가 중국에서 북한으로 송환되었다고 밝혔다.¹⁴⁶⁾

넷째,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08년 2월 5일에서 4월 5일간 2000년 이후 탈북자 100명(남자 49명, 여자 5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북한으로 송환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32%(32명)가 강제송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⁴⁷⁾

〈표 3-6〉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경험이 있습니까?

강제송환 경험	빈도(명)	비율(%)
예	32	32.0
아니오	68	68.0
합계	100	100.0

* 자료: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2008, 683면.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국에 입국한 탈북

144) “중국, 2002년 탈북자 4,809명 북송”, 연합뉴스, 2007.6.8;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통일연구원, 2007, 46면.

145) 권경복, “중국 체류 탈북자 얼마나 되나”, 연합뉴스, 2001.6.26.

146)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175면 재인용.

147)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8, 683면.

자 80명과 중국 체류 중인 탈북자 26명 등 106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 36%인 39명이 최소 한 번 이상 강제송환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고 발표한 가운데,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20만~30만 명으로 추정하면서, 이 가운데 7만~10만 명 정도가 강제로 북한에 끌려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⁴⁸⁾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강제송환·강제실종 포함)』에 따르면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 322명을 대상으로 강제송환 경험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305명 중 97명(31.8%)이 강제송환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중 2007년에 송환된 사람은 10명이고 2008년의 경우 2명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에도 중국에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¹⁴⁹⁾

〈표 3-7〉 탈북자의 강제송환 경험자 비율

강제송환 경험	빈도(명)	비율(%)
있다	97	31.8
없다	208	68.2
합계	305	100.0

* 자료: 박흥순 외, 2009 북한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176면.

이상의 연구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중국 체류 탈북자들 중 30% 이상이 중국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이외에도 동아일보(1996.12.26)가 입수한 ‘길림성 변경관리 조례 선전제강’에 따르면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탈북자 140명이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고, 1998년 12월 16일 ‘북한인권시민연합’은 탈북자 150명이 중국 길림성 통화시 공안당국에 검거

148) 차대운, “탈북자 열에 넷은 강제 복송됐다 다시 탈출”, 연합뉴스, 2010.4.26.

149) 박흥순 외, 2009 북한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176면.

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003년 12월 탈북 난민보호운동본부가 밝힌 중국의 변방부대 구류소에 수감된 탈북자 수를 <표 3-8>과 같이 밝혀 주목을 받기도 했다.

<표 3-8> 중국변방 부대 수감 탈북자 현황(2003년 12월 현재)150)

구 금 장 소	지린성 투먼구류소	훈춘 구류소	통진구류소	선양구류소	계
수감 탈북자 수	482	56	162	162	862

* 매주 3차에 걸쳐 100여 명의 탈북자를 강제복송

다섯째, 통일연구원이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입국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 1,055명(남성 20.7%, 여성 79.3%) 중 243명(23.0%)이 탈북으로 인해 강제송환되었던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¹⁵¹⁾

<표 3-9> 2010년 국내입국 탈북자 대상 강제송환 경험 조사

구분	사례수(명)	비율(%)
강제송환 경험 있음	243	23.0
강제송환 경험 없음	812	77.0
계	1055	100.0

* 출처: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25면.

결국,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정치적 박해를 피해 중국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왔다가 대부분 북한으로 되돌아가는 ‘불법 입국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탈북자를 체포한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강제송환 탈북자 수를 정확히 파악할 없으나, 언론매체나 탈북자 관련 단체들의 주장을 종합해 보면 최소 수 만 명에서 최대 7만-10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할 수

150) 2003년 12월 6일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강제복송현황발표 내용.

151)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24면.

있다. 이러한 추정치는 상술한 바와 같이 1990년 말 중국체류 탈북자가 30만 명이라는 주장을 고려하여 강제북송된 탈북자 23%와 30%이상이라는 설문조사에 근거해볼 때 가능한 수치이다.

<표 3-10> 중국당국의 탈북자 송환 인원

강제송환 년도	송환자 수	출처
1996	589명	중국 국무원 산하 국책 연구소가 동북 3성 국경도시를 실시한 후 작성한 보고서
1997	6,439명	
1998	6,300명	
2001 6,7월	6,000명	미국 난민위원회(USCR)
2002	4,809명(엔벤조선족 자치주를 통한 송환)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정신철(鄭信哲)이 학술지 중남민족 대학저널에 기고한 논문 『한반도 정세가 조선족 지역발전과 안정에 미치는 영향』
1990년대~2001년	5~60,000명	미국 비영리 인권단체인 난민위원회(USCR)가 발표한 『세계 난민보고서』
2005	5,000여명	미국의 민간단체인 난민·이민위원회(USCRI) 『2006년도 국제난민조사 보고서』
2007	1,800여명	
2008	1,000여명	
2009 조사	7만~10만명	북한민주화운동본부(2009.8-12) 국내입국 탈북자 80명과 중국체류 탈북자 26명 등 106명을 면접조사 결과 36%가 강제 송환된 경험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산출
* 북한민주화운동본부는 2009.8.~12월간 탈북자 106명을 면접조사한 결과, 중국체류 탈북자 20~30만명 중 7만~10만 정도 가 강제 송환되었던 것으로 파악		
* 탈북자 관련 연구기관에서 강제송환 경험 유무와 관련 설문조사 결과 23-32%가 강제 송환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		

제4장 북한의 탈북자 정책 및 탈북자 구금시설

제1절 북한의 탈북자 처벌 규정 및 대책¹⁵²⁾

1. 탈북자 처벌 규정 및 과정

가. 탈북자 처벌 규정

전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 불법체류 중인 탈북자 중 30% 정도가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되어 강제 북송되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⁵³⁾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중국의 변방부대를 거쳐 북한으로 강제송환되면 국경지역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¹⁵⁴⁾에서 조사한 후 처벌수준을 결정한다. 보위부는 조사과정에서 강제송환 탈북자가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형법 제62조(조국반역죄) 위반자들은 중대한 정치범으로 간주하여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무기노동교화형, 재산몰수형을 비롯하여 최고 사

152) 김윤영,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9, 48-49면; 김윤영·조용관,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201-215면.

153) 탈북자들은 중국-북한 사이의 세관을 통해 송환된다. 탈북자들이 주로 송환되는 장소는 단둥-신의주세관, 투먼-남양세관, 난평-무산세관, 썬허-회령세관, 카이산툰-운성세관 등이다.

154) 특히 국가안전보위부 요원 양성 교육기관인 평양기술대학(국가안전보위부 정치대학)의 실습내용은 탈북자 색출과 송환활동 지원, 위장 탈북자 양성 및 한국인 대상 정보 수집과 포섭 등의 교육을 한다(김윤영,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9.6, 58면).

형까지 선고한다. 조국반역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한국행 시도, 남한 사람이나 교회 및 기독교인 접촉 등의 사실이 드러나면 형법 제233조 비법국경출입죄에 의해 정상이 무거운 경우로 분류하여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선고한다. 북한당국은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형벌을 주기에는 경미한 단순 탈북자들을 노동단련대로 보내고 있다. 즉, 단순 탈북자들은 대부분 탈북횟수, 탈북이유, 체포 장소, 탈북 후 행적 등을 고려하여 재판 없이 1~6개월간의 ‘노동단련형’을 선고한다.¹⁵⁵⁾ 그러나 실제에 있어 탈북자 처벌은 형법상 처벌 절차에 따르지 않고 변호나 재판절차 없이 공개처형을 하는 등 인권유린을 통해 체제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¹⁵⁶⁾

2004년 개정 형법에 규정된 탈북자 처벌과 관련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형법 제62조는 ‘조국반역죄’를 “국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는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¹⁵⁷⁾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2004년 개정 형법은 구형법의 단순월경 행위에서 규정한 국경을 ‘넘는자’의 경우 형법 제233조(비법국경출입죄)

155) 최근 유엔인권결의안 및 북한인권보고서 등에 영아살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됨에 따라, 북한당국이 강제송환한 임신여성에 대한 노동 및 낙태에 매우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05년 이후 임신초기여성의 경우 경미한 노동에 참여시키나, 임신중반기 이후 여성은 중환자의 경우에 준하여 노동을 면제해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수암,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탈북자의 역할, 북한민주화위원회 제1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북한민주화위원회, 2008.2.15, 12면.

156) 이○○, 2011년 6월 2일 면담결과 확인.

157) 2년의 노동단련형은 1년의 노동교화형에 해당한다.

에서 국경을 ‘넘나든자’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형법 제234조(비법국경출입협조죄)는 “국경관리부분 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탈북자들의 처벌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탈북자의 수가 급증하고, 국경수비대 등이 북한주민의 ‘도강’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⁸⁾

〈표 4-1〉 북한형법의 탈북관련 처벌 조항

구분	제11차 개정형법
조국반역죄(제62조)	국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비법국경출입죄(제233조)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자는 2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법국경출입협조죄(제234조)	국경관리부분 일군이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드는 자를 도와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돈 또는 물건을 받고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출처: 2007년 10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령 제2403호로 수정보충.

위에서 규정한 탈북자 처벌 규정 외에도 형법 제104조(외국화폐매매죄), 제106조(외화관리질서위반죄), 제107조(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 산 죄), 제198조(력사유적 밀수, 밀매죄) 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입국법(1996년 제정, 1999년 개정)은 “국민이 국경지역여행증명서 없이 출입국을 한 경우 벌금을 물리거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출입국법 제45

158) 박영호 외, 2010 북한인권백서, 384면.

조)”고 규정하고 있다.

나. 탈북자 처벌과정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약2주 내외 동안 1차적(기초조사)인 조사를 받게 되는데, 조사결과에 따라 탈북자들의 처벌 형량이 결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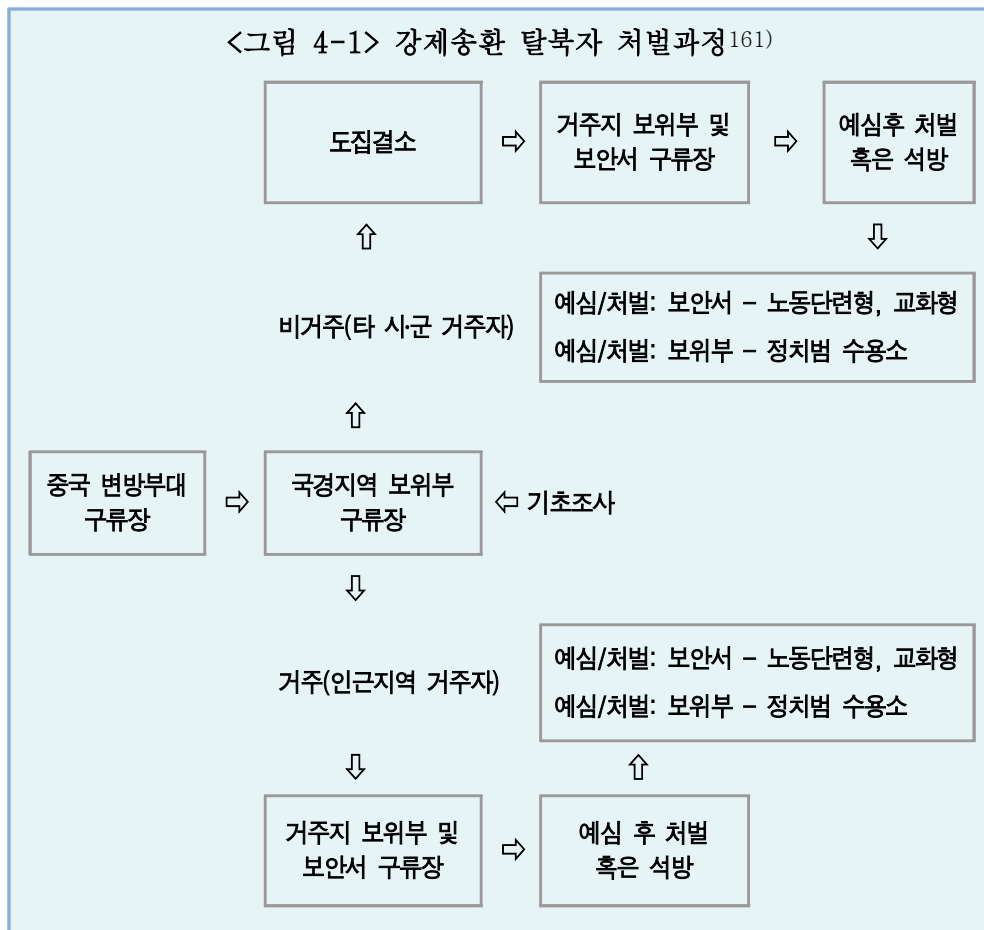
〈표 4-2〉 강제송환 탈북자 국경보위부 처벌 내용

적발 내용	처벌 내용
한국행 시도, 남한사람이나 종교인(교회 및 기독교) 접촉 등이 발각된 경우	‘조국반역죄’가 적용되어 정치범수용소 혁명화구역이나 교화소에 수감
정치적인 동기가 있는 자로 의심받거나, 중국에서 1년 이상 체류자, 재일조선인 귀국인 경우	‘중범죄자’로 간주되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단순 탈북자인 경우	탈북횟수, 탈북이유, 체포장소, 탈북 후 행적 등에 따라 1개월~6개월 정도의 로동단련형 처분을 받고 출신지역 로동단련대에 수감
경미한 경우(식량구입 후 북한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체포된 경우 등)	국경지역 보위부 조사가 끝나면 출신지역 인민보안부에 인계된 후 귀가조치

국경지역 보위에서 조사를 받은 강제송환 탈북자들은 도 집결소를 거쳐 출신지 관할 인민보안서(경찰서, 이하 보안서)나 보위부 구류장으로 이송되어 처벌을 받는다. 즉, 온성군, 회령시, 무산군, 혜산시, 신의주시 등 해당지역 탈북자들은 해당 보안서로 이송하고, 타 지역 탈북자들은 함경북도 청진, 양강도 해산, 평안북도 신의주에 있는 도 집결소로 이송을 한다. 이때 국경지역 보위부의 기초조사 과정에서 보위부 취급대상자로 판명된 자들은¹⁵⁹⁾ 탈북자 출신지역 보위부로 연락을 취해 담당 보위부원이 직접 와서 호송하도록 하고 있다. 직접호송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탈북자와 함께 집결소로 이송한다. 탈북자들이 도 집결소로 이송되

159) 중국에서 한국인과 연계한 활동을 한자, 기독교를 접한 자, 한국행 시도나 인신매매 등에 주동적으로 개입한자 등은 보위부 취급대상자가 된다.

면 출신지역 담당 보안원이 호송을 올 때까지 구금상태에서 대기하며 강제노동과 사상교육을 받게 된다. 이때 호송 담당 보안원의 교통비와 숙식비는 탈북자나 그 가족이 부담을 해야 하는데, 탈북자 가족의 경제사상이 좋지 못한 경우는 같은 지역 탈북자가 집결소로 들어와 담당 보안원이 호송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탈북자들의 집결소 구금기간이 길게는 6개월에 이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¹⁶⁰⁾



160)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185-186면.

161) 위의 책, 187면.

탈북자들이 출신지역 보안서나 보위부 구류장으로 이송되면 그 곳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받은 후 사법처리를 한다. 보안서의 조사결과 사법처리 대상자로 분류되면 대체로 최소 1개월 이상의 조사기간(예심)과 기소, 재판에 이르기까지 대략 3개월 정도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경미한 탈북자로 간주된 경우는 구류장에 구금하지 않고 행정처분에 의해 거주지 시·군·구역 로동단련대에 수용하는 결정을 받거나 곧바로 훈방하는 경우도 있다.

2. 북한의 탈북자 대책

가. 탈북방지 단속 강화

1) 국경지역 경계강화

북한당국은 최근 국경주변 경계강화와 조직사업 등을 통해 탈북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2004년 4월경 북한당국은 탈북자 방지를 위해 국경지역 완전봉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방위원회 명령을 하달하여 북·중 국경지역을 4중 감시체제¹⁶²⁾로 전환한데 이어서, 탈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서 2004년 12월 초부터 보위사령부,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당 기관, 인민위원회(해당지역 ‘인민반’) 등 5개 기관 ‘합동검열그루빠(검열단)’를 조직하여 함북 무산군과 양강도 대흥단군 국경수비대에 대한 집중 검열을 실시하였다.

2006년 9월과 10월에 국경주변으로 통하는 도로에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여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와 보안서 합동으로 차량을 단속하기 시작

162) 4중 감시체제란 국경에 가장 가까운 국경경비대(제1전진), 국가안전보위부(제2전진), 노동적위대(제3전진), 인민군(제4전진)을 의미한다. 이들은 주요 탈북 경로에 목적과 대인합정까지 가설하여 탈북자를 색출하고 있다.

했다가 11월부터는 인민군 보위소대 단독으로 무기한 통제검열을 실시하였다. 또 중국 정부와 협의하여 회령의 전 구간과 그 외 도강이 빈번한 국경주변에 철조망을 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2007년 6월 북한과 중국의 합의하에 철조망은 중국에서 무상 지원하고 양측이 국경주변에 철조망을 치는 것에 동의했다. 중국도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국경지역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했고 북한 역시 탈북자 방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탈북 루트 중심의 국경지역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장벽을 쌓아 주민들의 탈북을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⁶³⁾

2) 주민단속 강화

북한당국은 주민들의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경지역의 경우 저녁 9시가 넘으면 도로나 철길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국경지역 마을에서는 성분이 좋은 일반인으로 조직된 규찰대 및 순찰대를 가동하고 있다.¹⁶⁴⁾ 또한 해상을 통해 탈북이 이루어지자, 국방위원회는 출입항 어선들에 대한 해안경비초소의 단속과 검열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¹⁶⁵⁾

인민보안부는 2010년 4월 ‘타격대’ 설립을 지시한데 이어서, 6월 각 시·군·구역의 단위별로 인민보안부대원 12명으로 구성된 ‘타격대’를 조직하여 탈북자나 행방불명자가 있는 가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즉, 인민보안부 타격대는 핸드폰 사용자, 마약 밀매업자, 탈북자를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북한의 시·군·구역 단위가 약 200개인 점을 감안하면 북한 전체에 약 2,400여명의 타격대원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타격대의 대장은 시·군 보안서의 수사지도원이나 감찰지도원이 맡고 있다. 2010년 11월 8일 인민보안부 ‘타격대’가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163) 2006-2007 북한 사회 변화와 인권, (사)좋은벗들, 2007.11, 96-98면 채정리.

164)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97호, 2009.9.22.

165) NK 지식인연대, 2009.10.1.

모든 열차를 40분~1시간씩 정차시키고 여행자는 물론 열차승무 보안원들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⁶⁶⁾

<그림 4-2> 국경지역 탈북단속 강화 사례

2006년 5월까지 국경연선지대 보안서들에서는 당 조직부로부터 각 리, 동 담당보안원을 1명에서 3명으로 늘리라는 통보가 내려왔다. 목적은 전국적으로 함경북도로 이동하는 탈북자들이 발 부칠 곳이 없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2006년 5월 탈북자 ○○○).

2006년 5월, 국경연선에서 중국 도강자들을 막기 위해서 경비사령부 검열과 보위사령부 검열이 매일 진행되고 국경경비대 초소들에게까지도 특별단속검열이 시작되었으며 국가안전보위부와 보안서들에서도 총출동하여 밤 10~12시 사이에 매개 가정집들에 대한 숙박검열을 진행하여 타 지방 사람들은 무조건 보안서에 넘겨 조사 확인 후 내보내고 있다(2006년 5월 탈북자 ○○○).

함경북도 회령 시내에서 국방위원회 검열을 계기로 도강자, 밀수, 밀매자 단속과 즉결처리가 강화되고 있다. 시내와 주변에서 밤 10시 후 통행자들은 무조건 단속하여 신분과 용무를 확인해야 되며 몸수색을 당하고 있다. 국경경비대와 보안서에서 순찰대를 항시적으로 배치하고 있어 살벌한 분위기가 돈다. 2006년 7월 28일 아침 6시 회령시 역전동에서는 전체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총회를 하였는데 도강을 기도하던 신의주의 73세 로인과 딸, 단천의 44세 남편과 처, 그들을 재워주고 도강 길안내자를 소개해 준 집 아주머니와 아들, 안내자와 도강했다가 잡힌 여자를 공개심판하고 노동단련대로 데려갔다(2006년 7월 탈북자 ○○○, 함경북도 회령).

이와 같이 북한당국에 의한 탈북단속이 강화되면서, 국경수비대나 도강 전문브로커에게 지불해야 하는 탈북비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또한 탈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는 국경수비대들이 도강자로부터 돈을 수수하더라도, 사후에 이를 신고하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지시가 있었다. 결국, 탈북비용과 단속될 위험이 증가되면서 중국에서 돈을 벌기 위한 단순탈북자는 감소하게 되었다.

3) 탈북단속 교양

중국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 중에는 북한주민들에게 탈북하지 말 것을 교양하는 강의에 동원되기도 한다. 이들은 탈북 후에 겪은 여러 가

166) “북한 인민보안부, ‘타격대’를 통한 탈북자 가족 감시”, 열린방송, 2010.8.16; “북한 인민보안부, ‘타격대’를 통한 주민통제 강화”, NK지식인연대, 2011.11.8.

지 피해 사례를 주민들에게 선전하면서 탈북하지 말고 지금 사는 곳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극복하고 살라는 식으로 강의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2007년 1월 국경지역을 대상으로 “무단숙박을 시키지 말데 대하여, 전화기를 숨기지 말고 바칠 것 등에 대하여”라는 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국경지역이 아닌 외지에서 온 사람은 부모, 친척, 친구더라도 무조건 신고·등록하도록 하고, 내륙에서 온 사람들의 돈을 받고 숙박시키다 적발되면 탈북자로 취급하여 징역에 처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식량난 이후 국경주변에서 장사를 하거나 밀수, 도강을 하려고 국경주변에 와서 아무 집에서나 돈을 주고 하룻밤 숙박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 난데다 국경지역 주민들은 그런 숙박비가 나름대로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암암리에 성행하던 방식이었다.¹⁶⁷⁾ 이외에도 북한 전역에서 보위사령부와 노동당 중앙 조직지도부가 중심이 된 ‘비(非)사회주의 검열그루빠’가 주민검열을 강화하여 탈북자가 브로커를 통해 주민을 접촉하는 행위, 중국과 남한 영상매체 유포, 각종 사회기강 문란 행위 및 반정부 활동 등을 집중단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좋은벗들에 따르면, 2009년도에 함경북도 청진시 군중 강연회에서 “강타기 하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무조건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 취급을 한다”고 경고한데¹⁶⁸⁾ 이어서, 함경북도 청진시 보위부는 2009년 8월 5일부터 탈북을 막기 위해 유사한 정치강연을 지속하였다.¹⁶⁹⁾ 그리고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도 2009년 11월 5일 오산동주민들에게 탈북예

167) 좋은벗들에 따르면, 북한당국은 함경북도 청진시 군중 강연회에서 “강타기 하면 무슨 이유에서든지 무조건 조국을 배반한 반역자 취급을 한다.”고 경고했다(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67호, 2009.2.24); 함경북도 청진시 보위부는 2009년 8월 5일부터 탈북을 막기 위해 유사한 정치강연을 지속하였다(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94호, 2009.9.1);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도 2009년 11월 5일 오산동주민들에게 탈북예방 대중정치사업을 실시하고 시, 군당 조직선전선동부는 “도강하는 세대를 100% 찾아내기 위한 전투를 벌일 것”을 지시하였다(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12호, 2009.12.8).

168)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67호, 2009.2.24.

169)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94호, 2009.9.1.

방 대중정치사업을 실시한 후, 시, 군당 조직선전선동부에서 “도강하는 세대를 100% 찾아내기 위한 전투를 벌일 것”을 지시한 바 있다.¹⁷⁰⁾

<그림 4-3> 탈북단속 교양 사례

각 시, 군들은 탈북자 집결소에서 말 잘하고 글 잘쓰는 탈북자들을 뽑아 교양하고 제고장에 끌고 가서 탈북해서 천대받고 학대받은 사실들을 엮어 주민들에게 연설하게 한다. 최대한 비참하게 하는데 눈물콧물을 흘리며 말하게 해서 듣는 주민들조차 거북할 정도이다. 녀성의 경우엔 어떻게 성노리개로 생활을 하였으며 남조선놈들로부터 어떻게 도와준다하고 구슬림에 넘어가 매일 성학대를 받다가 싫증이 나니 다른 탈북여자를 꼬이고 자기를 버렸다는 내용이다. 청진에서 탈북자들 중 똑똑한 사람들을 뽑아 국경연선을 돌며 강연하는데 대부분 여자들이다.

신민주에서도 남신의주에 탈북자 집결소가 있는데 한달에 한두번 정도 버스에 탈북자들이 가득 실려 나온다. 전국 각지 보위부원이 여기에 모여 해당지역의 탈북자 중에서 사람을 골라 며칠간 실컷 매를 들이대고 반성문을 작성해가지고 연습시킨 후 합격되면 제고장으로 끌고 가서 강연시키는데 강연 뒷부분에 보위부 사람이 나와 ‘바로 이런거야. 그러니 아무리 힘들어도 극복하라. 그래도 제 고장이 제일이야. 사소한 발언들을 주의하라. 적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를 와해시켜보려고 책동한다. 이제 이런 일에 연관이 있거나 탈북할 경우 온 집안에 피해가 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원히 정치적으로 살아남기를 바라지 말라’는 등으로 연설을 반복한다(2007년 6월).

4) 탈북자 처벌 강화

최근 북한은 주민들이 가족들을 대동하고 집단 탈북하는 사례가 빈발하자 탈북자들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¹⁷¹⁾ 2009년 국가보위부는 탈북 차단 비상대책을 점검하면서, 탈북자 가족 및 친척들에 대한 사상동향 파악 및 감시,¹⁷²⁾ 사상교양 강화, 국경지역 여행증¹⁷³⁾ 및 숙박검열, 국

170)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12호, 2009.12.8.

171) 2011년 6월 11일 북한 주민 9명(성인 남자 3명과 성인 여자 2명, 어린이 4명)이 11일 오전 6시 5분 전마선(소형 선박)을 타고 서해 우도(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인근 해상으로 넘어왔다. 이들은 황해도 내륙지역에 거주하던 형제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이후 북한 선박이 남측으로 넘어온 사례는 모두 31건에 이른다(김영식, “北주민 9명 서해로 귀순… 형제가 가족 데리고 탈출”, 동아일보, 2011.6.16).

172)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94호, 2009.9.1.

173) 국경통행증이 없는 경우에는 벌금을 최소 10만원 이상 부과하는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된다(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12호, 2009.12.8).

경 경비사령부 검열¹⁷⁴⁾ 등을 강화하였다. 2009년 1월 20일부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이 탈북 혹은 탈북을 기도하다 적발되면 성인과 동일한 법적 제재를 하도록 하는 문건이 도재판소 차원에서 하달된 바 있다.¹⁷⁵⁾

첫째, 북한은 2004년 말 도강자들을 징역 5년까지 엄중 처벌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북한전역의 주민들에게 향후 도강자들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탈북자 처벌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즉, 북한은 인민반회의(2006년 초 공식조직), 포고, 방침, 집회, 공안기관(인민보안부, 국가안전보위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탈북자 처벌 강화정책을 공고하기 시작했다.¹⁷⁶⁾

둘째, 북한은 2008년 4월 경 ‘탈북자에 대한 처벌강화 조치’를 하달했다. 이 기준에 따라 2000년 이전 탈북자는 ‘고난의 행군’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먹고 살기 위해 탈북한 것으로 간주하여 노동단련대(6개월 미만 경범죄자 수용)로 보내 단순 처벌하고, 이후 탈북자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탈북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조건 교화소(2년 이상 중범죄자 수용)형을 선고하는 강경조치를 단행하였다.

셋째, 북한은 탈북자들의 자발적 송환을 위해 탈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선전하는 등 회유를 하여왔지만 탈북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2009년 11월부터 탈북자를 차단하기 위한 작전을 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¹⁷⁷⁾ 특히, 북한당국은 2010년 3월 초 ‘탈북자 등 민족반역 세력을 철저히 응징하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각 지역 공안기관에 하달한

174)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66호, 2009.2.17.

175) 위의 글.

176) 휴먼라이츠워치(HRW), “도강자(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정책”, 휴먼라이츠워치(HRW) 인터넷 리뷰(<http://www.hrw.org/en/news/2007/03/06-1>, 2011.5.20 검색), 2007.3.5, 3면.

177) 2009년 11~12월 북한의 양대 공안기관 수장(首長)인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수석 부부장과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이 잇달아 방중(訪中)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 측과 탈북자 문제를 논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후, 북한 전역에서 탈북자 등 외부와 연계된 주민들을 색출·단속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 국경지역의 탈북자 가족들은 내륙지방으로 추방하고, 3~4년 전 외부와 통화하다가 적발된 주민들에 대한 재조사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¹⁷⁸⁾

넷째, 최근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탈북자를 사살하라는 지침을 하달하였다. 2010년 7월 21일 탈북을 차단하기 위해 탈북자를 사실상 사살해도 좋다는 취지의 ‘국방위원회 0082’ 지침을 변경(국경)지역의 군부대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보위부 등은 ‘어떤 이유로든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을 넘어오는 자는 몰라도 중국으로 넘어가는 행위는 용서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¹⁷⁹⁾

다섯째, 북한은 강제송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한국인 및 선교사 접촉, 한국행 시도, 기독교 신자 등으로 밝혀지면 조국반역죄로 다스려 최고 사형에 처하고 있다. 북한은 종교 활동이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 정책과 주체사상에 가장 큰 걸림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을 “적대 분자”로 분류하여 지속적인 박해와 숙청을 해왔고, 기독교인들은 반혁명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2006년 11월 말~12월초와 2006년 7월 중순~12월 초 사이에 중국으로 탈출했던 16명의 탈북자들과 인터뷰한 다음과 같은 증언들은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¹⁸⁰⁾

“2004년 이전에는 도강자들은 두 달에서 석 달 간 로동단련대에 보내졌습
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범은 교화소에서 1년, 두 번째는 3년입니다. (중국에 있
는 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은 10년간 관리소(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2004년 말 인민반회의에서 이 새로운 방침에 대해 들었습니다.”(셋별 출신의
40세 여성, 2006년 12월 1일, 중국).

178) 안용현, “反김정일 세력 차단 ... 탈북자 소탕 명령”, 조선일보, 2010.4.22.

179) 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제2호, 40면

180) 휴먼라이츠워치(HRW), 도강자(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정책, 6면에서 재이용.

“2005년 말, 도강자들을 다른 범죄자들과 똑같이 처리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은 최하 3년형에 처해졌고, 별도의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한으로 가려다가 잡힌 사람들도 같습니다.”(무산 출신의 33세 여성, 2006년 11월 26일, 중국).

5) 탈북자 가족 강제이주

최근 김정은이 탈북자 단속 및 차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은 국경 경비 강화는 물론, 탈북자 가족을 통제구역으로 강제이주시키는 등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¹⁸¹⁾ 2005년에도 회령에서 탈북자 가족 200여 가구를 함남 신흥군과 단천시 등 산간오지로 추방한 바 있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보내준 돈을 탈북 자금을 사용해 탈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북한당국은 최근 별도의 탈북자 가족 추방지역을 만들어 탈북자 가족을 고립시키고 한국 정착 탈북자와의 연락을 감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치범수용소와는 별개로 북한에 ‘탈북자 가족수용소’라는 또 다른 형태의 인권 불모지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즉, 2011년 4월 7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탈북자 가족을 함경남도로 강제이주시킨 것을 시작으로 300여 가구가 추방될 예정이다. 회령시에서 추방된 탈북가족들은 함경남도 금야군의 한 협동농장으로 강제이주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곳에는 주민들의 왕래를 막기 위해 철조망과 차단초소, 경비막사 등이 2010년에 만들어졌다. 강제이주 대상자들은 가족들 중 한국행 탈북자가 있는 것으로 북한당국이 확인된 자들이다. 북한 당국은 회령시에 행방불명자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도 한국행 여부를 계속 조사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노동당, 군, 보위부로 구성된 합동특

181) 최정호, “권력 세습 앞둔 김정은, 탈북자 사냥으로 군기 잡기 나서나”, 헤럴드 경제 (<http://biz.heraldm.com>), 2011.5.1.

별조사단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⁸²⁾ 북한의 회령시 경우 탈북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파악되고 있다. 시 인구는 14만 명이지만 가구 수는 무려 8만 가구나 되는데, 이는 가족 중 일부가 탈북하여 1, 2인 가정이 많기 때문이다. 북한의 탈북자 가족 추방 움직임은 회령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중 국경 전역에서 포착되고 있다. 대북 매체 데일리NK도 지난 4월 1일 “양강도에서 탈북자 가족 1000가구를 추방 명단에 올렸다”고 보도했다.

최근 북한이 국경 일대의 탈북자 가족을 추방한 것은 외부 정보 유입의 창구가 되는 탈북자 가족을 추방해 내부 동요를 차단하는 한편, 한국 정착 탈북자들이 대북전단 살포 등 반복 활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그 가족들이 피해를 당한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탈북자 가족이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보낸 돈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는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동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나. 해외체류 탈북자 강제송환과 회유

1) 강제송환

북한은 1990년 중반 탈북자가 급증하자, 이들을 ‘공화국을 배신한 반역자’로 규정하여 ‘조국반역죄’로 다스려 처형하는 등 공포와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과 검거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이 끊임없이 증가하자, 체포조를 중국에 파견하여 탈북자를 체포한 후 강제송환하고 있다.

182) 2011년 4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서 실세인 국방위원회 행정국장 이명수가 인민보안부장에 임명되었는데, 이는 주민들의 감시와 통제 강화로 내부의 기강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북한당국이 중국 내에서 탈북지원 활동가, 탈북 브로커, 북한 정보유출 브로커 등 주요 탈북자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체포활동을 수행하고 있다.¹⁸³⁾ 즉, 북한은 현지공간을 중심으로 보위부 요원과 현지 공관원 3~4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편성하거나 보위부 ‘그룹빠’를 현지에 파견하여 탈북자의 색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¹⁸⁴⁾

1998년 4월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북·중 국경지역의 각 시·군 보위부에 20대 초중반 보위부원 30~40명 규모로 조직된 ‘추격과’를¹⁸⁵⁾ 신설한 후 해외 탈북자 색출과 검거에 투입했다.¹⁸⁶⁾ 최근에는 보위부가 탈북자 단속을 위해 해외반탐 요원들을 중국 공안기관에 상주시켜 탈북자들의 체포와 은신처 적발에 나서고 있다.¹⁸⁷⁾ 이외에도 2010년 6월에는 북

183) 2003년 1월에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이춘길은 ‘상당수의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에 상주하면서 탈북자들과 반복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들을 감시 또는 납치한다’고 증언 했다.

184) 임채완, “중국 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69면; 이금순, “관련국의 탈북자정책: 변화와 전망”, 평화연구 제28집, 경북대학교 평화문제 연구소 2003.12, 111면.

185) ‘추격과’는 중국공안과 사전 협의 없이 북경, 상해, 심양, 장춘, 대련, 청도, 옌지 등 주요 도시 호텔에 거점을 마련하고 탈북자를 색출, 유인 검거한다. 추격과 요원들에게 체포된 탈북자들은 중국 공안에 넘겨져 다시 북한으로 송환하는 합법적 방법을 쓰지만 주요 인물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직접 북한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 심지어 북한의 보위부 공작원들은 중국 공안당국이 탈북자 색출에 적극 나서도록 유도하기 위해 탈북자로 가장해서 중국 동북지방의 민가를 습격하거나 강도, 절도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을 조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오경섭 외, 2006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6, 참조).

186) 이 조직의 주요 활동을 보면 ▷2000년 1월16일 중국 옌지(연길)에서 탈북자 지원활동을 하던 김동식 목사 납치 ▷2000년 6월 요덕 정치범수용소 동영상 등 북한정보를 국내외 언론에 제공하는 일을 하던 국내입국 탈북자 강건(36) 납치 ▷보위부에 의해 중국에서 납치된 것으로 확인된 한국 국적 탈북자 지만길·김철수(2003년 4월 창바이현), 김철훈·신성심부부(2003년 4월) 피랍 등이 있다. 중국에서 북한 보위부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2003년 1월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이춘길은 상당수의 보위부 요원들이 중국에 상주하면서 탈북자들과 반복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인들을 감시 또는 납치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187) 익명을 요구한 중국 공안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최근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에서 해외 반탐요원들을 동북 길림성과 연길시 등지에 대거 투입했다”며 “과거에는 연길시 공안국 모 부서에 6명 가량의 북한요원들이 상주했으나 2010년 2월경부터 증강되어 지금은 10여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요원들이 연길시 백산호텔 등에 숙소를 정하고 시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그들의 은신처들을 적발하고 있다”며 “탈북자들의 은신처를 파악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중국 내 브로커들을 적발하기 위해 중국 공안기관에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옌지 공안국에 10여명 상주...전화연락망 추적”, 자유아시아방송(RFA), 2010.3.13; 유관희, “北, 탈북자 체

한 인민무력부 산하 보위사령부와 국가보위부가 합동으로 탈북자 체포조를 조직하고 이들을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산둥(山東)성과 동남아 탈출 루트인 윈난(雲南)성에 대거 파견하여 탈북자들을 색출하고 있다. 탈북자 색출은 통상 국가보위부가 전담하는데 이번에 보위사령부까지 참여하여 미얀마·라오스 국경과 맞닿은 중국 서남부에까지 체포조를 파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최근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저지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다.¹⁸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보거나 송환자의 대부분이 중국 측의 강제북송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볼 때, 최소한 대규모적인 송환노력은 벌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⁸⁹⁾

2) 탈북자 회유

북한당국은 탈북자들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대규모적인 한국입국이 발생하게 되자, 탈북 원인을 한미 당국에 전가시키면서 북한으로 돌아올 것을 회유하였다. 2004년 8월 18일 북한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를 보면 “탈북자들은 어머니조국을 등지고 떠나간 ‘탈북자’나 ‘망명자’가 아니라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유인모략책동에 걸려들어 강제로 끌려간 동포형제들이다”며 “우리는 남조선에 끌려간 모든 동포형제자매들이 부모처자들이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돌아오는 용단을 내릴 것을 호소한다.”고 선전 선동한 바 있다.¹⁹⁰⁾ 북한은 탈북자들의 대량 국내 입국을 ‘3국에 파견된 남조선의 유괴범들에게 강제로 남조선으로 유인 납치’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

포 위해 보위부 요원 중국 파견”, 데일리NK, 2010.3.14).

188) 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11, 39면.

189) 김인회,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49면.

190)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남조선에 끌려간 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 2004.8.18.

바 있다.

<그림 4-4>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탈북자 회유 성명서

남조선에 끌려간 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

남조선으로 끌려간 동포형제들! 우리는 나서자란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의 곁을 떠나 혈육 한점 없는 외진 남조선으로 끌려간 당신들에게 아픈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다. 당신들은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조국을 등지고 떠난 ‘탈북자’나 ‘망명자’가 아니다. 당신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유인모략책동에 걸려들어 강제로 끌려간 동포형제들이다.

...(중략)...

당신들은 결코 남조선에 가고싶어서 간 사람들이 아니다. 몇 푼의 돈이라도 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나라지경을 넘어섰던 당신들이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불행하게도 미국의 사측밑에 계획적으로 다른 3국에 파견된 남조선의 유괴범들에 의해 강제로 남조선으로 유인납치되어 갔다. 당신들은 이국땅을 방황하던 그 고달픈 나날들에 돈과 물건을 뿌려가며 남조선으로 가면 팔자를 고칠 것처럼 유혹하는 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암흑의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았던가.

우리는 당신들이 절대로 조국과 민족 앞에 죄를 지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구태여 당신들에게 어떠한 죄도 물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을 끝까지 믿고 언제나 따뜻한 동포애로 대할 것이다

우리는 남조선에 끌려간 모든 동포형제자매들이 나서 자란 공화국의 품에서 새겨 안은 참다운 공민적 양심과 의리를 저버림 없이 부모처자들이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돌아오는 용단을 내릴 것을 호소한다. 사랑하는 공화국과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 는 집단적으로 와도 좋고 개별적으로 와도 좋을 것이다. 누구든지 따뜻이 맞이하고 환영해 마지않을 것이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차 돌아올 경향이 못되는 사람이라면 공화국의 품을 굳게 믿고 통일의 그날 고향의 부모형제, 처자들과 떳떳이 만날 수 있도록 애국으로 사는 길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략)...

우리는 남조선에 유인납치되어 간 동포형제들이 자주통일의 그날을 확신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의로운 애국의 길에 결연히 펼쳐 나서리라는 것을 믿는다.

* 자료: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남조선에 끌려간 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 2004년 8월 18일

다. 남한정책 탈북자 협박과 역공작

1) 국내정책 탈북자 협박

북한이 남한의 탈북자 정책에 직접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2004년 여름 베트남에서 468명의 탈북자들을 재정착시키기 위해서 남한으로 이송한 후에 일어났다. 북한은 그들의 송환을 요구했으며, 그 후 10개월간 남한과 모든 대화를 단절했다. 이들이 한국에 도착한 직후, 북한의 공식 기관 언론인 ‘조선중앙통신’은 ‘조국평화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성명서를 인용하여 한국이 미국 의회와 공모하여 “백주 대낮에 북조선 주민들에게 자행한 계획적인 유인, 납치, 테러”라고 주장했다.¹⁹¹⁾ 미국 의회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며칠 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을 통과시켜, 미국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여 재정착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¹⁹²⁾ 이에 대해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촉진한다는 구실로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고 비방했다.¹⁹³⁾

북한은 2010년 3월 23일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국내 탈북자 단체들의 실명(實名)을 일일이 거명하며, 탈북자를 ‘공화국을 배신한 너절한 변절자’, ‘도주자’, ‘괴뢰보수패당과 미일반동들의 너절한 반공화국모략책동과 내외반통일분자들의 앞잡이들로 전략된 추악한 인간쓰레기’ 등으로 맹비난하면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첫째가는 처단 대상”로 공개적인 협박을 한바 있다.¹⁹⁴⁾ 이외에도 북한 온라인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010년 4월 5일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해 “결코

191) 위의 글.

192) “북한, 한국을 난민들에 대한 테러범이라고 비난,” 로이터 통신, 2004.7.29.

193) 휴먼라이츠워치(HRW), 도강자(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정책, 1면.

194) 김남균, “북한 탈북자들 절대 용납안해”, 독립신문(<http://www.independent.co.kr>), 2010.3.26;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2010년 3월 23일 담화, 우리민족끼리, 2010.4.5.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최근 북한당국이 국내정착 탈북자에 대한 강경조치에 나선 것은 황장엽 전 비서를 정점으로 한 탈북자들의 ‘반(反) 김정일’ 활동이 체제 안전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다는 판단을 했을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 매체들은¹⁹⁵⁾ 휴대전화 등으로 북한 내부 소식을 거의 실시간 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말 북한의 화폐개혁 정보는 탈북자지원 민간단체가 정부당국 보다 빨리 확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대북 라디오매체의 탈북자 출신 앵커가 북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탈북자 중에는 대북 방송을 몰래 듣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도 빈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⁹⁶⁾

2) 국내정착 탈북자간 갈등 유발

최근 북한은 대남투쟁 선전매체인 인터넷을 통해 탈북자 사회의 비방과 헐박 그리고 교란 등을 통해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는 다양한 형태의 공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탈북자에 대한 비방과 헐박 글 대부분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당국의 사주를 받은 자로 탈북자들의 각종 정보를 캐내고 있다.

한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을 탈북자라고 소개하면서 최근의 탈북 루트를 상세하게 물어보는가 하면,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밀수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2010년 4월 22일 탈북자 단체가 운영하는 ‘자유북한방송’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탈북자를 “제나라, 제 고향을 버리구 달아난 것만두 용서 못할 배신”이라고 비난하며,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홀

195) 2010년 4월 현재 북한으로 전파를 쏘는 대북 라디오 매체는 13~14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 안용현, “反김정일 세력 차단 … 탈북자 소탕 명령”, 조선일보, 2010.4.22; 박○○(여, 39세)와 2011년 6월 2일 면담결과 그녀도 대북방송을 청취한 후 탈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림금' 즉, 탈북자를 유혹하기 위한 돈으로 매도하면서 탈북자와 남한 당국 모두를 비방하기도 했다.¹⁹⁷⁾ 이러한 매체를 확인한 결과 복수의 비방 글들은 같은 사람의 글이면서도 아이피 주소는 달랐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탈북자는 물론 일

반 네티즌들이 인터넷을 통한 북한의 남남갈등 유발 전략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3) 위장 탈북간첩 공작

북한은 정권수립과 함께 남과간첩을 통해 남한적화를 기도하여 왔으나, 많은 자금의 소요와 함께 정치적 위험 부담이 가중되자 안정적인 대남공작 루트를 모색하던 중 남한에 입국한 대다수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모습을 보고 탈북자로 위장한 '역 합법침투공작'을 생각하게 되었다.¹⁹⁸⁾ 이와 관련하여 김정일은 2004년 3월 21일 "남측의 심리전에 반공격적으로 대처하자"라는 당 중앙위원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조선 도피주민(탈북자) 속에 우리의 공작인원을 침투시켜라"¹⁹⁹⁾고 지

197) "北 인터넷 공세 강화", KBS 뉴스(<http://news.kbs.co.kr>), 2010.5.1.

198) 유동열, "위장탈북자 실태와 대책", 북한, 2010년 10월호, 40면 참조.

시한데 이어서 대남공작부서는 탈북자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대남공작 활동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최근에 제안한 대로 적들의 심리전에 반(反)공격(대응) 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조선으로 도피해간 사람들이 남조선에 가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모두 적들의 심리작전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남조선 도피주민(탈북자) 속에 우리의 공작인원을 침투시켜 그들이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대책안이 나온 것은 실효성이 있는 안이라 생각합니다. 특수부서들에서 이미 이러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지만 소극적인 안으로서는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적으로 짜고 들어 적들이 심리전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짬을 뚫고 들어가 보다 효과적인 반공격을 가해야 합니다. 대책안대로 단계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일 총비서 말씀, 2004년 2월 21일 전문)”²⁰⁰⁾

제2절 북한의 탈북자 구금시설

1. 인민보안부 구금시설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인민보안부는²⁰¹⁾ 산하에 행정구역 단위별로 도·직할시의 인민보안국(지방경찰청), 시·군·구역의 인민보안서(경찰서), 리·동의 인민보안소(파출소)가 있다.²⁰²⁾ 인민보안부는 국가안전보위

199) “김정일 탈북자 대상 공작원 지시”, 연합뉴스, 2004.12.3; 조정진, “김정일 탈북자 간첩 투입 지시”, 세계일보(<http://blog.segye.com> 2010.6.11 검색), 2004.12.2.

200) 조정진, 위의 기사,

201) 남한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북한 인민보안성의 조직 명칭이 2010년 4월 ‘인민보안부’로 바뀐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두고 작년부터 김정일의 각별한 관심으로 주목받았던 이 기관이 인민무력부(국방부 해당), 국가안전보위부(방첩기관)와 함께 북한의 ‘3대 권력기관’으로 급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조선중앙TV는 4월 5일 오후 8시 정규 뉴스 시간에 평양시 ‘10만 가구 살림집 건설’ 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보안부 건설여단’의 일원인 림성철씨 인터뷰를 다뤘고, 임씨도 “우리 인민보안부”라고 자신의 소속 기관을 밝혔다. 앞서 평양방송은 3월 30일 ‘10만 가구 살림집 건설’ 현장 소식을 전하면서 ‘인민보안성 건설여단’이라고 지칭해, 4월 들어 기관 명칭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최선영, “北인민보안성 →‘부’(部) 개편…권부핵심 부상?”, 연합뉴스, 2010.4.6).

부와 함께 주민통제기구이다. 인민보안부의 기본 임무가 ‘사회의 안전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와 인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수행하는 임무는 ‘사회주의 건설에 방해되는 요소를 적발하여 제거하며,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고 전체 주민을 통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그동안 수많은 비밀경찰을 조직하여 주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해 왔다.²⁰³⁾ 북한의 인민보안부 교화국이 관리하는 탈북자 수용시설로는 구류장, 노동단련대, 집결소, 교화소 등이 있다.

가. 구류장

강제송환 탈북자 중 보위부 취급 대상을 제외한 자들은 출신지역 인민보안서 구류장으로 이송되어 구금된 후 조사(예심)를 통해 사법처리 유무가 결정된다. 구류장은 심문 중인 피소자와 확정판결을 받은 피의자를 교화소에 보내기 전에 임시 수용하는 시설 즉, 형사소송법²⁰⁴⁾ 제143조²⁰⁵⁾에 의한 현행법 및 준현행법 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²⁰⁶⁾에 의한

202) 1945년 보안간부훈련소로 출발한 인민보안부는 1948년 9월 북한정권 수립과 함께 내무성 산하 일개 국(局)으로 재편됐다가 1962년 내무성이 국토관리성으로 바뀌면서 ‘사회안전성’(1962.10)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1972년 ‘사회주의 헌법’ 개정 당시 ‘사회안전부’로, 1998년 제10기 1차 최고인민회의 때 ‘사회안전성’으로, 2004년 4월 10기 3차 최고인민회의 때 ‘인민보안성’으로, 2010년 인민보안부(4월 16일 확인)로 명칭을 변경하여 왔다. 2011년 3월 16일 주상성 인민보안부장이 해임되고, 4월 7일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 회의에서 실세인 국방위원회 행정국장 이명수가 인민보안부장에 임명되었다.

203) 윤규식, “북한의 인민보안부”, 국방일보(<http://kookbang.dema.mil.kr>), 2010.4.12.

20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형사소송법”은 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호로 채택되어 2004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수정 보충되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 법률출판사, 2004, 841면부터 참조할 것)

205) 북한 형소법 “제 143 조(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및 범죄자를 체포, 수색, 압수할 수 있는 사유) 수사원이 검사의 승인없이 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체포하고 그의 몸이나 거처를 수색하며 증거물을 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자가 범죄에 착수하였거나 범죄를 저지르다가 또는 저지른 즉시에 발견되었을 경우 2. 피해자 또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본 사람이 범죄자라고 하면서 붙잡았거나 가리킨 경우 3. 범죄혐의자의 몸 또는 거처에서 범죄를 저지른 흔적이 나타났을 경우 4. 범죄혐의자, 범죄자가 자살 또는 도망치려 하거나 뒤쫓기우고 있을 경우 5. 범죄혐의자, 범죄자로서 사는 곳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구속 처분자와 1차적으로 수사한 현행범과 범죄 미해명자 등을 길게는 90일까지 수용(예심기간 중에도 구류장에서 생활)하는데, 보안서 수사과에서 운영한다. 구류장은 보통 해당 보안서 내 별도의 단층건물에 철창으로 된 10-20여개의 감방이 있으며 독방, 사형수 감방, 사형대기감방, 공동화장실, 세면대, 일광욕장 등이 설비되어 있다.

나. 로동단련대

북한은 1990년에 발표된 “간단한 경범죄에 대해 군(郡)에서 자체적으로 교양시킬 데 대하여”라는 김정일의 방침²⁰⁷⁾에 따라 시군마다 경범죄자를 적발하여 처벌하기 위해 로동단련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²⁰⁸⁾ 이 시설은 감옥과 수용소의 중간 형태의 구금시설로, 범죄자들은 거주지 시·군 소속 로동단련대에 15일에서 6개월간 수용되어 무보수로 강제노동과 사상교양을 받는다 북한 주민들은 로동단련대를 ‘꼬빠크’, ‘꽃마크’, ‘깡관’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로동단련대의 관리원들은 주로 인민보안부의 제대원들을 선발하여 배치하며, 로동단련대에 수용된 자들 대부분은 ‘비사회주의적 행위자’와 재판소에서 로동단련형을²⁰⁹⁾ 선고받은 자들이

등이다.

206) 북한 형사소송법 제 184 조(구속처분의 종류)는 ‘구류구속처분’, ‘자택구속처분’, ‘지역구속처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207)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 또는 방침은 북한의 헌법이나 법률보다 더 중요한 집행근거다.

208) 2004년 개정된 형법 31조에는 로동단련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이는 각 시·군에 있는 로동단련대와 관련된 규정이다. 형법 제31조는 ‘로동단련형 집행기간에는 공민의 기본권리가 보장되며, 로동단련형 기간은 6개월부터 2년까지 그리고 범죄가 더 늘어날 경우에도 2년을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5일~6개월간 수용되는 로동단련대 수용 대상자와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상 ‘로동단련형’을 선고받고 수감되는 경우는 ‘로동단련대’가 아니라 ‘교양소’에 수감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북한 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연구팀, “북한의 인권실태 4, 로동단련대”, 자유공론 2009년 2월호, 한국자유총연맹, 122면).

209) 로동단련형은 2004년 형법 개정시 로동교화형 외에 신설된 형벌로서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노동을 시키는 방법으로 집행하며, 로동교화형과는 달리 공민으로서의 기본권은 보장된다. 수용자가 구속된 1일은 로동단련형 2일로 계산한다. 북한 형법 총245개 조항 중 로동단련형이 규정된 조항은 165개조에 달하며, 39개 조항은 로동단련형만 규정하고 있다(김안식, “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관한 고찰”, 교정담론 제3권1호, 아시아교정포

다.

다. 집결소

집결소는 본래 여행 목적지 이탈자, 여행과정에서 공민증이나 통행증(출장 및 여행증명서) 미소지자, 여행기간 위반자 등 주로 ‘철도 질서 위반자’들을 임시로 수감하는 시설로 도(직할시) 보안국 감찰처에서 관할하고 있다. 대표적인 집결소로는 평양외각의 간리역 집결소, 함경남도 고원역 집결소, 함경북도 길주역 집결소, 평안남도 신성천역 집결소, 함해북도 사리원역 집결소 등이 있는데 모두 기차나 도로를 통해 주요 지역으로 들어가는 교차점에 설치되어 있다. 가장 유명한 곳은 평양역으로 진입하기 직전에 있는 간리역에 설치된 ‘간리 집결소’이다. 간리역은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에서 평양으로 내려올 경우 거쳐야 하는 곳으로, 여행증이 없이 평양으로 오다 이 역에서 체포된 자들은 간리 집결소에 임시 수감돼 3개월간 강제노역을 하게 된다.²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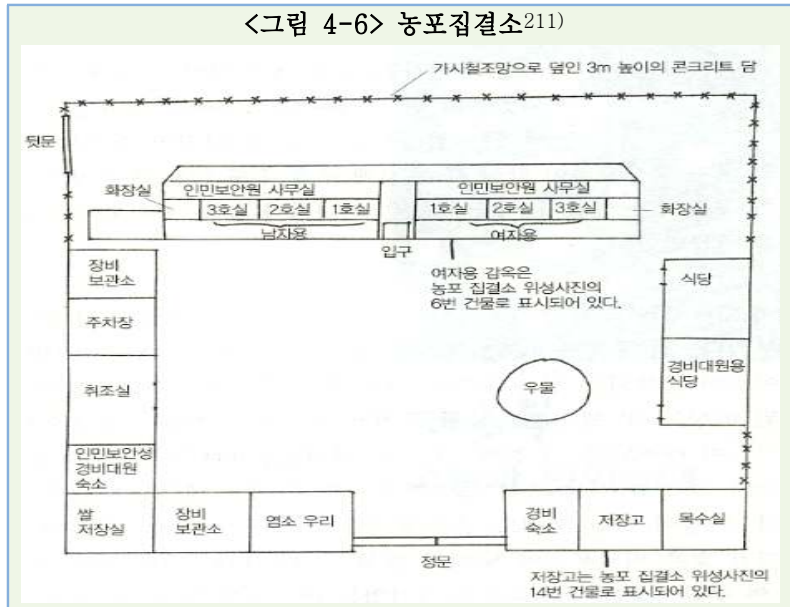
그러다가 2000년 이후 강제 송환 탈북자들이 급증하면서 함경북도 청진과 양강도 해산 등지에 노동단련대와 같은 형태의 탈북자 집결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강제 송환 탈북자들은 출신지역 인민보안서(이하 보안서) 담당 보안원이나 보위부의 담당 보위부원이 호송 올 때까지 짧게는 2-3일 길게는 6개월까지 채석장이나 농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집결소에서 대기한다. 그래서 국경 인근지역 출신자가 아닌 자들의 경우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기초조사가 끝나면 집결소로 이송한다.²¹²⁾ 함경북도 농포리에 위치한 ‘농포 집결소’는 단순 탈북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해 3개월간 강제노역을 시키는 악명 높은 집결소이다. 이곳에 수감되었던

럼, 2009.6, 11-112면).

210) 강철환, “억류 여기자 수감 북한 교화소는 어떤 곳”, 2009.6.29.

211) 데이빗 호크 저/이재광 역, 감춰진 수용소, 시대정신, 2003, 165면.

212)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184면.



한 탈북자는 “구타와 강제노역으로 3개월간 몸이 만신창이가 됐다”며 “3년 교화형을 받은 사람보다 건강이 더 악화됐다”고 말했다.²¹³⁾ 청

진의 도 집결소의 경우 비법월경자(도강자)를 포함한 강제송환 탈북자들이 많을 때에는 1,500여명이 수용되었다고 한다.²¹⁴⁾

라. 교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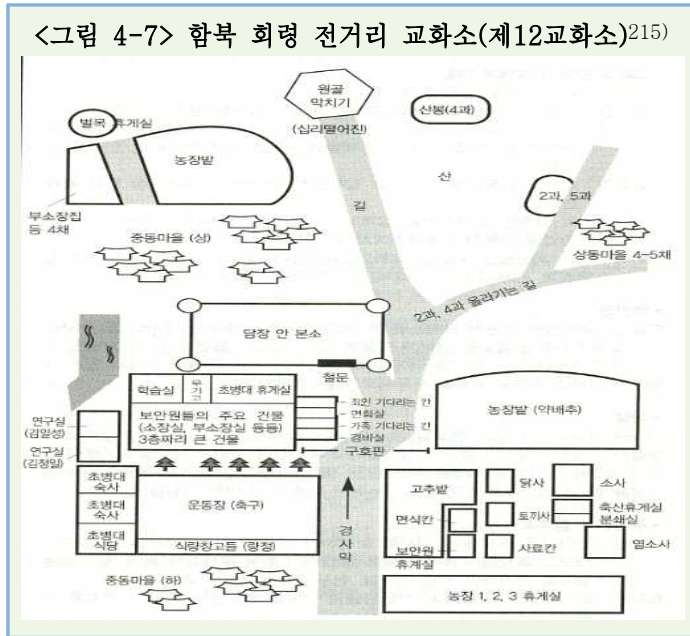
교화소는 주로 재판을 통해 3년 이상의 형이 선고된 자가 수감되어 강제노동과 교양을 통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화(教化)하는 교정시설로 대개 도 단위로 1개소가 설치되어 있다.²¹⁶⁾ 교화소에 수용된 자들은 <그림 4-7>에서와 같이 주로 농장, 건설, 봉제, 신발, 가죽가방 제작 등의 노동을 해야 한다. 일부 교화소에서는 석탄 채굴이나 금광 채굴을 한다. 교화소 주변에 농장이나 채소밭 등이 산재되어 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업을 하고, 저녁식사 후 1시간 반 동안 단위별로 생활총

213) 탈북여성 이○○과 2011년 6월 2일 면담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214) 2009년 6월 11일 탈북자 김혁과 심충면접을 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215) 리준하, 교화소 이야기, 시대정신, 2008.5, 49면.

216) 탈북자의 증언에 의하면, 함경남도 함흥의 사포구역에 여자교화소, 화산구역에 남자교화소가 있고, 그 외 개천교화소, 전거리교화소, 수성교화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화를 한다. 이 시간에는 주로 김일성, 김정일 교시를 읽고 외우거나, 노동신문 기사를 읽고, 수용자의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하게 된다.²¹⁷⁾ 이와 같이 교화소는 강제노동과 함께 김일성과 김정일의 연설이나 교시를 암송하거나 자아비판을 하도록 되어

있다.²¹⁸⁾

1995년 방북한 국제사면위원회(AI)에 북한당국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²¹⁹⁾, 북한에는 사리원교화소, 형제산교화소 등 3개의 교화소가 있으며, 1개소에 약 800명 내지 1,000명의 형 확정자들이 수용되어 있고, 반국가사범(정치범) 약 240명이 형제산교화소에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²²⁰⁾.

217) 탈북자 김○○의 증언에 의하면 수용자의 작업 형태에 따라 교양학습을 매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 혹은 일요일 저녁식사 전에 교양학습과 자아비판을 하기도 한다 (2008년 탈북자 김○○과 2010년 11년 5일 인터뷰); 김안식, “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관한 고찰”, 103면.
 218)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76-78면; 북한 전거리 교화소 복역 탈북자 김혁과의 2009년 6월 11일 심층면접 결과 교화소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219) 국제인권기구는 국제인권 B규약 정기보고서 심의과정에서 북한 구금시설의 현장 방문을 요청하였으나, 북한 당국에서는 적대세력들이 인권문제를 들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반대하는 불순한 의도로 악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당 구금기관에서 이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현장방문이 곤란하다고 불허하였다.
 220) 북한의 조선인권연구협회 서기장 이창하는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 등에 대해 증언한 것은 모두 거짓이며, 교화소는 전국에 3개 밖에 없고 전체 수용자 수는

<그림 4-8> 북한 관리소 및 교화소



북한당국은 교화소 수감자중 모범생활자, 심신이 아주 허약한 자 등 소수인원을 김일성(4.15)과 김정일(2.16) 생일, 당창건일, 공화국창건일 등을 기하여 가석방하기도 한다. 각 구역 인민보안소에서는 가석방자들을 형기가 만료될 때까지 엄격히 통제·관리하고 있다. 가석방자는 형기가 만료되는 시기까지 공민권이 박탈된 상태로 거주지에서 4km이상 이동시에는 보안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당 보안원이 수시로 집을 방문하여 생활 실태를 파악하며 인민반장과 주민들이 감시한다. 또 월 2회 가석방자가 보안소에 가서 문서나 구두로 직접 생활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생활보고란 가석방된 자들을 통제하기 위해 일일생활 결과(24시간 활동내용, 자아비판 내용)를 문서

800명 내지 1,000명에 불과하며, 정치범은 240명이 있는데 형제산교화소에 수용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AI,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Visits North Korea, Discusses Legal Reforms and Prisoner Cases", 1995.5.11).

에 기록하여 보고하는 것으로서 거주지 인근 주민들의 동향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²²¹⁾

2. 국가안전보위부 구금시설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²²²⁾ 김정일이 후계자로 내정된 직후인 1973년 2월 1일 김일성의 지시로²²³⁾ 1973년 5월 정무원 산하 사회안전부의 기능 가운데 ‘정치보위국’을 분리하여 ‘국가정치보위부’로 승격시켰다. 그 후 1982년 명칭을 국가보위부로 개칭한 데 이어 1993년 현재의 국가안전보위부로 변경하였다.²²⁴⁾ 조직 체계로는 부장아래 수명의 부부장이 있고 산하의 행정체계에 따라 도(직할시)·시(군·구역) 각 기관·기업소별로 보위기관이 조직되어 있으며, 지방의 리(동), 군부대 대대·중대단위까지 보위부원을 파견하고 있다

221) 김용기,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내외통신사, 1996, 162-163면.

222) 국가안전보위부장은 이진수의 사망(1987.8) 이후 김영룡이 대행하다 1998년 3월 외화벌이 관련 수뢰혐의로 숙청된 후 공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 4월 14일 김일성 97회 생일(4.15)을 앞두고 최고사령관(김정일) 명령으로 국방위원장이 된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종합(수석)부부장은 한국의 소장에 해당하는 중장에서 상장으로 승진하였다(조선중앙방송, 2009.4.14). 최근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011년 4월 12일 세계북한연구센터와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가 연 창립 기념 세미나에서 그동안 공식으로 알려졌던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장을 후계자인 김정은(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2009년 하반기부터 맡았다고 주장했다(백나리, “김정은 제작년부터 국가안전부위부장 맡아”, 연합뉴스, 2011.4.2)으나, 그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223) 김일성은 “사회안전부는 치안사업·질서유지만 담당하고 간첩잡이 업무만 전문으로 하는 국가정치보위부를 따로 내야 합니다. 국가정치보위부는 당의 1개 부서입니다”라고 강조했다.

224) 1980년대 초 김정일이 “국가정치보위부가 당의 영도를 성실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당위에 군림한다. 당의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을 왜곡집행하여 애매한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고 하여 중앙당의 집중검열을 받고 국가정치보위부를 국가보위부로 개칭했다. 1984년 11월 24일경 김정일이 국가보위부에 “당의 균중노선과 계급노선을 철저히 관찰하라”고 지시한 후 주민들의 일반 사상동향을 당기관에서 장악하고 국가보위부는 반탐활동 등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토록 그 역할을 제한하기도 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에 따라 남한을 견제하고 국가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그해 12월 국가보위부를 국가안전보위부로 개칭할 것을 지시한 후, 1993년부터 국가안전보위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를 개편하는 등 일련의 변화를 보였다. 이 시기 국경봉쇄 부서와 해외 반탐정국의 모략 부서가 신설되었다.

보위부는 국가와 김일성·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해 조직된 대주민 사찰 기관으로, 주민들의 사상동향을 감시하면서 반당, 반체제사범들의 색출과 김일성·김정일 비방사건 수사를 전담하며 이와 관련된 죄로 체포된 정치범을 수감하는 정치범 수용소(관리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외에도 반탐(反探) 즉, 반국가 행위자 수사, 대간첩 수사, 해외정보 수집, 해외공작 임무 수행, 국경경비, 공항·항만 등의 출입국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²²⁵⁾

가. 보위부 구류장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비방자나 반국가 행위자 등 정치범을 적발하여 조사(예심)하기 위해 도(직할시) 보위부, 시(군·구역) 보위부 내에 구류장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함경북도 온성군·회령시·무산군, 양강도 혜산시, 자강도 만포시, 평안북도 신의주시 등 북-중 국경지역에 위치한 시(구역)·군 보위부 구류장에는 중국에서 강제 송환한 탈북자들을 구금한 후 약 2주에 걸쳐 기초적(1차 조사)인 조사를 하는데, 조사과정에서 보위부의 특별취급 대상자²²⁶⁾로 판명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신지역 시·군·구역·연합기업소 보위부나 도 보위부 구류장으로 이송하여 강도 높은 조사(예심)를 한 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한다.

나.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북한은 1958년 12월부터 정치범을 반혁명분자로 낙인찍어 투옥·처형하거나 산간오지로 추방해오다가, 1966년 4월부터는 적대계층을 특정지역에 집단수용하기 시작했다. 정치범수용소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225) 정용하 외, 북한사회의 변화와 남북한 정치쟁점, 부산대학교 출판부, 2003. 48면.

226) 탈북자 중 한국인 및 종교인 접촉자, 한국행 시도자, 탈북 브로커, 정치적 탈북자, 인신매매를 한자 등은 보위부 특별취급 대상자로 분류되고 있다.

<그림 4-9> 북한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현황



있다. 북한 당국은 주로 ‘○○호 관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주민들은 통제구역, 완전통제구역, 특별통제구역, 이주구역, 정치범집단수용소, 유배소, 종파굴 등으로 부른다. 북한은 정치범수용소를 각 관리소마다 체제 유지에 위해(危害)하다고 판단되는 죄목의 규정문서 번호나 지역 고유번호를 붙여서 ‘○○호 관리소’²²⁷⁾로 부른다.²²⁸⁾

정치범수용소는 보위부원으로 구성된 관리조직에 의해 운영된다. 보

위부에서 운영하는 정치범수용소는 완전통제구역이다. 예외적으로 함남 요덕 15호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서림천 지구에 혁명화구역²²⁹⁾을 운영한다. 정치범수용소를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완전통제구역과 혁명화구역은 출소 여부와 인권침해 정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27)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인민경비대 제○○부대’라는 위장 명칭을 사용한다.

228)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4, 통일연구원, 2004, 271면.

229) 15호 요덕 정치범수용소는 혁명화구역과 완전통제구역이 있다. 1987년 이전까지 구읍리, 립석리, 대숙리는 혁명화구역이었고, 룡평리, 평전리는 완전통제구역이었다. 1987년 이후 혁명화구역이 축소되기 시작했고, 2000년 이후에는 구읍 지구의 서림천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완전통제구역으로 편제되었다(위의 책, 233면).

1990년 중반 이후 탈북자가 급증하자, 중국에서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종교인을 만났던 탈북자들이 송환되면, 이들을 보위부 취급대상자로 분류하여 별도 관리한다. 보위부 취급대상자들은 보위부 구류장에 약 6개월 정도 장기 구금되며, 일반 탈북자와는 달리 보위부원에 의해 호송되



어도 보위부 구류장에서 3개월에서 1년간 예심 후 재판 없이 처벌을 받는데 3년 이상의 형기를 받게 된다. 강제 송환된 탈북자가 정치범으로 낙인찍히면 함경남도 요덕군의 15호 수용소 혁명화 구역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³¹⁾ 현재 북한 전역에 6개의 정치범 수용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이곳에 약 20만 여명이²³²⁾ 수감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치범수용

230) 이종훈, “위성으로 본 북한 요덕수용소”, 동아일보, 2011.5.5.
 231) 요덕수용소는 15호 관리소라 지칭되기도 하는데 요덕군의 일부지역인 구읍리 등 5개리를 포하고 있다. 수용 인원은 약 3만 5천명에서 5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232) 한국 정부는 2011년 1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15만 4000명 가량이 감혀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북한 정치범 수용소 규모, 10년 전보다 커져”, 조선일보, 2011.5.5). 1998년

소의 규모는 대략 51-250km²이며, 각각의 수용인원은 5천-5만명 정도이다.²³³⁾

<표 4-3> 주요 정치범수용소(관리소) 현황²³⁴⁾

명칭	14호 (개천수용소)	15호 (요덕수용소)	16호 (고창수용소)	22호 (회령수용소)	25호 (수성수용소)
위 치	평남 개천군 보봉리	함남 요덕군	함남 화성군 고창리	함북 회령시	함북 청진시 수성동
공식명칭		조선인민경비대 2915부대		조선인민경비대 2209부대	
면 적	약 280km ²	약 460km ²		약 650km ²	
수용인원	약 1만 5천명	약 5만명	약 1만명	약 5만명	약 3천명
수용자분	가족, 남녀분산	본인, 가족	가족	가족	본인
설립시기	1959년 최용건건의로 설립			1974년 설립	
수감자특성	5,60년대 김일성 체제에 반대한 당, 정, 군의 고위관료와 그 가족, 친지들이 주로 수감됨.	혁명화구역은 재일교포 가족들과 경미한 정치범이 수감됨. 완전통제구역은 지주, 자본가, 친일파, 월남자 가족 등이 수감됨.	김동규 전 국가부주석 등 7·80년대 초 김정일 후계체제 형성 과정에서 숙청되어 반당, 반혁명 분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수감됨.	일제시대 지주, 순사, 자본가, 기생, 종교인, 월남자 가족, 종파분자 가족, 유일체제 반대자 가족, 치안대 가담자 가족 등이 수감됨.	종교인, 간첩, 종파분자 등 형벌이 무거운 정치범들이 수감됨.
기 타	1990년 수감자 폭동으로 1천5백명의 정치범이 사살되고 수감자 통제가 강화됨.	혁명화구역은 운영, 귀국자 마을에 일본인 처 15명이 수감되어 10여명이 사망함.	국가주권 전복 음모자 등 정권에 가장 위험한 최고위층이 수감됨.	25-45세 수감자가 70%를 차지하고 남녀 비율 4:6 정도임.	갈매기표 자전거, 무동력냉장고, 재봉틀, 난방용 라디에이터 등 생산, 품질이 우수함.

아시아감시위원회와 미네소타 변호사 국제인권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12개 정치범 수용소에 약 15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전직 국가보위부의 관리였던 탈북자 윤대일은 20만 명이라는 숫자가 최하한선일 것이라고 증언했다(임순희 외, 북한인권 백서 2006, 통일연구원, 2006, 217면). 통일연구원은 11호, 12호, 13호, 26호, 27호 등 5 군데가 폐쇄되었고, 14호, 15호, 16호, 22호, 25호 등 5개소에 약 20여만명이 수용되었다고 주장했다.

233) 데이빗 호크/이재광 역, 감춰진 수용소, 시대정신, 2003, 62면.

234) 김현 외, 2006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6, 36면.

1) 혁명화구역

북한 당국은 죄질이 경미한 정치범들을 일정기간 수용소에서 수감하여 육체노동을 통해 혁명화 교육 후 사회에 복귀시켜 김일성, 김정일 체제에 순응하도록 한다. 혁명화구역은 유학생, 외교관 등 해외 파견자들 중 사상변질자, 불법도강 및 탈북미수자, 북송교포 가족 등 상대적으로 죄질이 경미한 정치범들이 수감된다.²³⁵⁾

혁명화구역은 가족을 수감하는 ‘가족구역’과 독신자들을 수감하는 ‘독신자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혁명화구역에 수감되는 정치범은 일정기간(1년 내지 10년) 경과 후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가 가능하다. 혁명화구역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수감기간이 연장되거나 완전통제구역으로 이감한다. 혁명구역에서 출소식은 2월 16일 김정일 생일을 계기로 국가안전보위부 국장급이 참가한 가운데 명단발표와 공민증 수여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석방된 정치범들은 수용소 내의 생활실상을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서약내용을 위반하면 재수감된다. 이들은 출소된다고 해도 적대계층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하층 생활을 하게 되며, 보위부의 최우선 감시대상이 되고 직업·여행 등 모든 부문에서 제약을 받는다. 그리고 이들이 출소 후 일반 형사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10년 가중된다.²³⁶⁾

2) 완전통제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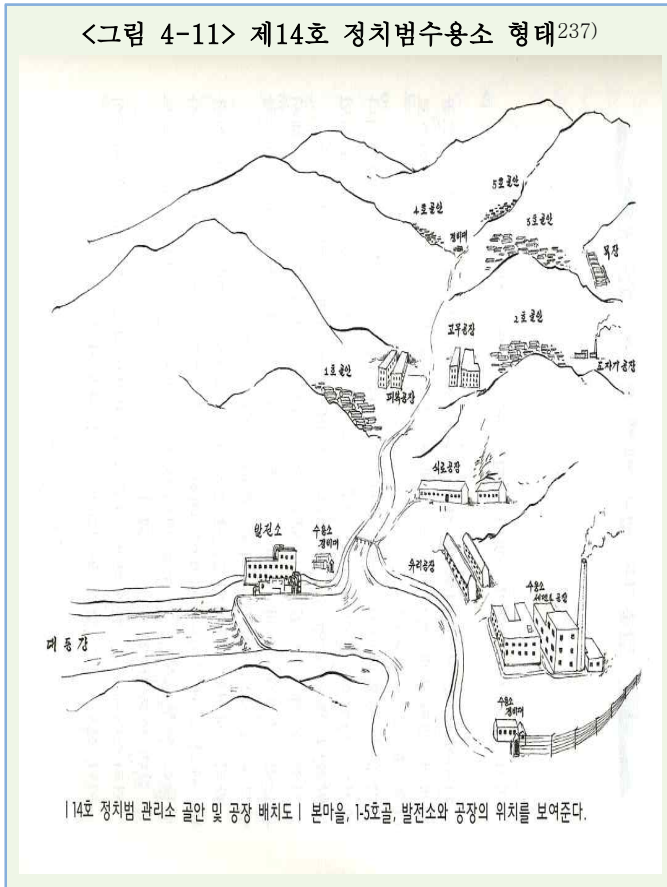
완전통제구역은 ‘완전타도대상’으로 분류된 정치범들을 영구 격리시키는 종신 수용소이다. 완전통제구역에 수용된 정치범들은 무기 노동교화형을 받고 수감되기 때문에 죽어서도 사회로 나올 수 없다. 완전통제구

235) 데이빗 호크/이재광 역, 감춰진 수용소, 232-233면.

236) 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2006, 219면.

역에서는 정치범들의 탈출을 방지하고자 4-5중으로 경비를 세워 철저한 감시와 통제를 한다.

여기에 수감된 정치범들은²³⁸⁾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평생 동안 광산, 벌목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또한 혁명화구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적은 식량을 배급받으면서, 가혹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³⁹⁾ 그리고 완전통제구역에 수감된 정치범들은 혁명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



| 14호 정치범 관리소 골안 및 공장 배치도 | 본마을, 1.5호골, 발전소와 공장의 위치를 보여준다.

도 없고 별도의 사상교육도 진행하지 않으며, 다만 채광과 영농기술 등 생산에 필요한 지식만을 교육시킨다.²⁴⁰⁾

237) 신동혁, 세상밖으로 나오다, 북한인권정보센터, 2007, 43면.
 238) 완전통제구역에는 북한이 계급의 적으로 규정한 지주, 자본가 등 착취계급, 친일파, 성분 불량자, 종교인, 반김일성·반김정일 세력 등 계급투쟁 대상자와 그 가족들이 주로 수감되어 있다.
 239)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4, 189면.
 240) 김현 외, 2006 북한인권백서, 234-235면.

제5장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

제1절 중국에서의 인권침해

1. 체류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 인신매매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고도성장 및 산업화 속에 도·농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촌여성들이 돈을 벌기 위해 대도시나 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등으로 이동하는 이농현상을 촉발시켜 농촌 총각들은 결혼상대를 찾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과 신체적 결함을 가진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져 여성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북한여성들에 대한 잠재적 수요로 인해 인신매매 현상은 지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중국동포 남성들에게 언어소통이 가능하고 유사한 문화를 공유한 탈북 여성들은 최고의 결혼대상자이기 때문에 초기 인신매매²⁴¹⁾는 농촌지역

241) “2000년 인신매매 의정서(UN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Convention on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위협 혹은 폭력이나 기타의 강제력, 납치, 사기, 유인,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활용,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금전 혹은 혜택을 주고받는 행위 등에 의해 ‘착취’(exploitation)의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이전, 은신, 접수하는 행위”이며, 착취는 “매춘 및 성적 착취, 강제노동 및 서비스, 노예상태에 분하는 행태 및 노예제” 등을 포함하며, 인신매매가 밀입국매매와 다른 점은 불법적인 국경이동 주선 후에도 지속적인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Norma

의 중국동포 노총각에게 결혼을 주선해주고 돈을 받는 매매혼의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직 폭력배와 연루된 인신매매 조직이 개입하여 탈북여성을 납치한 후 각종 유흥업소에 매매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감금, 폭행, 성폭행, 매춘, 강제낙태, 강제노동 등의 행태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²⁴²⁾ 특히, 탈북여성들은 단돈 5천 위안(68만원)~7천 위안(93만5천원)에 매매되고 있는데, 20살부터 24살까지는 7천 위안, 서른이 넘으면 3천 위안 등 정액제에 가깝게 값이 매겨져 있다고 한다.²⁴³⁾

1) 탈북여성 강제납치

강제납치는 주로 국경주변에서 막 월경하거나 월경한지 얼마 되지 않는 탈북여성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납치된 여성들은 거래자에게 인계되어 차량이나 기차로 대도시 또는 내륙지방으로 이송되는데 나이, 미모, 결혼 유무 등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탈북여성의 인신매매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으나, 다단계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신매매 범죄자의 신상이나 조직을 쉽게 적발할 수 없다.²⁴⁴⁾

중국내 체류 중인 탈북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생활비나 은신처 확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자력에 의한 생활이 힘들뿐만 아니라, 중국공안에 쉽게 적발되어 강제송환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인신매매 조직이나 지역 불량배들이 탈북 소녀들을 납치하여

Kang Muico,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p.3).

242) 이우영 외, 북한이탈주민 문제의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104면.

243) 우정, "탈북여성과 중국 남성의 동거(복혼)의 실제와 시사점", 북한, 2009년 5월호, 북한연구소, 2009, 119면.

244) 김영자,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인권실태와 정책제안", 북한인권시민연합편, 제2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자료집, 북한인권시민연합, 2000, 47-50면.

성인보다 높은 가격에 성매매업소에 매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탈북소녀들의 성적 착취문제가 심각한 것은 미성숙 상태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고, 성 지식의 부족으로 임신과 낙태가 거듭되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심화되기 때문이다.²⁴⁵⁾

2) 전문도강 안내인에 의한 인신매매

북한에서 활동하는 전문도강 안내인들은 주로 장마당이나 역전에서 만난 젊고 예쁜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 시집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가족들도 지원해줄 수 있다”는 등의 말로 유인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으로 유인한 탈북여성들을 나이가 많은 중국동포 노총각, 장애인 등에게 돈을 받고 소개하는 형태로 인신매매를 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여성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성 착취와 같은 모멸적이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²⁴⁶⁾ 인신매매 관련자들은 중국동포와 연계하여 탈북자들의 불법 국경이동에 관여하고 있다.²⁴⁷⁾

3) 매춘 강요

중국내 인신매매 전문브로커들은 탈북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생계수단이나 안전한 은신처를 찾아주겠다고 유인하여 노래방이나 주점 등 유흥업소에 매매하고 있다. 이들을 매수한 유흥 업주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을 빌미로 협박하여 매춘을 강요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고통을 받기도 한다. 탈북여성들을 소개하고 보호하는 중국남성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받은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²⁴⁸⁾ 이러

245) 박순영, “중국체류 탈북어린이와 청소년 성장발육 상태와 그 기능적 함의”, NGO세계대회 자료집, 1999, 8-9면.

246)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실태와 지원체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7권 제2호, 민족통일연구원, 1998, 183면.

247) 김수암,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탈북자의 역할, 북한민주화위원회 제1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북한민주화위원회, 2008.2.15, 10면.

한 사례는 중국 공안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면 될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나. 노동력 착취

중국인들은 탈북자들의 신분이 불법체류자라는 취약한 법적 지위를 악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다. 탈북자들은 불법체류자라는 불안한 신분으로 자신의 전공과 상관없이 중국인 노동자의 1/2수준의 저임금을 받고 농촌이나 공사장, 공장, 식당 등에서 단순노무직으로 일하게 되는데, 그나마 이러한 돈벌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행운일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구타와 폭언 등의 인권침해를 당해도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으며,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한다.²⁴⁹⁾ 이외에도 탈북자들의 불안정한 신분을 악용한 중국내 악덕 사업주들은 대개 중국동포 신분을 가장해서 일자리를 얻은 탈북자들에게 거처와 식사만을 해결해주고, 월급을 후불제로 지급하기로 한 상태에서 몇 개월 또는 몇 년간 노동을 시킨 후, 탈북자들이 밀린 월급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안당국에 고발하거나 우연히 단속 나온 것처럼 위장해 탈북자들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도록 하고 있다.²⁵⁰⁾ 이러한 경험에 대해 탈북자들은 수많은 사례를 들어 증언하고 있다.²⁵¹⁾

다. 건강악화

<표 5-1>에서와 같이 탈북자들의 건강검진을 한 결과 질병보유자(2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는 것으로 나

248)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64면.

249) 이우영 외,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13-20면.

250) 박은주, “최근 탈북자의 국내외 망명동향과 정책적 대안”,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6, 39면.

251) 탈북자 김○○와 2011년 6월 2일 면담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탈북 이전부터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으로 영양부족 상태와 질병, 감염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탈북과정에서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해 등으로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탈북청소년과 여성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이들 대다수는 북한에 보호자가 없는 결손가정 출신으로 이들의 영양 상태는 최악에 가까우며, 나이에 비해서 성장발육의 정도가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극한 상황을 경험한 결과 정신적 피해도 심각하다. 일부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중국에서 기대하던 도움을 받지 못하자 강도, 상해, 살인을 자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⁵²⁾ 이외에도 탈북어린들은 장기매매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중국정부 당국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표 5-1> 2004~2007년 6월 탈북자 건강검진 수검현황²⁵³⁾

'04-'07.6월 탈북자 건강검진 수검 결과 질병 감염률				'04-'07.6월 탈북자 질병유형	
년	검진인원	질병 감염율	수검결과	질병 유형	인원수(명)
2004	1,659	21%	질병보유자 1,219명(20%)	B형 간염	669
2005	1,316	16.3%		부인과질환	283
2006	1,856	14%		성병	137
2007.6월 현재	1,256	31.7%		결핵	130
계	6,087명			계	1,219명

252) 김성구,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실상과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학위논문, 2008, 20-21면.

253)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통일부 산하 탈북자 정착 교육시설인 하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4~2007년 6월 새터민 건강검진 수검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새터민 수검자의 20%(1천220명)가 B형 간염(669명), 부인과질환(283명), 성병(137명), 결핵(130명)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도별 질병감염률은 2004년 21%, 2005년 16.3%, 2006년 14% 등으로 감소하다 2007년 6월 현재 31.7%로 급증했다. 또 건강검진 이상 소견자 비율을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4.5%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20.8%, 40대 19.1%, 50대 13.3%, 10대 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탈북 주민 건강상태 열악”, 연합뉴스, 2007.9.28).

2. 체포 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가. 공안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중국의 경우 탈북자에 대한 기본입장은 ‘불법체류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를 체포하면 몸수색을 통해 일체의 개인물품 및 자해 수단이 될 수 있는 물품을 회수한 후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포승줄이나 족쇄 또는 수갑을 채운다. 중국 공안은 체포한 탈북자들의 인적사항, 중국입국 시기 및 목적, 중국 내에서의 체류생활, 한국행 시도 여부, 친척관계, 중국체류 중 도움을 준 사람, 은신처, 이동경로 및 교통수단, 입국횟수, 종교단체 접근 여부 등을 매우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한다.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응하거나 탈북자들이 은신하고 있는 곳을 알려주면, 강제송환하지 않고 북한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석방해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한다.²⁵⁴⁾

나. 변방부대에서 인권침해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들은 중국 변방부대 구류장으로 이송되어 북한 당국이 인수하기 전까지 대기하며 몸수색과 짐 검사를 통해 소지품을 압수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09년도에 발간한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09년도 국내입국 탈북자 322명의 설문조사 결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변방부대에 수감되었던 탈북자들은 알몸수색을 통하여 소지품과 금전을 압수당하고 거짓 진술, 구류장 내 지시 불이행 등의 경우에는 간수에 의한 구타나 신체적 가혹행위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여성탈북자의 경우 신체 일부(자궁, 항문, 신발밑창 등)까지 검색하

254)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81-85면 요약정리. 탈북자 이○○과의 2011년 6월 2일 면담결과에서 확인되었다.

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²⁵⁵⁾ 그러나 최근 중국 변방부대 내 탈북자 구류장은 과거에 비해 의료상태나 위생상태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²⁵⁶⁾

<그림 5-1> 변방부대 인권침해 사례²⁵⁷⁾

도착해서 몸수색하고 신발부터 짐 검사까지 하고, 다리를 벌려서 기계를 몸에 대보더라고요. 금속이나 돈은 소리가 난데요. 약도 뺐었어요. 반지는 끼고 있어서 감추지 못했는데, 그래서 반지를 빼앗겼어요. 금반지하고 돈을 안 돌려줬어요.(B11)

남자들은 훌쩍 벗기고 몸 검사를 했어요. 돈은 100프로 압수하고, 담배도 압수하고, 사진이 많았는데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여자들은 도문변방부대가 참 힘들 거예요.(B18)

처음 가면 변방대에서 살살이 다 조사하는데 속옷을 입힙니다. 죄인들을 줄지어 세워놓고, 5-6명씩 벽에 세워놓고 기계로 훑고, 주머니는 다 뒤집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을 찍고 데려갑니다. 도문변방대 감옥에서는 돈을 안 뺐고 돌려줍니다.(B24)

우리 방에 한 언니는 반말했다고 각자로 때려서 한쪽 팔을 못 쓰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상태로 복송되었어요. 치료 같은 것은 없었어요. 나도 변방대에서 맞은 적이 있어요. 제가 빼긴 물건을 달라고 했는데 발길질 하면서 주지 않았어요. 그 당시 제가 임신 4개월이었어요.(B10)

제2절 북한당국에 의한 인권침해

1.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²⁵⁸⁾

가. 인민보안부

255)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188-189면 재정리.

256) 위의 책, 189면. 탈북여성 김○○와의 2011년 6월 2일 면담에서 확인하였다.

257)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188-189면 재인용.

258) 이하 ‘구금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는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188-201면;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112-116면을 중심으로 자료를 보강하여 재정리하였다.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에 의하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들은 보위부 및 보안서 구류장과 집결소 등 구금시설에 수감된 후 일상적인 폭행과 함께 강제노동에 동원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 구류장에서의 인권침해

탈북자들이 집결소를 거쳐 출신지역 관할 보안서 구류장에 구금되면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안원은 탈북자들의 진술이 국경지역 보위부 내용과 다르거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2회 이상 탈북한 자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구타와 폭행을 자행한다. 보안원의 지시를 불행이행할 경우 소변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새벽에 잠을 깨워 고통을 주기도 한다.²⁵⁹⁾ 보위부 취급대상자를 제외한 탈북자들은 보안서 구류장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은 후 형이 확정되는데, 재판은 미리 정해놓은 형을 선고하는 형식적 절차일 뿐 변호사의 역할이 거의 없고 자기변호의 기회도 없는 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²⁶⁰⁾

미국 피터슨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이 2004년 8월~2005년 9월까지 중국의 11개 지역에 거주하는 탈북자 1,346명과 2008년 11월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는 응답자의 12.5%로 대부분이 재판 없이 구금되었고, 집결소(경범죄 시설)나 노동단련대(노동단련 캠프), 교화소(중범죄 시설) 또는 관리소 등에 구금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평균 투옥기간은 1주일에서 1개월 정도가 38.2%로 가장 많았고, 1년 이하가 32.4%를 차지하였다.²⁶¹⁾



259)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196-200면 재정리.

260) 마커스 놀랜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억압과 처벌”, 57면.

261) 위의 글, 57면.

〈그림 5-3〉 보안서 구류장 인권침해 사례²⁶²⁾

“그곳에서 계호원(구류장만 지키고 죄인관리를 하는 경찰)들은 여자애들을 마구 성폭행하며 이렇게 임신 하면 구류장내에서 <뽀프>(구류장 용어-일어섰다 앉았다 반복하는 행동)를 3000개 시켜서 쇼크 먹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는 하혈하는 임신부여자에게 그 구멍(여자의 성기)을 피가 나오지 않게 치 막으라고 악설로 욕하다 못해 또 때리고, 그렇게 하혈이 멈추지 않아 며칠 있다 죽어도 그 이유조차 밝혀주지도 않으며, 또 그렇게 구류장 창고 내에서 썩어가는 억울한 죽음의 시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북한의 구류장 ... (중략) ... 대소변을 보는 것도 <보고체계>(계호원에게 불일을 보도록 승인받는 것)가 있어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기분이 좋으면 승인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아무리 보고를 해도 승인 해주지 않아 참다못해 바지에다 불일을 보고 나면 냄새가 난다고 바지를 벗기고 <네 배안에 차있던 것이니 네가 처머라!!>고 미친 듯이 욕설을 하고 강요하는 눈뜨고는 차마 볼 수가 없는 상황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북한의 구류장”(2008년 탈북자 김진수)

2) 로동단련대에서의 인권침해

로동단련대 수용능력은 100명 내지 2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탈북자 중에는 로동단련형을 경험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단순 월경자, 사기, 매춘, 국가몰자 횡령, 마약중독자, 점치는 행위(사주, 관상, 손금 등), 무단결근, 한국 CD나 테이프 불법시청 등 사회일탈자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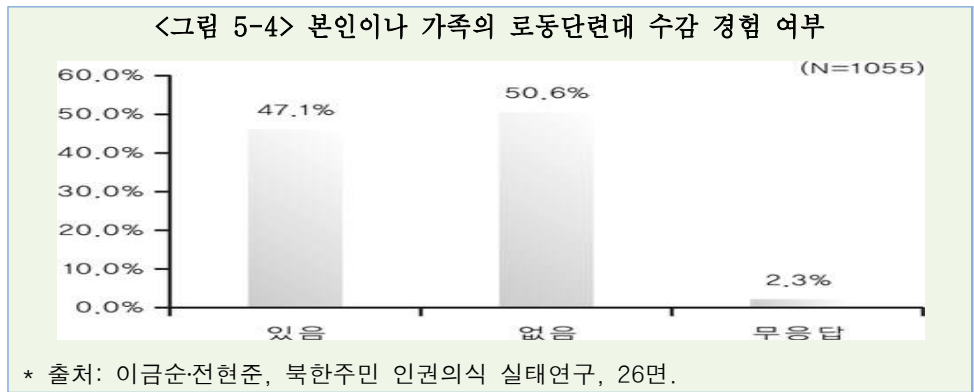
로동단련대의 일과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새벽 작업을 한 후 7시 식사, 오전 8시~저녁 8시까지 본 작업을 하고, 저녁에는 사상교양과 인원 점검 후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탈북자들은 집짓기, 농사일, 주변 탄광에서 석탄 캐기 등에 강제 동원된다. 작업장을 오갈 때는 삽과 곡괭이를 들고 줄지어 다니면서 “비(非)사회주의를 뿌리뽑자”라는 내용의 구호나 자신이 지은 죄를 외치게 하여 수치심을 유발시킨다. 로동단련대에서 탈주하다 체포되면 교화소로 이감된다. 로동단련대 수감 사실은 기록에 남는다. 교화소와는 달리 당증과 공민증은 유지된다.²⁶³⁾

262) 경찰청 보안1과, 살맛나는 대한민국입니다, 경찰청, 2010. 12. 26면.

263) 북한 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연구팀, “북한의 인권실체 4, 노동단련대”, 123면.

최근 탈북자들이 급증하자 법적으로 형벌을 주기에는 경미한 단순 탈북자들을 노동단련대로 보내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노동단련대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 노동단련대의 일례로서, 청진시 나남에 위치한 노동단련대의 경우 약 50명의 무단결근, 폭행, 불법월경자들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중 남자가 30명이고, 여자가 20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주로 수도관 보수공사, 외화벌이 사업소와 같은 기관 건물 건축, 주택건설 등에 강제 동원되고 있다.²⁶⁴⁾

통일연구원이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입국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55명(남성 20.7%, 여성 79.3%) 중 본인이나 가족이 북한에서 노동단련대에 수감 경험이 있는 비율은 47.1%, 그렇지 않은 비율은 50.6%, 무응답은 2.3%로, 노동단련대 수감 경험은 남한입국 가족 존재 여부 및 강제송환 경험 여부와 상관성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⁶⁵⁾



이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2008년도에 실시한 탈북자들과의 인터뷰 조사 결과 조사대상자들 중 34명(34%)이 노동단련대 이상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적이 있었고, 그 중 4명만이 재판절차를 거쳤고, 나머지 30

264) 김안식, “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관한 고찰”, 112면.

265)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26면.

명(88.2%)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금되었다.

<표 5-2> 귀하께서 노동단련대 이상의 구금시설에 구금된 적이 있습니까?²⁶⁶⁾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예	34	34.0	100.0
무응답	66	66.0	
합계	100	100.0	

<표 5-3> 귀하께서 체포되어 결과적으로 노동단련대 이상을 벌을 받았다면, 재판절차를 거쳤습니까?²⁶⁷⁾

항목	빈도(명)	비율(%)	유효비율(%)
재판을 받았음	4	11.8	11.8
재판을 받지 않았음	30	88.2	88.2
합계	34	100.0	100.0

3) 집결소에서의 인권침해

도 집결소로 이송된 탈북자들은 매우 열악한 시설과 환경 속에서, 탈북자들 상호간의 감시와 통제 속에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농사일, 집짓기, 벽돌 찍고 나르기, 화목작업 등에 동원되는 등 강도 높은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나 열악한 식량배급으로 영양실조에 걸려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작업장에 나가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하면 폭행과 구타를 당한다. 위생상태 역시 매우 열악하여 환자가 발생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 강제 송환되어 집결소에서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영양실조로 사망하거나 보안원들의 구타가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⁶⁸⁾

266)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191면.

267) 위의 책, 191면.

〈그림 5-5〉 집결소 인권침해 사례²⁶⁹⁾

“같은 범죄자들끼리 통제하고 구타해서, 세계 죽어나갔어요. 조장, 소대장을 뒤서 (작업)과제를 달성하도록 하니깐 그 사람들이 통제합니다. 그러다 죽으면 병원 사체실에서 부검하고 중촌 야산에 묻었어요. 죽은 사람의 집이 어딘지도 모르고 허약(영양실조)으로 그렇게 죽어 나갔습니다(B23).”

“청진집결소에서 허약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거적에다가 돌돌 말아서 산에다 버리고, 사람이 개보다 못해요. 제 눈앞에 아니 들고(안전원에 마음에 들지 않고) 일을 못하면 삼으로 뺍니다. 감시하는게 있어요. 도주하거나 일을 아니하거나 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인들끼리 감시를 합니다. 생산량을 달성 못하면 관리를 맡는 사람을 때리니까, 관리하는 사람들도 살아남으려면 같은 죄인들을 달궈야 해요. 지도원들이 몽둥이로 조장, 반장을 때리면 조장, 반장들이 죄인들을 몽둥이로 때립니다. 나도 맞아서 손톱이 빠진 적이 있습니다.(B24)”

4) 교화소에서의 인권침해

구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이 끝나면 탈북자를 교화소로 이송하는데, 도주를 예방하기 위해 수갑을 채운 후 주로 기차로 이송한다. 우리와 다른 점은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 수용자 외에는 이송시 포승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도주시 체포되면 공개처형 등의 처벌을 받는다. 도주한다 하더라도 즉시 체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도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²⁷⁰⁾

교화소 입소 시에는 철저한 검진을 한다. 검진은 알몸 상태로 하며 항문 등에 숨겨둔 금전이나 흥기 등을 찾기 위해 소위 ‘뽀뽀질’(앉아 일어서 동작)을 계속시킨다. x-ray 촬영 등 건강검진과 이발을 한 후 신입반 거실에 수용한다. 보안원이 수용자의 토대(출신 성분), 학력, 전공, 기술 등을 검토한 후 개별 작업 내용을 지정한다. 거실마다 수용자들이 지켜야 할 생활규정을 적어 놓은 ‘준칙판’이 부착되어 있다.²⁷¹⁾

268)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194-196면 재정리.

269) 위의 책, 194-195면 재인용.

270) 영등포교도소에 수용중인 탈북 채소자 강○○ 증언(2009. 6. 20 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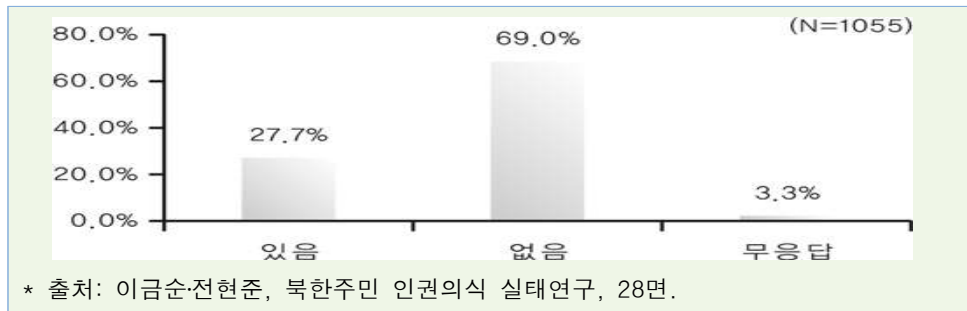
271)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104-105면.

<그림 5-6> 교화소 수용자 생활준칙 예²⁷²⁾

1. 자기가 범한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범죄투쟁에 적극 참가해야 한다.
2. 노동에 성실히 참가해야 하며 매일 작업과제를 초과수행하여야 한다.
3. 노동안전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고를 일으키지 말아야 한다.
4.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아야 한다.
5. 보안원의 승인없이 장난, 오락, 노래, 암호를 쓰지 말아야 한다.
6.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야 한다.
7. 보안원의 승인없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며, 지정된 잠자리를 이용해야 한다.
8. 내부 비품을 철저히 애호, 관리하여야 한다.
9. 위생문화 사업에 모범적으로 참가하며 내부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10. 반장, 부반장, 작업조장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체계를 밝히 제기할 수 있다.
11. 도주하거나 규율을 위반했을 때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으며, 정상에 따라 재판에 회부된다.
12. 비판에 성실하고 생활에 모범적이며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고, 반범죄투쟁에서 큰 공로를 세웠을 때 기한 전에 출소할 수 있다.

통일연구원이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입국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 1,055명(남성 20.7%, 여성 79.3%) 중 본인이나 가족이 교화소에 수감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27.7%이며 그렇지 않는 비율은 69.0%, 무응답 3.3%로 교화소 수감 경험도 강제송환 경험과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⁷³⁾

<그림 5-7> 본인이나 가족의 북한교화소 수용 경험 여부



강제송환되어 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재탈북에 성공한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교화소에 수감된 탈북자는 거의 80%는 굶어 죽는다고 한다. 탈북자 황숙희는 탈북 수기를 통하여 탈북자들이 교화소에

272) 김안식, “북한의 구금시설 및 행형제도에 관한 고찰”, 105면 재인용.

273)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27면.

수감되는 순간부터 인권은 완전히 박탈당하며, 인간이 바로 ‘짐승’으로 전환되며, 그때부터는 매 맞아도 상소할 곳 없고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으며 먹을 것도 모자라 그나마도 힘(가족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있고 돈 있는 죄인들은 살아서 출옥할 수 있지만, 돈도 없으면 죽기를 기다리는 사형수 아닌 사형수가 되어 죽기를 기다리는 곳으로 기술하고 있다.²⁷⁴⁾

〈그림 5-8〉 교화소 인권침해 사례²⁷⁵⁾

“죄인이 죄를 범했다 하면 수성교화소 보내요. 형기 끝나면 다시 자기 자리로 와요. 영원히 해제란 것은 없으니깐. 재판도 해요. 내부적으로 재판기관이 다 있어요. 정치부 안에 재판부서가 있고, 판사도 있어요. 이들은 모두 보위원이죠. 재판을 죄인들 앞에서 해요. 공개재판이에요. 예심도 받고. 구류장에서 예심 받아요. 동포에 구류장이 있었어요. 칸이 5개나 있었는데. 거기는 예심을 받을 때 있는 곳이에요. 재판 받을 때까지 있는 거죠. 재판을 받으면 용서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수성교화소로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관리소 자체가 힘든 곳인데, 구류장은 더 심해요. 그래서 구류장은 죄인들이 무서워하는 곳 이에요. 거기서 풀려나도 혼자 집에 못가고, 데리러 가야 해요. 남녀가 여자는 27세, 남자는 30세가 되기 전에는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을 받아요. 성관계의 경우는 그 안에서 제일 힘든데로 보내서 일을 시켜요. 탄광의 밀채를 미는 일이나, 농사에서 제일 어려운 물길공사에 동원한다거나 그래요. 그런 때는 집에도 안보내고 천막 같은 곳에서 자면서 계속 물길공사를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처벌이 되죠.” (A08 13호 경험자)

“도주하다 잡히면 총살당하거나 공개재판을 받고 수성교화소로 갑니다. 그런데 총살은 잘 안 해요. 그건 처형을 많이 하면, 다른 죄인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내가 있던 동안 공개총살을 10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대체로 도주하다 잡힌 거예요. 다른 거는 총살은 안 해요. 기계파손을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파괴분자로 해서 공개재판을 해서 처단한 적이 있어요. 1999년도에 있었는데, 청진 재감소에 있다가 온 사람이었어요. 공개총살보다 몰래 데려가 없애버려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도주를 자주 시도한 사람이 대상이 되고, 죄수들끼리 서로 말을 잘못된 것, 공개처형하면 죄수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니까 몰래 철조망 너머 함정에 집어넣어버려요.”(A08 12, 13호 경험자)

나. 국가안전보위부

1) 구류장에서의 인권침해

중국에서 체포된 후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국경지역 구류장에 수감되어 1차 조사를 받게 되는데, 부위부원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274) 경찰청 보안1과, 살맛나는 대한민국입니다, 24-25면.

275)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요약문, 국가인권위원회, 2009.12, 83면·251면 재인용.

주소지, 도강시기 및 횡수, 중국 내 행적(직업과 돈의 출처, 한국인 및 기독교인 접촉 및 한국행 여부, 인신매매 관련 여부, 음란물 및 한국영상물 시청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 받는 과정에서 상습적인 폭행, 고문, 알몸수색, 소지품 검사, 위생검사(에이즈 검사 등)를 받는 것은 물론, 심지어 여자의 경우 자궁과 항문 검사를²⁷⁶⁾ 비롯하여 임신한 경우 강제 낙태²⁷⁷⁾ 등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된 사례는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수많은 증언을 통해 잘 드러나 있다.²⁷⁸⁾

북한당국은 탈북행위를 ‘조국반역죄’라는 정치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국경지역 보위부는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탈북동기가 ‘조국반역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게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고 있다.²⁷⁹⁾ 이외에도 탈북자들은 국경지역 보위부에서 조사가 끝나면 조사결과의 경중에 따라 도 집결소를 거쳐 출신지 인민보안서나 보위부 구류장으로 넘겨지거나, 곧바로 정치범수용소로 이송되기도 한다.²⁸⁰⁾ 탈북자들이 최종 수감 장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²⁸¹⁾

보위부 구류장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옥수수를 이삭채로 끓인 죽과 소금국이 전부이며, 부식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외에도 구류장의 위생과 의료실태도 매우 열악하여 전염병과 같이 당장 치료가 필

276) 2003년 온성보위부에 구금되었던 강제송환 탈북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는 2003년 함경북도 온성보위부에 구금되었다. 온성보위에서 여성이 입소하면 옷을 완전히 벗기고 남자 보위부원들이 책상위에 여성을 누어놓고 다리를 벌리게 하고 은밀한 부분(생식기)을 완전히 주무르면서 돈을 감추지 않았는지 확인을 했다”고 한다(이자은, “강제송환은 죽음의 고통의 시작”, 자유공론, 2008년 12월호, 한국자유총연맹, 87면 재인용).

277) 2003년 온성보위부에 구금되었던 강제송환 탈북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중국에서 임신한 상태로 강제 송환되었다. 당시 임신 4개월이었는데 누워 있는 ○○○를 발로 차고 억지로 약을 먹여서 낙태시켰다”고 한다(위의 글, 89면 재인용).

278) 대한변호사협회, 2006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6, 265-274면 참조.

279) 김수암,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12면.

280) 탈북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여행증이나 관련서류 없이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이금순,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 및 변화전망, 통일연구원, 2007, 62면).

281) 김수암,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12면.

요한 경우 외에는 병에 걸려도 대체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한다. 다만 치료비를 본인이 자비로 지불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한다.²⁸²⁾

<표 5-4> 북한 국경지역 보위부 현황 및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침해 내용²⁸³⁾

구분	무산보위부	온성보위부	신의주보위부	회령보위부
송환 장소	중국 난평	중국 카이산툰	중국 단둥	중국 싼허
구류장 수	3개	4개	11개	4개
구류장 평수	5평			
식사	하루 3끼 옥수수밥 반공기	하루 3끼 150g정도의 옥수수죽	하루 3끼 5스푼 정도 되는 옥수수죽	하루 3끼 옥수수가루에 시래기를 함께 넣어서 끓인 죽
인권침해	알몸으로 앉았다 일어나기(현금을 숨겼는지 확인하기위해), 엎드려뺨쳐, 폭행(빨리 움직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낙태(산모의 배를 구둑발로 때림, 약물주입 강제유산), 영아살해(태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살해하거나 물에 넣어 질식사), 싸움시킴(요원들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치료하지 않고 병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등			

탈북자 김진수는 탈북수기를 통해 보위부 반탐과 구류장에서 자행되는 탈북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림 5-9> 보위부 구류장 인권침해 사례²⁸⁵⁾

“1999년 3월 식량 고난으로 온 가족을 고향에 남기고 중국에 넘어가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돌아와 부모님들을 만나려고 결심하고 탈북의 길에 올랐습니다. ...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중국공안에 체포된 나는 2001년 8월 22일, 족쇄에 묶인 상태에서 중국의 도문 감옥까지 이송 되었다. 여기에서 몇 주일 머문 이후 38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함경남도 온성군 남양세관을 거쳐 온성보위부로 이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위부 군복을 입은 여러 명이 들어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는 각자의 짐을 뒤지기 시작했고, 중국 공안에서 북으로 넘긴 나의 가방 안에는 교회에서 받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어느 듯 내 차례가 되어, 내개로 다가온 보위부 지도원이란 자가 가방을 뒤지기 시작 하자마자 보위지도원의 눈가에서 번개 빛 같은 것이 번쩍했습니다.

집에 식량이 떨어져 구하러 중국으로 갔었다고 이야기 했던 나의 가방에서 성경책이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성경책을 나의 얼굴에 정면으로 집어 던지더니, 곧이어 주먹과 발길질이 가해졌고, 죽는다는 소리를 쳤지만 다른 자들의 발길질까지 가세해 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됐고 얼굴은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독한 매질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어 양쪽다리에 각목을 끼워놓고 꾸러 안치더니 “장군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하면서 치고 박고 하다가 나중에는 두 다리에 긴 족쇄를 채우고 거꾸로 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282)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 189-193면 재정리.

283) 강봉채, “북한 탈북자 인권실태보고”, 경찰청, 2010.

는 몽둥이를 들고 사정없이 때려댔다. 때리고 때리고도 성차지 않았는지 부책임자라는 자가 나서더니 “이 새끼, 다시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깔을 뽑아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정말로 눈깔을 뽑아 내는가보다 싶어 두 손으로 눈 주위를 감싸고 매달려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셀 수 없는 주먹들이 나의 눈 주위를 연속으로 강타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힘을 다해 두 눈을 싸쥐었지만 악의에 찬 주먹들을 막을 길이 없었다. 그 후 보름이 지나 26명의 탈북자들과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던 도중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인 탈출에 성공했고, 4일 동안 열차가 움직이지 않아 호송하던 군인들의 경계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절박한 기도가 아니었다면 꿈도 꾸지 못할 탈출이었습니다. …”²⁸⁴⁾

“... 끌어 간곳은 보위부 반탐과 규류장이었다. 우선 두 시간동안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몽둥이와 주먹, 발로 온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다. 왜 사유는 묻지 않고 때리기만 하냐고 하자 너 같은 반동새끼는 이 자리에서 죽여도 된다. 여기는 보안서가 아니라 보위부다. 나라를 배반한 놈들은 짐승이나 한가지니 인권은 통하지 않는다며 더 기승을 부리며 고문하였다.

눈에는 불씨가 튀었고 이빨이 두 대가 부러져 나갔다. 커피와 찢어진 입술과 입안에서 나온 피는 얼굴과 온 몸을 붉게 만들어 버렸다. ... (중략) ... 막대기를 무릎 관절에 끼우고 누르기, 의자를 들고 벽 쪽으로 돌아서서 서 있기, 잠을 재우지 않고 물이 담긴 대야에 서있기 등 고문과 조사를 반복하였다. ...“(2008년 탈북자 김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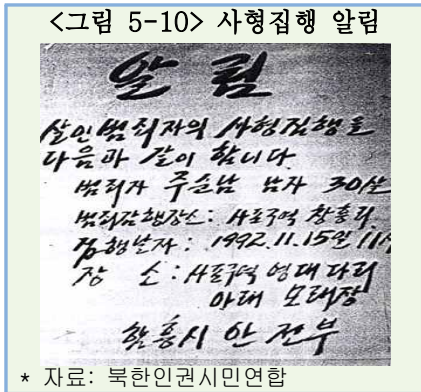
2)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인권침해

강제 송환된 탈북자 중 보위부 취급대상으로 판명되어 정치범으로 확정되면 함경남도 요덕군의 15호 수용소의 서림천 지구 혁명화 구역에 수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요덕군의 15호 수용소 혁명화 구역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을 통한 교양을 받는 곳으로, 작업 과정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일상적인 고문과 폭행을 당하고 작업량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폭행과 함께 식량 배급을 줄이기도 한다. 특히, 수감자에게 공포심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수용소 탈출 시도자나 절도, 말실수를 빌미로 공개처형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탈북자 신동혁이 2005년 1월 탈출할 때까지 14호 개천 정치범수용소에서 적용되었다고 하는 ‘관리소 10대 법과 규정’에 따르면 도주 시도,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

284) 안용범(가명), “탈북자의 소리”, 북한월간 개발소식, 26호, 한국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2007.10.1, 14-15면; 탈북자 안용범(가명)은 하나원 98기를 수료했으며 2009년 7월 15일 그와 면담을 한바 있다.

285) 경찰청 보안1과, 살맛나는 대한민국입니다, 6면.

<그림 5-10> 사형집행 알림



* 자료: 북한인권시민연합

절도, 고의적 시설물 파손, 명령 불복종, 작업량 미달성, 남녀 간의 신체접촉 등에 대해서도 총살하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결국,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은 보위부가 관리하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는 동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인권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인 국제 엠네스티

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수감자들의 심각한 노동 착취와 기아, 고문, 대량 사형 집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용소 폐지를 북한에 요구한 바 있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은 그동안 이를 부인해왔다. 한편 엠네스티는 “김정은 체제로 바뀌는 등 현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고려하면 정치범수용소가 확장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1999년부터 2001년 사이 40%에 달하는 수감자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며 그 심각성을 설명했다.²⁸⁶⁾

<그림 5-11>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지켜야할 10대 법과 규정

- 첫째, 도주할 수 없다.
 - ① 도주시 즉시 총살한다.
 - ② 도주기도를 목격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자는 즉시 총살한다.
 - ③ 도주 목격 시 담당 보위원 선생님에게 즉시 신고한다.
 - ④ 2명 이상 모여 모락을 꾸미거나 도주기도를 할 수 없다.
- 둘째, 셋 이상 모여 있을 수 없다.
 - ① 담당 보위원 선생님의 승인 없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이동할 경우 즉시 총살한다.
 - ② 보위원 마을로 승인 없이 무단 침입하거나 시설물을 파괴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 ③ 담당 보위원 선생님이 정해진 인원 외에 모일 수 없다.
 - ④ 작업 외에 승인 없이 무리 지어 모일 수 없다.
 - ⑤ 밤에는 담당 보위원 선생님의 승인 없이 3명 이상은 다닐 수 없다.
 - ⑥ 작업관계 외에 3명 이상 모여 대화를 할 수 없다.
- 셋째, 도둑질을 할 수 없다.
 - ① 무기류를 도둑질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 ② 무기류를 도둑질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자를 신고하지 않거나 응모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286) “北 정치범만 20만명…고문 강제노역 공개처형”, 국민일보, 201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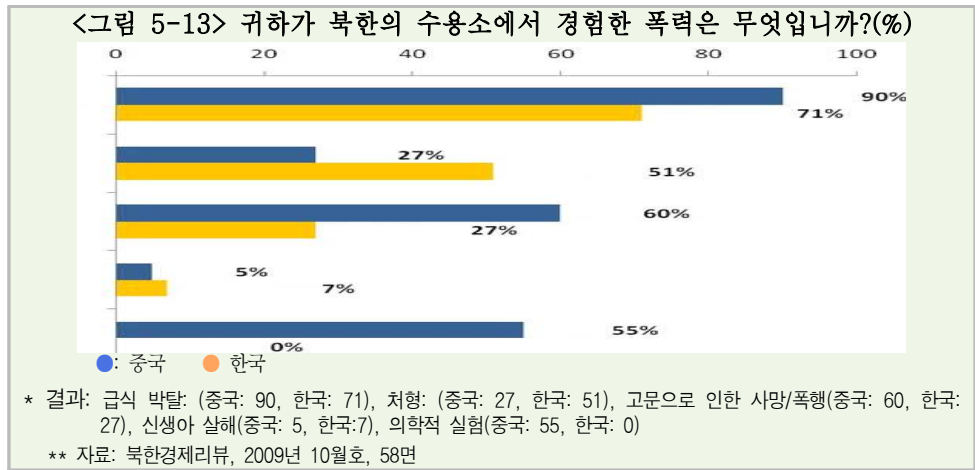
- ③ 관리소내의 양식을 도둑질하거나 감추는 자는 즉시 총살한다.
 - ④ 관리소내의 모든 기자재를 고의적으로 파손하거나 도둑질 한자는 즉시 총살한다.
- 넛쟁이, 보위지도원에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
- ① 담당 보위원 선생님에게 불만을 품거나 구타를 하였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 ② 담당 보위원 선생님의 지시에 불성실한 자, 불복종한자는 즉시 총살한다.
 - ③ 담당 보위원 선생님에게 말 대꾸하거나 대들지 말아야 한다.
 - ④ 담당 보위원 선생님을 만났을 땐 정중하게 인사해야 한다.
- 다섯쟁이, 외부인을 보거나 수상한자를 보았을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 ① 외부인을 감추어 두거나 보호한 자는 즉시 총살한다.
 - ② 외부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감추어 둔 자, 응모한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즉시 총살한다.
 - ③ 외부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감추어 둘 수 없다.
- 여섯쟁이, 서로가 감시하고 이상한 행동 발견 시 즉시 신고해야한다.
- 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며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
 - ②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주의 깊게 듣고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 보위원 선생님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 ③ 사상 투쟁회의와 생활총화에 성실히 참여하고 자기비판은 물론 남의 비판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 ④ 사상 투쟁회의와 생활총화에 이유 없이 빠지거나 불참할 수 없다.
- 일곱쟁이,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는 넘쳐 수행해야 한다.
- ①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에 태만하거나 수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불만을 품은 자로 간주하고 즉시 총살 한다.
 - ②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
 - ③ 자신에게 맡겨진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씻는 것이며 자기를 용서해준 법에 보답하는 길이다.
 - ④ 담당 보위원 선생님이 지시한 과제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 여덟쟁이, 작업 외에 개인적으로 남녀간에 접촉할 수 없다.
- ① 승인 없이 남녀간에 신체접촉이 있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 ② 작업 외에 승인 없이 남녀간에 대화를 할 수 없다.
 - ③ 승인 없이 남녀 화장실에 드나들 수 없다.
 - ④ 특별한 이유 없이 남녀간에 손을 잡고 다니거나 같은 잠자리에 들 수 없다.
 - ⑤ 승인 없이 호실에 드나들 수 없다.
- 아홉쟁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있게 뉘우쳐야 한다.
- 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하여 불복종하거나 의견을 갖는 자는 즉시 총살 한다.
 - ② 자기 자신의 국가와 사회에 지은 죄를 깊이 반성하고 죄를 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자 만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 열쟁이, 관리소의 법과 규정을 어겼을 경우 즉시 총살한다.
- 이상의 관리소 전체 수용자들은 보위지도원을 자신의 진정한 선생님으로 생각하며, 관리소의 10대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 자기들의 지난날 저지른 과오를 씻는데 성실한 노동과 규율로 이바지하여야 한다.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는 미국 피터슨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의 다음과 같은 설문조사 결과에 잘 드러나고 있다.

첫째, <그림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북자들 대부분은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되었던 경험이 있고, 절반 가까이 보안서(경찰서) 내의 구류장에 구금된 경험이 있으며, 구금사실에 대해 응답자 대다수가 부당(92.6%)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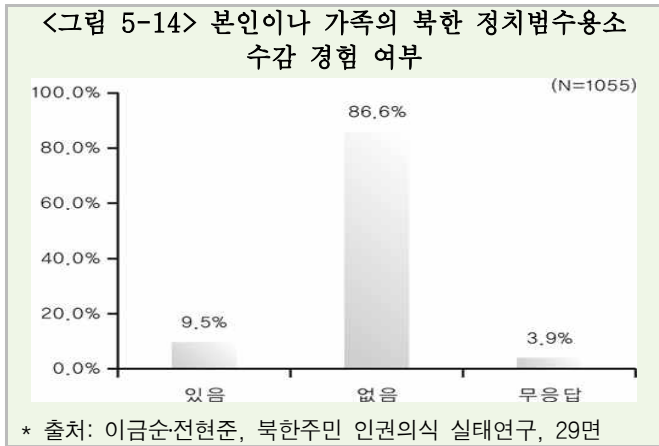


둘째,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된 탈북자들 대부분은 식량배급을 받지 못했으며, 폭행과 고문, 처형 등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체류 탈북자의 55%는 “북한 수용소에서 생체 실험을 당했다”고 답했다. 또 “신생아 살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5%였으며 국내정착 탈북자 중 7%도 “신생아 살해를 경험했다”고 답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²⁸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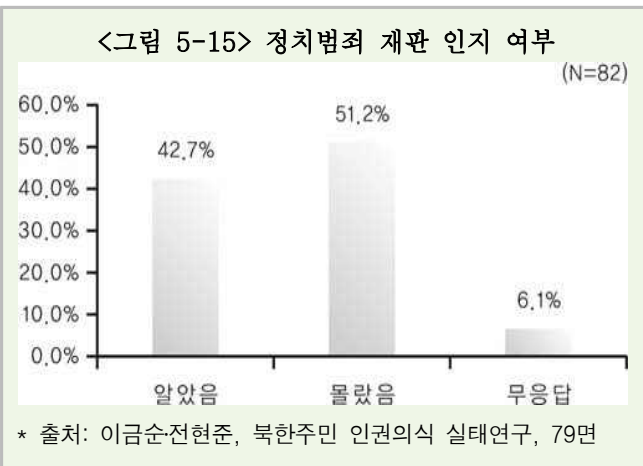


287)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55면; “탈북자, 北수용소서 생체실험 당해”, 동아일보, 2009.11.5.

통일연구원이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입국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 1,055명(남성 20.7%, 여성 79.3%) 중 본인이나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경험 있는 경우가 9.5%이며 없는 경우 86.6%, 무응답은 3.9%로, 정치범 수용소 수감여부는 강제송환 여부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⁸⁸⁾



북한 내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 중 하나는 정치범죄에 대한 자의적 처벌이다. 북한의 형법은 정치범죄자도 재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외적인 선전용일 뿐이다. 통일연구원이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입국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 1,055명(남성 20.7%, 여성 79.3%) 중 정치범죄자의 재판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 51.2%가 ‘알지 못했다’고 답하였다.²⁸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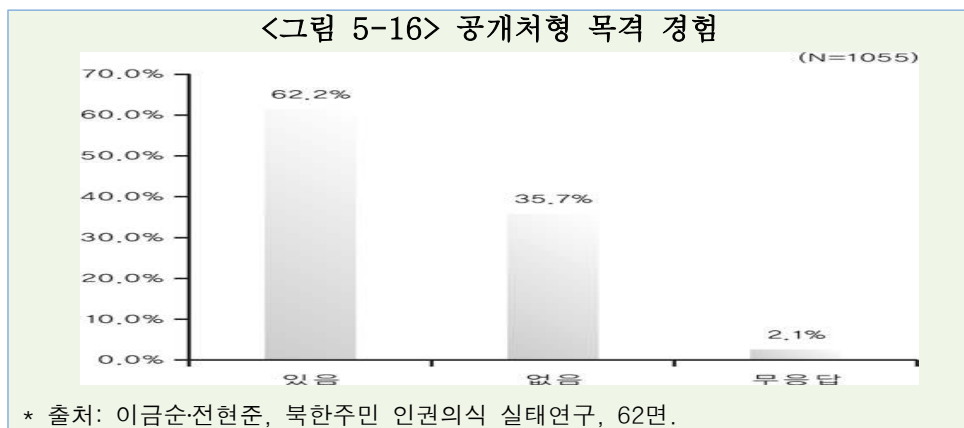


288) 이금순·전현준,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29면.
 289) 위의 책, 78면.

2. 공개처형에 의한 인권침해

최근 북한여성의 인신매매 참상에 대한 비판이 국제사회에 여론화되면서, 북한당국은 인신매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함께 최고 사형까지 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심지어 도강자는 물론 도강알선자까지 공개처형을 하는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인권침해 비난을 의식해 다소 주춤했던 공개처형을 최근 빈발하게 자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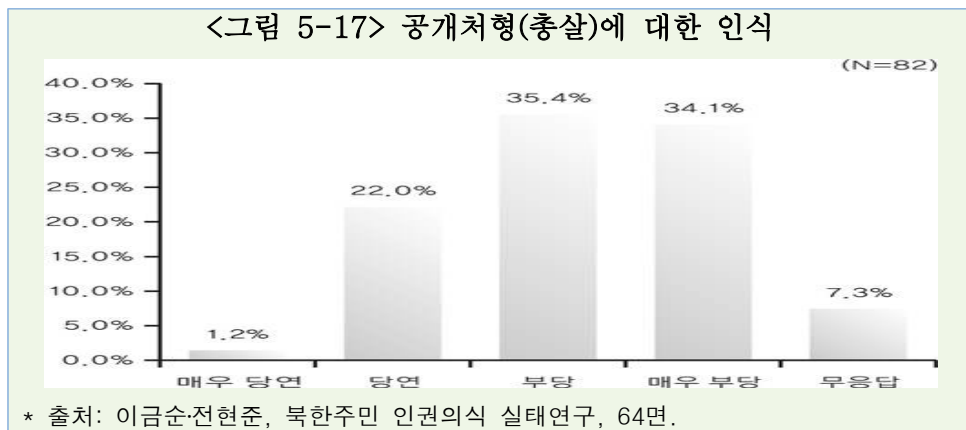
통일연구원이 2010년 3월부터 10월까지 국내입국 탈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응답자 1,055명(남성 20.7%, 여성 79.3%) 중 62.2%가 직접 공개처형을 목격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비율은 35.7%, 무응답은 2.1%로 나타났다.²⁹⁰⁾



특히, 면접 설문조사에 응한 탈북자들 중 공개처형에 대한 인식은 ‘매우 당연하다’ 1.2%, ‘당연하다’ 22.0%, ‘부당하다’ 35.4%, ‘매우 부당하다’ 34.1%, ‘무응답’ 7.3%로 나타났다. 매우 당연함 1점, 당연함 2점, 부

290) 위의 책, 62면.

당함 3점, 매우 부당함 4점으로 측정하여, 평균값이 3.24로 나타났다. 공개처형에 대한 평가결과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며, 구금시설 수감 경험 여부와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구금시설 수감 경험이 있는 경우 공개처형이 당연한 처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²⁹¹⁾



‘데일리 NK(Daily NK)’는 함경북도 회령시 회령시장 인근(2005.3.1)과 회령시 유선동(2005.3.2)에서 열린 2건의 특별공개재판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공개한 있다. 이 판결문에는 피고인들의 피의사실이 나타나 있는데, 탈북자들이 국경을 넘는 행위 전반을 ‘인신매매’로 취급하여 흉악 범죄로 묘사하고, 중국에서 벌여 온 외화를 북한 화폐로 교환한 것까지 범죄행위로 판결하고 있다. 재판장은 2건의 재판에서 10명에게 10년~15년의 노동교화형을, 3명에게는 사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집행했다.²⁹²⁾

데일리 NK는 2006년 4월 15일 회령시 공개처형 동영상의 일부 장면을 담은 14장의 스틸 사진을 입수해 사이트(www.dailynk.com)에 공개

291) 위의 책, 64면.

292) “북한 공개재판 판결문”, 데일리 NK, 2005.3.18.

했다. 공개된 동영상은 공개재판과 총살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담고 있다.²⁹³⁾ 북한에서 공개총살을 진행하면 말뚝에 처형 대상자를 묶어놓고 전방 10~15미터쯤에 위치한 보안원들이 머리, 가슴, 복부에 3발씩 총 9발의 총을 쏜다. 이때 처형 대상자를 말뚝에 묶어둔 끈이 끊기면서 시체가 앞으로 넘어지게 되는데, 이 영상에는 이런 모든 광경이 기록되어 있다. 공개처형을 실시하기 전에 회령시 보안서 보안원들은 시내 곳곳을 지키며 수천 명의 주민을 공개처형 현장에 동원시켰다고 한다.²⁹⁴⁾ 이외에도 ‘좋은벗들’에서 발행하는 <오늘의 북한소식>에 의하면, 2008년 2월 20일 함경북도 온성군 주원구의 한 다리 위에서 남자 2명, 여자 13명이 중국 친척들과 연계해 생활에 도움을 받으려고 도강하거나, 도강하겠다는 이웃을 도와주거나, 다른 도강자를 알선해주는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공개 처형되었다고 한다. 북한당국은 각 기관, 기업소, 인민반들에게 모두 참가하도록 사전에 공지한데 이어 당일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단속했다.²⁹⁵⁾

탈북자 학술단체 NK지식인연대(2010.7.7)에 따르면, 2010년 6월초부터 북한 중앙당과 보안부 합동으로 탈북혐의자·탈북방조자·마약 밀매범·휴대폰 소지자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수십 명을 체포했고, 이 중 14명이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공개처형 될 예정이고, 이외 10명은 ‘10년 이상 교화형’, 20명은 ‘노동단련대’, 18가구는 ‘추방형’, 몇몇은 ‘15일간의 무보수 노동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93) 회령출신 탈북자 김광희(32세, 2001년 입국) 씨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공개총살 현장은 함북 회령시 오봉리와 유선노동자구이며, 회령시의 경우 이곳에서 공개총살이 계속 있어왔다”고 확인해 주었다. 이번에 처형된 북한 주민은 2006년 3월 1일 2명, 3월 2일 1명이며, 죄목은 ‘북한을 탈출한 죄’라고 공개총살 현장을 직접 목격한 중국 내 탈북자들은 전한다. 동영상은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11명의 수인들이 끌려 나오고 ▲공개재판이 진행되어 판사가 사형을 선고한 후 “즉시 집행하라”는 목소리가 들리며 ▲끈이어 말뚝에 수인을 묶는 모습 ▲총소리와 함께 말뚝에 묶여 있던 시체가 앞으로 거꾸러지는 모습 등 공개총살 현장이 생생하게 담겨져 있다.

294) 데일리 NK, 2006.4.15.

295)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4호, 2008.3.

3. 위장탈북 남파간첩

2011년 5월 현재 국내입국 탈북자는 2만 1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탈북자 방지를 위해 중국과 국경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대남공작부서는 한국행 탈북자를 활용하는 공세적인 대남공작 활동을 다방면으로 구사하고 있다.

북한이 탈북자를 활용하여 대남간첩공작을 수행하는 유형을 보면 첫째, 단순 탈북자를 체포하여 처벌을 미끼로 회유와 협박을 통해 포섭한 후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보원으로 포섭된 탈북자들은 남한의 각종 기밀 탐지나 유언비어 유포 등을 통한 사회교란, 김정일 체제 찬양, 북한체제 찬양 동영상 CD유포, 마약밀매를 통한 자금 확보 등을 수행하도록 지령 받고 있다. 둘째, 대남공작부서는 탈북자를 포섭하여 대남공작 기본교육을 이수시킨 후, 대북사업을 미끼로 남한의 특정사업자를 중국으로 유인하여 북한공작원에 소개하거나 한국 내 전략물자 등 특정물품 구입 임무나 남한 내 학술, 문화, 학생, 노동 등의 친북단체나 대북교류 희망자를 중국으로 유인하여 공작원과 접촉하도록 지령하고 있다. 셋째, 대남 공작부서는 탈북자 위장간첩을 직접 양성한 후, 탈북자 신분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침투시킨 후 대남공작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²⁹⁶⁾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 기관은 탈북자 중 정보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대남공작원으로 포섭한 후 탈북자로 위장시켜 합법적으로 남파시키고 있다. 위장탈북 간첩은 탈북자 신분의 처벌을 면죄 받은 후 가족을 불모로 남파되어 성을 미끼로 대남공작업무를 수행하다 정보당국에 체포되었다. 이창수(남, 가명)는 1997년 6월 중국으로 탈출하여 2년

296) 유동열, “위장탈북자 실태와 대책”, 40-42면 재정리.

동안 체류하다 1999년 중국 공안에 체포된 후 강제 복송되었다. 북한 보위사령부는 이창수를 포섭한 후 2000년 2월 탈북자로 위장하여 탈북시켰다. 그는 2002년 11월 베이징의 한국대사관 영사부에 진입한 후, 2003년 6월 하나원을 거쳐 대전에 정착한 후 동료 탈북자와 결혼하여 암약하다 2004년 4월 동생들을 데려오기 위해 압록강을 건너던 중 북한 경비병에게 체포되었다. 보위부사령부는 이씨에게 “탈북자동지회 등 남쪽 탈북자단체에 가입한 뒤 회원증을 증거물로 갖고 재입북하라”라는 임무를 주었다. 2004년 5월 19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이창수는 도착한 후 관계기관에 자수하였다.

원정화(1974년생, 여)는 중국으로 탈출한 후 보위부에 포섭되어 2001년 10월 남파간첩 지령을 받고 조선족으로 위장하여 남한 남성과 결혼한 후, 국내로 입국하여 성을 미끼로 대남공작업무를 수행하다 2008년 7월 검거되었으며, 김미화(1974년생, 여)는 2006년 중국에서 화상채팅을 통해 만난 남한 남성을 성을 도구로 포섭한 후 한국관광객 신원정보를 수집하여 북한에 보고하는 등의 간첩임무를 수행해 오던 중, 2009년 보위부로부터 탈북자로 위장하여 한국에 침투하라는 지시를 받고 라오스 주재 한국대사관에 들어가 2009년 9월 탈북자 신분으로 국내로 입국하여 대남공작 활동 중 검거되었다. 이외에도 2010년 체포된 동명관·김명호 역시 위장탈북간첩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북한은 탈북자가 급증하자 대남공작부서인 ‘255부’(구 당 대외연락부)를 비롯하여 국방위원회 직속 대남공작부서인 정찰총국(당 작전부와 35호실을 인민무력부 소속의 정찰국과 통합), 반탐업무를 전담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까지 총 동원하여 탈북자를 포섭한 후 대남공작원으로 남파시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탈북인권단체총연합 한창권 회장은 지금까지 남한정착 탈북자 가운데 2백여 명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하며, 재입북한 탈북자 중에는 ‘간첩’으로

의심되는 인물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는²⁹⁷⁾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297) 정락인 기자, “탈북자 2백여명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다”, 시사저널 1085호, (주) 시사저널미디어, 2010.8.10, 13면.

제6장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보호 개선방안

제1절 국내차원의 탈북자 인권보호

1. 범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가. 국민의 인식전환

현재 정부는 국내외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단지 ‘안됐다’ ‘불쌍하다’는 정도로 인식할 뿐,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역시 북한인권보호법을 국회에 상정하였지만 아직까지 당리당략만 앞세울 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탈북자들의 증가에 따른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

탈북자들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지에 체류하거나 국내로 입국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북한에 민주주의를 전파할 수 있는 남북통일의 미래 자원이라는 사실이다. 때문에 북한주민들 뿐만 아니라 중국 등지에 표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강제 송환되지 않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할지라도 우리사회가 전원 포용해야 한다. 수 만 명

에 이르는 국외체류 탈북자를 우리사회가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국민들의 몫이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 등 지속적인 대남 도발과 협박 그리고 위장탈북 간첩 남파로 국민들은 북한정권과 탈북자를 동일시하여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탈북자 사회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이 ‘민족화해위원회’와 연계하여 1박 2일간 실시한 ‘새터민가정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봉사자들 역시 탈북자들을 직접 만나 생활해보기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²⁹⁸⁾

결국, 국내정착 탈북자와 함께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막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당위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탈북자 관련 정책자문위원들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NGO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대화 통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국내외 NGO를 강제송환탈북자 인권보호지원협의체와 정보수집창구로 활용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도 있어야 한다. 탈북자 지원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 확보 및 국민과 탈북자간의 갈등 해소 등을 위해서 정치인과 민간전문가, NGO, 탈북단체, 해외동포 등이 참여하는 ‘범민족적 협의체’ 기구를 설립하여 탈북자 지원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나. 국민적 여론수렴 및 정책홍보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문제는 우리사회가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상과 보호방안 관련 TV 토론 및 사이버 토론문화 정착, 특별초청 세미나, 정책설명회, 정세보고회 및

298) 전술한 바와 같이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하나원’이 ‘민족화해위원회’와 연계하여 2011년 6월 2-3일간 실시한 ‘새터민가정체험’ 프로그램에 참가신청을 한 봉사자들과의 면담과정에서 북한정권과 탈북자를 동일시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강연회 등을 정부적 차원에서 정례화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 사회단체와 NGO, 종교단체, 언론단체, 인터넷 매체 등을 활용하여 탈북자 난민 인정의 당위성과 함께 강제송환의 불법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들이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지원해야 한다. 특히,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망을 개설하여 탈북자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국민과 탈북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과시적 정책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다. 사회적 관심과 역량 제고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탈북자 인권관련 학술행사나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을 주제별, 사안별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사는 공론화를 넘어 탈북자들의 인권 개선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특히, 정부당국은 국내 NGO와 공동으로 탈북자들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한 시청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보호 캠페인과 행사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 자치단체로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외체류 탈북자 돕기 마일리지 적립 캠페인이나,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침해 실상을 알리는 ‘사진전시’ 행사 등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북한의 인권침해 실상과 인권보호 당위성에 대한 방어기제를 대북방송을 통해 실시간 전파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인권의식을 고취시켜 북한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 및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도 있다.

2. 국내법의 재검토

가. 탈북자 인권보호법 마련

현재 유엔 같은 국제기구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을 통해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체험담을 토대로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하고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 왔다.²⁹⁹⁾ 우리정부는 지난 3월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신설하여 북한주민과 납북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신고 받아 기록·보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2010년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두고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보존하도록 규정한 총 2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된 북한 인권법안을 의결 처리한 바 있으나,³⁰⁰⁾ 정치권은 여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 인권법안은 그 대상을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에 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지역을 탈출한 탈북자 역시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으로 보아야하는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재외탈북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럼에도 북한인권법안 내에 탈북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 뿐만 아

299) 북한 인권법안의 실질적인 모태가 된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탈북자들의 난민자격 혹은 망명 신청 허용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재망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의 중국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 접근 허용을 중국정부 측에 권고하고 있다. 2006년 일본의 북한 인권법안 역시 탈북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탈북자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다(서은옥, “북한 인권법 탈북민 보호 항목 삭제된 채 수년째 방치 중”, 미래한국, 2009.10.28-11.10(355호), 미래한국미디어, 21면).

300) 북한인권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북한의 내각 기관지인 민주조선은 2010년 2월 21일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노골적인 대결선언, 전쟁선언”이라고 규정하고 “신성한 우리 제도, 우리 인민의 값높은 존엄과 인권을 함부로 걸고 들며 모독하는 대결광신자들은 절대로 무사할 수 없다”고 협박했다(“북한인권법 통과, 대가 치를 것”, CBS 뉴스, 2010.2.21).

나라 재외탈북자의 인권보호 문제도 함께 다루어야한다. 즉,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북한 인권법안’ 내에 탈북자 인권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또는 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해 별도의 탈북자 인권보호법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표 6-1> 국외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북한인권법안 수정(안)

북한인권법안(현행)	북한인권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북한주민 및 국외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북한주민 및 국외탈북자”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거나 북한을 탈출한 후 국외에 머물고 있는 자를 말한다.</p>
<p>제6조(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2.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 방안 3. 북한의 인권실태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 4.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5. 그 밖에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제6조(북한인권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 및 국외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2. 북한주민 및 국외탈북자의 인권 증진 방안 3. 북한주민과 국외탈북자의 인권실태 및 증진에 관한 국내외 교육 및 홍보 4. 북한주민 및 국외탈북자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 5. 그 밖에 북한주민 및 국외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나. 탈북자 정착지원법 개정

북한을 탈출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서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2~5만 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외체류 탈북자들은 국제법상으로는 북한이 독립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정착 의사를 보이기 전에는 한국 국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 한국의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 영토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을 우리국민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 결국, 중국 등 국외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여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통일 정책과 인권을 기본 토대로 국외체류탈북자와 탈북자 2세들을 전원 수용할 수 있도록 동법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다. 대규모 탈북난민 수용법 마련

중국 등지에 체류하는 국외 탈북자는 최소 수 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입국을 희망하고 있고,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이들의 국내입국 의지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탈북자 보호·관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³⁰¹⁾ 그리고 「거주지 신변호보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만으로 일시에 수백 수천에서 수만 명이 유입되는 대규모 탈북자들을 보호·관리하기에는 재정지원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301) 시행령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로 전입한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탈북자 지원을 위한 1년 예산을 1인당 약5천만원으로 산정해본다면 3,000명이 입국할 경우 1년에 약 1,500억원, 5천명일 경우 2,500억원, 1만명일 경우 5,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통해 유관 부처 간의 입장을 통합·조정할 수 있는 가칭 ‘대규모 탈북난민 수용법’(이하 수용법)을 제정하여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수용법 제정은 대량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에 필요한 정착기금 마련을 통일비용으로 확보하고 그들의 남한정착을 원활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³⁰²⁾

수용법 안에는 대규모 탈북자의 법적 성격, 국내 수용·보호에 대한 허가 기준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별 분산 수용을 위한 수용시설 설치 및 운영 근거, 실현 가능한 지원사업과 체계, 인권보호 방안 등을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대량탈북 사태로 우려되는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 군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하여 국가안보와 치안 및 경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외 대규모 탈북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독일과 베트남 등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로 탈출한 대규모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협조를 통해 해당국에 정착시키거나 제3국으로 망명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북한 사회가 안정화될 경우 귀환시키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경찰은 대규모 탈북자들의 유입에 따른 급증하는 치안수요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탈북난민의 보호와 수용소의 치안질서 유지에만 치중하도록 담당 임무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즉, 가칭 「대규모 탈북난민수용법」 제〇〇조(대규모 탈북난민 신변보호 및 수용시설 치안유지)에 가칭 “〇〇부장관은 대규모 탈북난민수용소에 수용된 탈북난

302) 현재, 탈북자지원 재원마련의 방안으로 “통일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착기금”(일명, 통일정착기금)이 설립되었다.

민의 신변보호와 수용시설의 치안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경력을 지원한다.”라고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³⁰³⁾

3. 신변보호 시스템의 재검토

가. 위장탈북 검증체계 강화

1) 보안경찰 신문관 파견

탈북자가 한국공관에 잠입한 후 국내입국을 희망하게 되면 1차적인 신문과정을 거치지만 위장간첩을 식별하기 쉽지 않다. 해외 한국공관에 탈북자 전담 신문관을 보강하는 방안 즉, 탈북자들의 신문과 신변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보안경찰관을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에 탈북자 신문관(영사)으로³⁰⁴⁾ 파견하여 위장탈북자를 색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탈북자들이 가장 많이 체류하는 중국동포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신문과정에서 확보된 첩보나 정보를 통해 북한 대남공작 기구의 위장탈북 간첩 잠입 루트나 동향 등을 파악해야 한다. 탈북자 전담 신문관(보안경찰)의 자질향상을 위해 국내로 송환한 후 주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재검증 시스템 도입

국내정착 탈북자에 대한 2차적 검증시스템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입국 탈북자 검증시스템은 1차적으로 정부합동조사기관의 신문을 거쳐 하나

303) 김윤영,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치안대책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8, 87면.

304) 현재 일부 탈북자 체류 국가에 정보기관 탈북자 신문관을 파견하고 있다.

원을 수료한 후 사회에 정착하게 되면 신변보호경찰관이 일정기간 관리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범죄경력자나 위장탈북자들이 1차적 검증시스템을 거친 후, 일정기간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국내활동을 할 수 있다. 2차 검증시스템을 가동하는데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가안보는 국가존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이외에도 탈북자들의 북한 및 제3국 체류시 범법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국내 범죄경력자 관리수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련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국가지원을 재조정하고, 국내입국을 억제하는 등의 조치로 위장탈북 환경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나. 신변위해 요인 차단

1) 집중관리체제 도입

최근 국내 정착탈북자들이 김정일 독재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후 풍선을 이용하여 북한으로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북한당국은 ‘탈북자 사살’³⁰⁵⁾을 지시한데 이어서, 탈북자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첫째가는 처단대상”³⁰⁶⁾로 위협하는 등 탈북자들에 대한 신변위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1997년 2월 15일 김정일의 처조카인 탈북자 이한영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북한의 공작조로 보이는 피한 2명에게 피살당한데 이어서, 2010년 4월 20일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김명호(36)와 동명관(36)이 위장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황장엽씨를 암살하려다 정보당국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체포는 곧 변절’이라는 표현을 쓰며 “지금이라도 세상 밖에 나가면(황장엽 전 노동당

305) 한미정보 당국에 의하면 김정일은 2009년 5월 “탈북자들은 사살하거나, 체포시 10년간 노동교화형에 처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안용현, “김정일 탈북자 사살 지시”, 조선일보, 2010.1.26).

306)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2010년 3월 23일 담화; 우리민족끼리, 2010.4.5.

비서를 살해하라는)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³⁰⁷⁾ 따라서 신변보호경찰관서는 고위급 인물이나 가족, 지명도가 높은 자, 공작원 출신 등 주요 탈북자에 대한 집중관리체제 방안을 도입하여 신변위해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친북인터넷 사이트 실시간 검색

북한은 최근 사이버 공간을 통해 탈북자들을 배신자로 규정하여 차단할 것이라는 글을 탈북자 관련 민간단체나 탈북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공연히 게재하여 탈북자들의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탈북자들 사이에 신변위협에 대한 심리적 공포가 확산되어 그들의 사회정착에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탈북자들 간 갈등을 유발시켜 치안환경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구사되는 북한의 탈북자 테러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대남공작 인터넷사이트, 국내외 친북 인터넷 사이트,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나 탈북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게재물을 삭제하거나 침투경로를 추적하여 역공작하는 등의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3) 신변보호경찰관 인력확보 및 전문요원 양성

현재 탈북자 신변보호경찰관(보안경찰) 800여명으로³⁰⁸⁾ 2만명이 넘는 탈북자를 관리하다 보니 신변보호경찰관 1인당 평균 25명을 지원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신변보호대상자 ‘가’급과 ‘나’급은 신변보호경찰관 1명씩을 배정하여 신변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신변보호경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들에 대한 테러가능성은 물론 위장탈북간첩의 활동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경찰의 수요는 더욱 증

307) “北의 딸 생각에… 황장엽 암살조의 눈물”, 동아일보, 2010.7.2.

308) 통일부, 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실무 편람, 2011.1, 통일부, 93면

가되고 있다.³⁰⁹⁾ 따라서 탈북자의 신변보호와 위장탈북자들을 색출하는 등 보안경찰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신변보호경찰관의 인력 확보와 그에 따른 예산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외에도 탈북자들의 신변보호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탈북자 신변보호담당관은 보안요원을 차출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의식성향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친근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기존 신변보호담당관 중 전문요원을 선발하여 재교육을 실시한 후 탈북자의 신변보호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신변보호 전문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경찰 교육기관에 별도의 탈북자 ‘신변보호과정’을 개설하여 재교육과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보안국은 우선적으로 신변보호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탈북자 관리전문화를 위해 신변보호경찰관서별로 탈북자 관리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외에도 수당의 현실화나 인사 등과 관련한 사기 진작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4) 신변보호 지원체계 강화

2011년 5월말 현재 국내입국 탈북자만 해도 2만 1천명을 넘어섰고, 해외에서 국내입국을 꿈꾸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대기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와 관리를 담당하는 보안경찰의 업무는 폭증되고 있다. 이러한 보안환경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탈북자 보호·관리를 전담하는 가칭 ‘동포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309) 신변보호경찰관인 보안경찰관은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에 편입한 후 1-2년 동안 보호 관리를 담당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취업보호담당관이 일상생활과 취업에 관련된 지원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나 보안경찰관은 탈북자 보호기간 동안 그들의 애로사항 상담과 처리, 취업 문제 등 거주지보호담당관과 취업보호담당관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수 있다.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경찰청 보안국 내에 탈북자는 물론 국외 거주 동포를 지원·관리하는 1개과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칭 ‘동포 지원과’에서는 탈북자 관리(1계), 탈북자 합선 및 수사(2계), 재외동포 지원·관리(3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경찰청 보안과 내에는 ‘동포지원계’를 신설하고, 탈북자 밀집지역(1,000명 이상) 관할 경찰서에는 보안과 내에 ‘동포지원계’를 신설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동포지원계 내에는 탈북자들을 상담 지원하는 전문요원을 반드시 배치할 필요가 있다.³¹⁰⁾

다. 인권보호 활동의 과학화

1) 인권침해 체험수기 수집 분석

최근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과거와 달리 사이버공간(Cyber Space)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입장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국내 탈북자 단체들은 각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탈북자들이 당한 인권침해와 관련 수기를 게재할 수 있는 별도의 홈페이지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다수 국내정착 탈북자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북한당국으로부터 당할 보복의 우려 때문에 김정일체제 비판이나 정치범의 인권침해 실태, 공개처형, 생체실험 등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인권침해 실태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즉, 탈북자 자신들이 당한 인권침해 실태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신변위해를 당할 우려와 함께 시간과 장소 등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Cyber Space)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성과 익명성, 신속성, 편리성 등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을 통해 탈북자들이 겪었던 인권유린 체험담을 수렴할 수 있을

310) 김윤영,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청소년 보호 방안, 80-81면.

것이다. 즉, 신변보호경찰관서는 탈북자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그들의 인권침해실태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한 후 탈북자 신변보호에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신변보호담당관들은 탈북자들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다양한 정보와 첩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탈북자들이 탈북단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인권침해 체험수기를 분석하여 탈북브로커들의 범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경찰청 보안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보사랑방’ 홈페이지에는 안보사랑방소개, 참가마당, 홍보마당, 자료마당, 113콜센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탈북자들이 북한에서와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인권침해 수기를 게재할 수 있는 ‘탈북체험수기’란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탈북 체험수기 게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들의 호응도가 높을 경우 신변보호 경찰관서로 확대 개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2) 인권침해 진술방법의 매뉴얼 지원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12주의 사회정착 교육을 받은 후 주거지에 편입하지만 사회적응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북한 생활과 탈북과정에서 체험했던 인권침해 실태를 정부합동신문과정에서나 연구자들의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형식을 통해 표현할 수도 있으나, 자신이 체험한 인권침해 치부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다. 특히 탈북여성들은 주요 신체부위와 관련된 인권침해 내용에 대한 성적 수치심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란 더더욱 어렵다.³¹¹⁾ 따라서 탈북자 신문관이나 신변보호경찰관들은 인권침해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여성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태 조사는 여성 신문관

311) 탈북여성 김○○과의 2011년 6월 2일 면담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나 여성 신변보호경찰관이 입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 전문상담 신변보호경찰관의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확보된 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전문상담사 과정에 위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중국체류 탈북청소년 국적취득 지원

중국체류 탈북자 중 탈북여성들은 탈북자 전체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 탈북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도피 생활하는 과정에서 중국인과 동거나 인신매매 등에 의해 자녀를 출산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도 많다. 국내입국 탈북여성들이 중국에 두고 온 자녀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국적을 취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유전자감식결과서를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탈북여성들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한계로 중국당국으로부터 법무부가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다. 유전자감식결과서 또한 유전자감식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병원과 감식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탈북여성들의 국내입국이 증가하면 할수록 중국 체류시 출산한 자녀들의 유전자감식 의뢰가 증가할 것이다. 탈북자 신변보호경찰관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식실을 통해 협조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 내에 유전자감식을 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탈북여성 자녀들이 국적을 취득하여 가정을 꾸릴 수 있어 안정적인 국내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탈북자 인권침해기록 보존소’ 신설

정부당국은 국내정착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문제와 관련한 지원정책도 중요하지만 탈북자가 북한과 중국 체류과정에서 겪었던 비인간적인 인권

침해실태 자료를 단일화된 창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현실화해야 한다.³¹²⁾ 현재 탈북자 연구자나 연구기관, 탈북단체, 시민단체들이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제 각기 다른 채널을 통해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즉,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를 위한 통일된 목소리보다는 제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다보니 국내외 사회에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된 자료는 탈북자가 북한으로 강제송환될³¹³⁾ 경우 고문과 폭행, 공개처형, 살해, 강제낙태, 정치범수용소 강제 구금 등에 의한 비인간적인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탈북자 관련 당사국을 비롯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탈북자 난민인정의 당위성을 요구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즉,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 국정원, 경찰청의 협조체제 하에 가칭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 보존소’를 신설하여 확보된 인권침해 자료를 국제사회에 제공하는 등의 탈북자 난민문제를 공론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³¹⁴⁾

5. 탈북자 인권침해 사례 분석자료 지원

312) 현재 개인 연구자들의 관심에 의해 설립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윤여상)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진행 중인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수집하고 보존하는 작업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8년 현재 국내입국 탈북자 중 강제 송환되어 국경주변에 위치한 운성, 무산, 회령, 신의주, 혜산 등의 보위부 구금시설에서 직접 체험했던 인권침해 사례 382건을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313) 국내입국 탈북자들 중 상당수는 중국당국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구금시설이나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가장 잔악한 인해침해를 당한 후 천신만고 끝에 재탈북을 한자들이다.

314) 현재 탈북자 인권침해 문제를 담당하는 외교통상부 인권사회과, 통일부 인도지원국,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센터 등이 있으나 인력과 예산이 부족으로 독자적인 정책 방안이나 추진 능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해결방안의 하나로 탈북자 인권침해문제를 전담하는 통합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나, 우선적으로 통일부 인도지원국 내에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 보존소’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북한과 중국당국의 탈북자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축적된 자료를 분석하여 다양한 형태로 국내외에 공개하여 공론화하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첫째,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특별 보고서’를 지속적으로 생산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노동단련대, 집결소, 교화소, 공개처형, 강제노동, 북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사법처리 실제 적용 여부, 구금시설 수용절차 및 사유, ‘정치범’에 대한 재판절차, 현지공개재판 제도의 운용 실태를 비롯하여 중국체류 과정에서 겪었던 인신매매나 성매매 등에 대해 주제별, 사안별로 분류하여 특별보고서를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방지 및 중국과 북한 당국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중국과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뉴스레터’로 작성하여 시의 적절하게 공개하여,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국내외적으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뉴스레터’는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수집하여 작성하는 즉시 언론배포나 관련 국내외 인권단체 및 국제사회에 이메일로 발송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2절 국외차원의 탈북자 인권보호

1. 국제법의 재검토

가. 탈북자의 난민자격 지원

탈북자의 대부분은 경제적 동기에 의해 탈북한 자들이다. 그런데 현행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년, 이하 난민협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1967년, 이하 난민의정서) 그리고 UNHCR 규정을 종합해 볼 때, 난민은 정치적 박해로 공포(fear of being persecuted)를 가진 자와 “국적국 또는 상주국 이외의 자”를 주요 핵심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국제적 다수설은 아직도 경제적 요인에 기초한 난민인정을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난민인정의 결정의 주체가 난민의정서의 당사자와 UN난민고등판무관의 특권에 속한다. 그러나 동 의정서 제2조의 경우 당사국은 난민고등판무관과 협조할 의무를 가지므로 난민고등판무관과 특별협정을 체결하며 이 특별협정의 규정에 따라 난민의 자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난민의정서의 당사자인 중국의 입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중국은 탈북자를 식량난 등 경제적 사유에 따른 밀입국자 또는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으며,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탈북자에 대한 난민개념이 국제법의 전통적 입장과 실제관행이 많이 변하고 있다. 당장 난민협정의 개정은 어려워도 최소한 해석론상 정치적 박해 외에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경제적 난민)도 난민으로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국제적으로 나오고 있는 추세이다.³¹⁵⁾ 더구나 난민유입형태의 변화에 따른 처리기능 확대에 대한 국제적 추세도 난민개념의 확대에 있는 만큼, 재외 탈북자의 구체적 인권침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국외체류 탈북자는 광의의 난민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 UNHCR도 실무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³¹⁶⁾ 특히, 2009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C형)항에 의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준비한 요약문을 보면 탈북자들이 경제적 이유들로 탈북한 경우라도 현장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아래와

315) M.S. Teitelbaum, “Right, Versus Right: Immigration and Refuge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Foreign Affairs*, Vol.59, 1980, p.32.

316) 이장희, “재외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31면.

같은 내용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10. 이주민, 난민, 비호신청자들”에서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HRW)는 본국 귀환 시에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심지어 단순한 경제적 이유들로 탈북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외의 모든 북한사람들은 현장난민에 해당된다고 간주했다. 아시아인권센터는 특수한 직업전문학교들에의 입학 허가 여부가 부모의 직업과 가족 배경에 따라 좌우되고, 최종적으로 관련당국이 이를 결정한다는 것이 탈북 난민아동들에 의해 확인되었음을 지적하였다”³¹⁷⁾

결국 국외체류 탈북자들이 경제난 등으로 탈출하였더라도 북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제 송환될 경우 조국반역죄 등 정치적 죄목에 의하여 가혹한 처벌과 정치적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광의의 난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난민지위 인정의 당사인 탈북자 체류 해당국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유엔인권이사회 등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인권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나. 난민협약에 의한 탈북자 강제송환 금지

중국은 생명의 위협, 고문 및 기타 학대의 위협,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말아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으로 불리는 이 의무는 1951년 난민협약(Refugee Convention)과 그에 따른 1967년 난민의정서에³¹⁸⁾ 명시되어 있으며, 중국은 1982년 이후 두 협약에 가입한 국가이다.³¹⁹⁾ 그러나 중국 당국은 탈북자들을 일괄적으로 불법적인 경제 이

31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이사회 결의 5/1의 부속서 제15(C형)항에 의거,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OHCHR)에서 준비한 요약문”, 2009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관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9, 68면.

318)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때, 한국(1992.12.3)과 중국(1982)은 난민의정서에 가입한 당사자나 북한은 동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319)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1954년 4월

주자로 분류하여 체포와 강제송환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는 난민들을 고문 및 학대가 있는 지역으로 송환하지 말아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에 전적으로 반하는 행위이다.³²⁰⁾

난민협약 제33조(난민의정서 제1조 1항)는 체약당사자가 난민을 그의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난민이 그 국가의 안보에 위협하다고 인정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이거나 또는 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그러므로 난민협약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탈북자들이 중국의 안보위험과 중대범죄를 저질은 충분한 사유 없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서는 아니 된다.³²¹⁾

결국, 탈북자들을 강제송환하고 있는 당사국들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강제송환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인권단체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과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 범인 인도협정상 강제송환 재검토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을 범인으로 볼 때, 중국은³²²⁾ 북한과 범인인도협정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로³²³⁾ 중국은 북한에 대해 범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송환협정이 비인도적인 상황에 해당할 경우 즉, 탈북자들이 생명의 위협, 고문 및 기타 학대의 위협 또는 기타

22일 발효.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1967년 10월 4일 발효.

320) 휴먼라이츠워치(HRW), 도강자(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정책, 2007.3.5, 2면.

321) 이장희, “채외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28면.

322) 중국은 북한과 1960년 초에 “밀 입국자 송환협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323) 북한은 1957년 12월 16일에 구소련과 북한 간에 “민형사문제에 있어서 호상 법적 조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다.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이 있는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은 강제 송환금지 원칙이라는 강행규범에 위반된다.³²⁴⁾ 그리고 난민에 대한 강제 송환금지원칙을 국제관습법에서 본다면 중국이 탈북자를 일괄적으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모든 국가에 대한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³²⁵⁾ 결국, 북한과 해외체류 탈북자 당사국과의 범인인도 협정에 따라 탈북자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제 송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강제송환은 반드시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검토에서와 같이 국외체류 탈북자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제법적인 근거를 면밀히 재검토한 후, 그에 따른 국제법적 논거를 보완하여 국외체류 탈북자들이 난민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국제적 여론을 조성시켜 나가야할 것이다.

2. 탈북자 관련국과의 관계 재정립

가. 중국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문제해결은 중국정부의 협조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력은 정치적 문제로 실현되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 그렇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의 유형에 따라 접근하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³²⁶⁾

첫째, 한국과 국제사회가 대북 식량지원을 통해 탈북자들이 자발적으로 귀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과거 탈북자 대부분은 식량을 찾아 중국

324) 이장희, “제외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31면.

325) 위의 글, 28면.

326) 김성구,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실상과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78-79면을 참조하여 재정리하였음.

으로 월경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질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식량난에 따른 탈북자가 여전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식량 지원체계를 갖추어 지원한다면 체류기간의 단기화와 북한으로의 자발적 귀환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³²⁷⁾

둘째, NGO를 중심으로 탈북여성들과 무국적 탈북 청소년들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문제를 국제인권 문제로 확대하여 국제법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 정부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으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생존권보장과 폭력행사를 금지하고 국제민간단체의 구호활동이 보장되도록 협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공론화해야 할 것이다.³²⁸⁾

셋째, 중국당국과 협상 가능한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탈북자들의 경제적 난민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치적 탈북자와 경제적 탈북자를 구분하여 정치적 탈북자들의 난민인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탈북자 관련단체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남북한과 중국이 중심이 되어 북중 접경지역에 경제개발 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탈북자 대다수는 경제적 빈곤층인 국경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북한주민들의 탈북사

327) 그 대안의 하나로 북한의 식량난이 극심한 시기에 국경지대의 일정장소에 한정하여 식량 지원을 한다면 중국정부의 동의를 얻기 쉬울 것이다. 물론 지원사업의 주도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한국정부의 지원을 받은 NGO가 담당하고 일의 추진과 집행은 홍십자(한국의 적십자에 해당)나 중국의 민간단체(조선족 단체)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위의 글, 78면).

328) 중국인들과 사실혼을 한 탈북여성들의 체류를 합법화할 때, 탈북여성과 그녀들이 낳은 자녀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태를 방지하기 위한 선결과제가 경제적 문제 해결에 있다. 따라서 조성된 경제적 특구를 일본과 러시아 및 몽골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경제공동체로 발전시켜 국경지역 주민들의 노동력을 이용할 경우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음은 물론 북한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 현지에 유엔의 주도하에 탈북자 임시 수용 시설을 만들어 이들의 안전과 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수용된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귀환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제단체가 인정할 때 귀환시키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관계당국과 국내 NGO가 상호 협력하여 국제기구와 국제NGO가 탈북자 임시 수용시설 개설의 당위성을 중국당국에 전달할 수 있도록 자료지원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특히, 관계당국은 국내 탈북자 관련 학회나 전문가들이 국제NGO와 함께 중국현지에서 임시수용소 시설의 당위성에 대한 심포지엄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나. 북한

북한은 1991년 9월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이며, 1981년 12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ICCPR)에 가입했다.³²⁹⁾ 때문에 북한은 주민들이 자의에 의해 북한을 떠나고 또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허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북한당국의 허가 없이 월경하였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책임을 수반한다.³³⁰⁾ 또한 1981년 9월부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협약(ICESCR)에 가입한 북한은 당국의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를 받는 수형자들에게 적합한 (양의)식량을 제공할 국제법적 의무를 지닌다. 유엔 경제

329)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CCPR), 196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 1976년 3월 23일 발효.

330) 휴먼라이츠워치(HRW), 도강자(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정책, 2면.

사회문화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 1(General Comment 1)에서 “개인 또는 집단이, 통제 불가능의 이유로 인하여, 임의의 방법을 따라 적합한 식량을 얻을 권리를 누릴 수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국가가 직접 그들의 권리를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³³¹⁾

그럼에도 탈북자 발생의 직접적인 책임자인 북한은 그들이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호하는 해결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정치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어 그들의 자발적인 귀환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와 NGO는 국제사회와 연계하여 과거 베트남과³³²⁾ 같이 자발적 귀환자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탈북자인권침해 실태 자료를 확보 추적하고 탈북자 처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북한으로부터 국제적인 약속을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탈북자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나 NGO, 국제기구가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 지원된 식량이 주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이외에 북한이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영농기법을 전수하거나 개성공단과 연변지역에 농기계 공장을 설립하여 농약, 비료, 농기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3. 국외 탈북자 체류지 지원

가. 현지인 중심의 지원 활동

331) 적합한 식량의 권리(11조), E/C.12/1999/5(1999), [http://www.unhcr.ch/tbs/doc.nsf/\(Symbol\)/3d02758c707031d58025677f003b73b9?Opendocument\(2007.2.13 검색\)](http://www.unhcr.ch/tbs/doc.nsf/(Symbol)/3d02758c707031d58025677f003b73b9?Opendocument(2007.2.13%20검색);); 휴먼라이츠워치(HRW), 도강자(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정책, 9면.

332) 1989년 제2차 인도차이나 난민국제회의가 소집되면서 베트남 난민의 본국 귀환의 당위성이 강조되었고, UNHCR의 주도로 순차적 출발계획을 대폭 수정 확대한 ‘총괄적 행동계획’이 마련되었는데,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조정에 따라 베트남으로 송환시 그들의 불법탈출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받고 UNHCR은 송환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지원을 약속했다 (김윤영,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연구, 29면).

국외체류 탈북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활동은 민간단체들과 국외동포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해당국의 감시로 인한 신변위협 속에서 제한된 대상을 두고 비공개, 비공식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가 현지인 중심의 탈북자 보호·지원활동이다. 현지인들은 중국동포, 러시아의 고려인 등 재외동포, 국내 파견 종교인이나 회사원, 유학생을 비롯한 개별 활동가 및 국제기구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합법신분을 가진 이들은 현지 언어나 문화습득은 물론 현지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의 보호·지원활동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들을 통해 탈북자를 지원하고 보호하게 되면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특히 당사국과 외교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탈북자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현지인들 역시 해당국이나 북한으로부터의 신변위협, 탈북자 관리의 어려움, 장기간 보호와 은신생활에 대한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이 뒤따를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과 현지공관은 현지인 활동가들과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현지인 활동가와 국제기구, NGO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변안전과 재원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외교문제를 고려하여 비공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현지인과 현지공관이 협조하여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재정착 시스템 지원방안³³³⁾

1) 제3국 탈북자 보호센터 설립

현재 한국정부는 국외탈북자 체류국과의 외교적 문제와 남북관계 문제, 국내 정치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이고 공개적인 지원·보호

333)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방안 연구, 145-150면 재정리.

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가칭 ‘탈북난민 보호센터’(이하 보호센터)를 탈북자 관련국의 수용시설 외에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민간단체 활동가들은 해당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반면 정보 및 예산부족 등이 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필요한 시설물을 임대한 후 민간단체에게 위탁 관리하는 방식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여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와 민간단체가 보유한 자원을 공유하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립된 보호센터는 국제기구와 외국 NGO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낸 후 민간단체로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보호센터 설립은 국외체류 탈북자 수용시설 내의 열악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해 볼 때, 빠른 시간 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제3국 탈북자 정착지 조성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제3국에 가칭 ‘한민족 마을’을 설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한민족 마을’ 건립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 그리고 외교적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과 인접한 몽골지역 내에 ‘한민족 마을’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몽골지역에 ‘한민족 마을’이 설치한다고 해도 중국과 러시아에 체류 중인 탈북자의 몽골 입국은 두 국가의 협조가 없는 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부는 외교적 협상을 통해 이들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³³⁴⁾ 이외에도 태국이나 필리핀 등 제3국은 북·중과 외교적 문제를 불식시키기 좋은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한민족 마을’이 개설될 경우를 대비해 탈북자 실태조사, 지원·보호방안 수립, 시설물 관리 계획 등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북한주민들의 대량탈북문제나

334) 董承哲, “새터민의 效率的定着支援方案에 관한 研究”, 동국대석사논문, 2005, 90면.

국외체류 탈북자가 급증할 경우를 대비하여 ‘한민족 마을’ 설립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3) 중국동포 밀집지역 지원

탈북자들을 실질적으로 보호·지원하고 있는 중국동포 밀집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경제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탈북자의 급증과 장기적인 체류로 인해 중국동포들의 생활여건이 점차 어려워지는 만큼 탈북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의지도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연변지역을 대상으로 대규모적인 투자 사업을 시행 및 장려하여 중국동포들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킴으로써, 탈북자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³³⁵⁾ 그리고 중국동포 밀집지역의 경제발전은 탈북자들의 정착을 유도하여 신변안전은 물론 생활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 자본주의 체제 동화 프로그램 지원

독일이 통일된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동서독 주민간의 많은 갈등과 반목으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주된 원인은 동독인들의 사회주의적 인성을 간과한 동화정책의 실패에 있었다. 탈북자들은 1인 독재체제 지배 하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생활하여 왔기 때문에 자유와 시장경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입국 탈북자들이 하나원에서 12주간의 사회적응 교육을 받은 후 주거지에 편입하지만 지역 환경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 밀집지역이나 제3국 탈북자 정착지, 제3국 탈북자 보호센터 등에 자본주의 체제 이해 중심의 동화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하나원이 쌓아온 체제동화 및 생활안내

335) 정주신, 탈북자문제의 인식, 한국학술정보, 2007, 187면.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탈북자에게 꼭 필요한 남한 말과 외래어 교육, 컴퓨터 사용 방법, 생활 법률, 노동시장 및 취업 관련 핵심 사항 등에 대한 프로그램을 현지에 맞게 보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해 탈북자들이 체류국 현지에서 교육을 받은 후 국내에 입국하게 된다면 사회정착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 무국적 아동의 보호

중국에 장기불법 체류하는 탈북여성들은 은신처 확보와 생계유지를 위해 현지인 남성들과 동거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을 출산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중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및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법적 지위를 보장하나, 불법 체류자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서는 법적 지위부여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탈북여성의 경우 중국체류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녀들이 출산한 자녀들은 법적 지위를 부여받을 수 없게 된다.³³⁶⁾

지난 15년간 탈북자 문제가 주요 이슈화되었다면 향후 15년은 탈북자 2세 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³³⁷⁾ 무국적 아동의 신분과 생존권 보장,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심리 및 정서안정 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한시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중국인과 사실혼을 맺고 있는 탈북 여성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국적 아동들의 교육 및 의료 수혜를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중국의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정부차원에서 호구를 부여한다고는³³⁸⁾

336) 곽대중,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05년 6월 24일;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9, 347면.

337) 양정아, “무국적 탈북 2세…국제사회 도움 절실”, 데일리 NK, 2007.4.27.

338) 국제교육증진 기금의 창립자인 케이트 조우 미 하와이대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2008.9.3)에서 “중국 라오닝성 환런(桓仁) 지방정부가 2007년 말 2명의 탈북여성에게 임시 영주권을 발급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탈북여성들의 합법적 체류를 허용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지방정부를 설득하여 성사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

하나,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관련자료(병원발급 증명서 등) 마련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궁핍한 가정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³³⁹⁾

둘째, 국외체류 무국적 탈북아동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무국적 아동들을 지원·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중국 당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엔 차원의 지원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사회 및 구호단체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셋째, 탈북여성들의 문제는 곧 바로 무국적 아동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에 불법체류 중인 탈북자 중 상당수가 인신매매된 여성들로³⁴⁰⁾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무국적 아동으로 남는다. 따라서 탈북여성과 중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무국적 아동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탈북여성들의 인권문제와 인신매매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NGO와 연계하여 중국내 인신매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³⁴¹⁾

다(자유아시아방송, 2008.9.3).

339) 탈북자 000, 2007년 4월 6일 면접 결과,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9, 347면 재인용; 최근 중국 정부가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통해 낳은 자녀의 경우 수수료 500위안만 내면 호적을 만들어준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은 5,000위안 정도의 뇌물을 파출소(공안국)에 내야만이 아이의 호적 취득이 가능했다. 그것도 파출소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탈북자로 들통 날 경우 벌금 및 처벌을 감수해야 했다(양정아, “무국적 탈북 2세...국제사회 도움 절실”).

340) 김영권, “중국, 최근 탈북자 단속 강화”, 미국의소리방송, 2009.6.10.

341)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10년 12월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을 채택했다. 아동법은 아동에 대한 인격 존중, 가정체벌 금지, 상속권 보장, 유괴·매매 금지, 노동 금지, 형사처벌·사형 금지 등 아동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 “리혼(이혼)은 아동의 불행으로 된다. 부모는 아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리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동법 제54조)고 명시하고 있다. 여성법은 남녀평등의 대전제 하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여성간부 등용, 노동의 권리, 가정 내 폭행 금지, 유괴·매매 금지 등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아동법 및 여성법 채택은 광범위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4. 국제적 지위 보장을 위한 협력

가. UN기구와의 협력³⁴²⁾

현재 중국체류 탈북자들은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 생활하면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다.³⁴³⁾ 이들의 인권문제는 몇몇 해당국가의 차원을 넘어 인권의 국제적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유엔인권위원회 등 국제연합의 공식기구가 적극 나서야 할 문제이다.

유엔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규약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다. 때문에 유엔인권위원회는 탈북자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도 ‘1503절차’³⁴⁴⁾를 통해 비공식적인 조사를 하거나, ‘1235절차’³⁴⁵⁾를 가동하여 공개 조사할 수 있다. 유엔인권기구가 탈북자와 관련하여 결의한 사항으로는 2002년 제54차 인권소위원회의 결의 내용 중 ‘피난처를 찾는 자’에 대한 배려, 난민 개념의 확대 시도, ‘난민강제송환금지원칙’³⁴⁶⁾ 등이 있다. 국제관례상 모든 국가는 난민관련조약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동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2003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공식의 제로 포함하면서, ‘북한 시민이 다른 나라로 떠난 것을 구금형, 비인도적 대우, 사형으로 처벌하는 배반행위로 취급하지 말 것’을 규정하는 등 탈북자 인권문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2007년 11월 21일 미국

342) 김윤영·조용관,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288-290면.

343) 특히 탈북여성들은 인신매매나 성 매매 등의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344) 1970년 5월 27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는 대규모의 극심한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청원내용을 심의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이다.

345) 1967년 6월 6일 경제사회이사회 결의로 중대한 인권침해시 피해자의 청원이나 고발이 없더라도 인권위원회가 개입할 수 있는 절차이다.

346) 중국은 1982년 9월 24일, 러시아는 1993년 2월 2일에 각각 난민협약과 의정서에 가입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97표, 반대 23표, 기권 60표라는 압도적 다수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가 채택되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 발의한 동 결의는 고문과 공개 처형,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수용소의 강제노역 등 북한 전역에 만연되고 있는 인권 침해 사례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그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2004년 임명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각종 비정부기구(NGO)들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³⁴⁷⁾ 특히 최근 들어 유엔에서의 북한인권결의(안)표결 결과를 보면 북한의 입장을 지지(결의안에 반대)하는 국가 수는 감소하는 반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국가(결의안 찬성)의 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 6-2〉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결과

연도	결의주체	찬성	반대	기권	한국투표
2003.4.	인권위원회	28	10	14	불참
2004.4.	인권위원회	29	8	15	기권
2005.4.	인권위원회	20	9	14	기권
2005.11.17	제60차 총회 제3위원회	84	22	62	기권
2005.12.16	제60차 총회 본회의	88(+4)	21(-1)	60(-2)	기권
2006.11.17	제61차 총회 제3위원회	91(+7)	21(-1)	60(-2)	첫 찬성
2006.12.19	제61차 총회 본회의	99(+8)	21	56(-4)	첫 찬성
2007.11.20	제62차 총회 제3위원회	97(+6)	21	60	기권
2007.12.18	제62차 총회 본회의	101(+4)	21	59(-1)	기권
2008.11.18	제63차 총회 제3위원회	100(+3)	18(-3)	60	찬성
2008.12.18	제63차 총회 본회의	찬성94(-6)	22(+4)	63(+3)	찬성
2009.11.19	제64차 총회 제3위원회	97(-3)	19(+1)	65(+5)	찬성
2009.12.18	제64차 총회 본회의	99(+2)	20(+1)	63(-2)	찬성
2010.11.18	제65차 총회 제3위원회	103(+6)	18(-1)	60(-5)	찬성
2010.12.21	제65차 총회 본회의	106(+3)	21(+3)	55(-5)	찬성

* 출처 :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조사연구팀 종합(2010년 말 현재)

347)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50개국과 제63차 유엔 총회에서 한국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여 2008년 10월 30일 유엔 사무국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나. UNHCR의 지원활동³⁴⁸⁾

국의 체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활동이 필요하다. 현재 UNHCR은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 등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지원활동을 펴고 있으나 정치외교적인 문제로 적극적인 개입을 꺼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탈북자의 인권침해 사례와 강제송환시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실증적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들과 공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UNHCR 서울사무소에 신속한 접촉과 협조를 통해 탈북자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³⁴⁹⁾

다. 국제 NGO의 지원³⁵⁰⁾

비정부 기구(NGO)의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탈북자를 지원하는 소수의 NGO와 개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나, 한국 민간단체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교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³⁵¹⁾ 중국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는 민간봉사자들을 통해 탈북자에게 쉴 곳을 제공해주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재정지원, 중간 연락책 알선, 지리정보 및 탈출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체류 탈북자들이 대외공관에 잠입하는 등의 집단행동이 잇따라 발생한 뒤 중국 측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NGO들의 공개적 활동

348)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90면.

349) 김동선, 하나님의 선교,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128면.

350) 김윤영·조용관,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290-291면.

351) 국내단체로는 (사)좋은 벗들, (사)북한인권시민연합, (사)북한이탈주민 산하 북한이탈주민 보호운동본부, 북한인권시민연합,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생명줄 운동, 두리하나 선교회, 피랍·북한이탈주민인권연대 등이 북한이탈주민의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국외단체로는 일본의 북한민중구조 긴급행동네트워크, 북조선귀순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북한난민구원기금 등이,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 세계난민과 인권재단, 자비재단(Mercy Corp) 등이, 벨기에의 국경없는 의사회 등이 있다. 그리고 개인활동으로는 독일의사 플러켄이 있다.

이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국내 NGO 단체들은 국외체류중인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NGO가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지역 난민협정 체결³⁵²⁾

국제적인 난민협정으로는 ‘제네바 난민 협약’과 ‘난민의정서’가 있으나,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해 나갈 지역적 차원의 국제기구의 설립이 요구된다. 과거 베트남 난민문제를 해결한 포괄적인 행동계획 ‘CPA’³⁵³⁾ 베트남 인접 국가들이 유엔과 서방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활동한 바 있으나, 동북아 지역의 난민문제를 다룰 다국적인 난민기구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탈북자들의 난민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물론, 몽골,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방글라데시, 인도,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형식의 지역난민 협정이 필요하다.³⁵⁴⁾

5. 국제사회 네트워크 구축

인권은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적 권리이다. 남북관계의 현 국면을 헤아려볼 때 남북관계만을 통하여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따른다. 중국과 북한 역시 탈북자에 대한 입장은 ‘강제송환’ 및 ‘차별대상자’라는 인식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 결국,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해결 문제는 남북한을 넘어 국제사회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역량 결집을 위해 국제적 연대와

352)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91면.

353) CPA(Comprehensive Plan Action)은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홍콩 등 베트남 인접국들이 UN과 서방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베트남 난민들이 서방으로 망명하거나 베트남으로 다시 귀국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수용·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354) 장동수, “남북한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83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첫째, 우리정부는 탈북자 실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국, 독일 등 개별국가 의회와 정부당국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강제송환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유럽연합 회원국가 등 개별국가에서 여론 형성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탈북자들의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내 NGO를 중심으로 국제인권 NGO와의 연대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은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총회 결의안, 미국과 일본의 북한인권법 제정 등에 대해 거부전략을 취해 왔지만, 북한은 1995년 4월말에 개최된 ‘평양축전’ 기간 동안 국제인권 NGO인 국제사면위원회(AI)를 초청하여 강제수용소 실태와 일본 국적 강제북송 교포에 대해 해명했던 사례를 보았듯이³⁵⁵⁾ 국제인권 NGO와 협력하여 공동 행사개최나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론화할 경우 탈북자 인권개선의 여건 조성에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셋째, 유엔 인권기구를 활용하여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공론화하는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³⁵⁶⁾ 즉, 정부는 북한인권 활동을 수행하

355) AI의 1995년 보고서(“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Visits North Korea, Discusses Legal Reforms and Prisoner Cases”, 1995.5.11)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현재 3개의 강제수용소에 반국가행위자 240명을 포함, 약 8백~1천여 명의 양심수를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995년 12월, 1960년대 초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북송교포 중 일본국적의 시바타 고조(한국명 김호남)씨가 1967년 간첩죄로 투옥되어 복역하던 중 1974년 10월 탈옥한 후 군함정을 납치해 해외탈출을 시도하다 북한군의 공격을 받고 함정이 폭파되면서 부인과 자녀 3명과 함께 사망했다고 답변하였다. AI는 1995년 4월말에 개최된 ‘평양축전’ 기간 동안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인권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1996년 9월 탈북자에 대한 특별보고서, 1997년 1월 공개처형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인권침해 당사자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북한당국의 협조 하에 북한을 방문하여 피해당사자에 대한 면담을 실시했다(김병로, “기존 북한 인권실태 조사 방법의 경향과 문제점”, 북한인권 실태조사 관련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2008.9.26. 7면).

356) 현재 특정 인권 NGO가 중심이 되어 유엔을 대상으로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제고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고 있는 NGO와 협력하여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결의안 채택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및 유엔 주제별 특별보고관 등의 활동에 적극참여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

제7장 결론

지금까지 탈북자들의 탈북 요인과 경로, 탈북 유형, 중국의 탈북자 정책 및 강제송환 현황, 북한의 탈북자 정책 및 구금시설,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태를 분석한 후, 이들의 인권보호 개선 방안으로 범국민적 합의기반 조성, 국내 및 국제법과 신변보호시스템의 재검토, 탈북자 관련국과의 관계 재정립, 국외체류 탈북자 체류지 지원, 탈북자들의 국제적 지위보장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이글이 경찰과 관련된 보고서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탈북자 신변보호 시스템 재검토와 관련하여 위장탈북 검증체계 강화, 신변위해 요인차단, ‘탈북자 인권침해 기록 보존소’ 신설, 탈북자 인권보호 활동의 과학화 등에 대해서는 보다 미시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방안들은 탈북자 관련 국가와 국제기구, 탈북자 관련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는 물론 국민들이 함께할 때 실현 가능성은 그 만큼 높아질 수 있다.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는 개인적으로는 탈북자 개인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그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 우리사회가 국외체류 탈북자와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된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 증가로 값 비싼 대가를 치르고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상실할 수 있다. 독일은 통일한 지 2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동서독 주민간의 문화적, 경제적 갈등을 비롯한 수많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은 상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향후 예상되는 통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탈북자를 통해 북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남북한 양 체제를 다 경험한 탈북자들은 향후 통일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혼란을 예방하는 중요한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국외 체류 탈북자의 국내입국 성공 여부는 우리의 통일 역량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북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그동안 탈북자의 국내입국 뿐만 아니라 사회정착 정책에 많은 지원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수만 명의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되어 인간이하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통일시대의 소중한 통일역군인 탈북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되어 가거나 죽어가고 있다. 통일자원인 탈북자들의 상실은 통일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국외체류 탈북자들이 국제사회나 해당국가의 도움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때 북한민주화 투쟁의 지원세력이 되어 남북통일의 매개자가 될 수 있다. 또한 국외체류 탈북자들의 일시적 대량 입국사태를 방지하여 그에 필요한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 비용을 통일비용으로 전환하여 통일을 앞당기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국외체류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의 안보와 직결될 수 있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결국,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국내적 차원을 넘어 국제적 차원의 문제로 국제사회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국외체류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해결해야할 몇 가지 정책적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지속적인 협력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북한은 중국과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오랜 외교관계를 통하여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고,³⁵⁷⁾ 최근

357) 2008년 10월 베트남公安장관(공산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 북한을 방문하여 주상성 인민보안상(경찰청장에 해당)을 만나 회담을 가지고, 탈북자 관련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있다(테일리 NK, 2008.10.8).

이들 국가에 탈북자 문제와 관련한 의지를 전달한 바 있다. 한국정부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 중국이나 동남아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적 외교관계를³⁵⁸⁾ 맺고 있다. 정부와 탈북자 체류 관련 국가들의 관계개선이야말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을 막을 수 있다.

둘째, 탈북자 관련 국내외 NGO 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 잠입하여 탈북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지원뿐만 아니라 탈북자들의 인권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제공하여 여론화하고 있다.³⁵⁹⁾ 이들과의 협력은 탈북자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운데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국제사회로 이슈화할 수 있다. 따라서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는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사면위원회 등 국제사회를 통한 여론 조성은 물론 주변 국가들의 관심과 협조를 유도해 나가야할 때 가능하다는 거시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³⁶⁰⁾

셋째, 북한의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는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 해결이 선행될 때 가능하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세계에 현존하는 가장 잔혹한 인권침해사태의 하나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자 인권유린이 난무하는 1인 독재 체제이다.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적, 외교적, 도덕적, 경제적 제재 등 다양한 압력을 통해 북한체제를 개방화로 이끌어 낼 때,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인권보호도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문제는 국제사회를 통한 다

358) 한국정부는 1997년 '아세안+3'의 참여하여 2009년 3월 대 아시아안 관계 강화를 중심으로 한 '신아시아 외교' 구상과 5월 31일 한-아시아 정상회담 등 동남아 국가들과 긴밀한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59) 이동운, "동남아의 북한 인권정책", 동아시아 인권 레짐과 북한 인권(제6차 북한인권 심포지움), 국가인권위원회·KAIS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10.14, 132-133면 참조.

360) 민간단체들이 탈북자 인권문제와 관련한 활동으로는 정보수집, 여론조성, 정책연구 및 조사, 로비활동, 직접적 구호활동, 국제 캠페인 등이 있다.

차원적인 접근방안이 필요하다. 즉,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은 국제사회의 논의와 지지가 증대되고, 국제기구나 국제 및 국내 민간단체(NGO)들의 협력과 지지를 이끌어 낼 때 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탈북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탈북자들은 배고픔과 정치적 탄압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후 제3국에서 낯선 환경과 언어소통의 부재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국내입국 후에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고착화된 생활습관이나 투박한 말투, 일부 탈북자들의 서방국가(영국, 미국 등)로 재망명 및 위장탈북간첩, 국민들의 북한체제와 탈북자의 동일시 경향, 탈북자 범죄 등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가 사회적 냉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탈북자 사회정착 과정의 걸림돌인 부정적 이미지 불식과 함께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도록 해야 한다. 즉, 탈북자들의 통일과정에서의 역할이나 미담과 성공 사례 등에 대한 정책홍보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도록 해야 한다. 물론, 탈북자 스스로 자활·자립하는 노력과 함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다섯째, 탈북자들의 인권실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조사와 자료수집이 필요하다. 현재 중국, 러시아, 몽골,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 체류하는 재외탈북자의 현황은 물론 탈북자들의 인권 및 생활실태나 법적 지위 문제 등에서 정부와 민간단체 및 탈북자 관련국가와 커다란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나 NGO, 국제사회는 탈북자들의 현황과 인권 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 및 분석 작업에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탈북자의 수기·경험에 의존하던 방식을 넘어서 동영상, 위성자료 등 동원 가능한 다각적 정보매체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에 공론화할 때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섯째, 정부당국은 인권침해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북한당

국에 제시하여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 국제사면위원회(AI)는 북한 내 인권침해 대상자(북송교포, 정치범 수용자, 탈북자)에 대한 이름과 신원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북한당국에 제시하고, 북한당국의 협조 하에 북한을 방문하여 피해당사자에 대한 면담과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등 의문사항에 대한 해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중국체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면서, 북한 역시 탈북자 발생의 당사자로서 이들의 인권문제에 자유로울 수 없다.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실질적인 인권개선을 가져오려면 북한당국과 접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당국은 우선적으로 중국체류 탈북자 인권문제를 북한 ‘조선인권연구협회’에 제기하여 협력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후 점진적으로 책임 있는 당사자를 면담하고 조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강제송환 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의 한계로 언론매체나 선행연구 자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미시적인 분석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남북한 교류나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정부당국이 다양한 정보채널을 동원한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침해 실태 자료 확보와 공개로 강제송환 탈북자들의 인권개선 방안에 대한 각론적 차원의 선진화된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오늘도 북한 동포들은 생존과 인간적인 삶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시도한 후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넘어 국내 입국을 꿈꾸고 있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 강석승, 경찰의 북한지역 체류내국인 신변보호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과제, 2010.
- 경찰청,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II), 경찰청, 2004.
- 고상두 외, 북한의 대량탈북난민 발생시 서울시의 역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 고유환 외,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선인, 2006.
-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RP)에 대한 북한의 국가인권보고서 및 관련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09.
- 국제평화전략연구원,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5.
- 김동선, 하나님의 선교,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김성철, 주체사상의 이념적 변화, 민족통일연구원, 1993.
- 김수암 외, 북한인권백서 2007, 통일연구원, 2007.
- 김용기, 북한실상 종합자료집, 내외통신사, 1996.
-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0.
- 김윤영,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치안대책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8.
- 김윤영,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9.
-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연구보고서, 2007.
- 김윤영,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8.
- 김윤영, 외국인밀집지역 범죄실상 및 치안확보 방안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7.
- 김윤영,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9.

- 김윤영·조용관,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도서출판 한울, 2009.7.
- 대한민국정부,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법무부, 2007.
- 대한변호사협회, 2006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6.
-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8.
- 동국대학교 북한일상생활연구센터,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2009 북한인권실태조사 용역과제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5.
- 동아시아 인권 레짐과 북한 인권(제6차 북한인권 심포지엄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KAIS 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 민족통일연구원,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1996~1997,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박순성 외, 탈북여성의 탈북 및 정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박영자외, 재중탈북자 인권관련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3.
- 박중철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박중철·허문영·김보근,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너스, 통일연구원, 2008.
- 박호성 외,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5.
-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2009 북한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 백영옥, 북한이탈주민 대책 연구, 세종연구소, 1998.
- 북한대학원대학, 북한주민 인권실태, 국가인권위원회, 2008.
- 북한인권연구센터,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제2호, 통일연구원, 2011.
-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정보센터, 2009
-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2009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인권 실태조사 용역과제), 국가인권위원회, 2009.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용어사전, 사회과학출판사, 1970.
- 송창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조사(통일부 용역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12.
- 오경섭 외, 2006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6.
- 오윤경 외, 21세기 국제법 질서, 박영사, 2001.

-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안보연구원, 2005.
-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안보연구원, 2005.
-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용실태연구, 통일연구원, 2003.
-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9, 통일연구원, 2009.
-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실태: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5.
- 이우영 외,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 이원웅 외, 북한인권 관련 국가, 국제기구 및 INGO의 동향분석, 국가인권위원회, 2007.
- 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6.
- 정주신, 탈북자문제의 인식, 한국학술정보, 2007.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정일선집 13,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조선로동당출판사, 대중정치용어사전, 조선로동당출판사, 1959.
- 조선말대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조용관김병로, 북한 한걸음 다가서기, 예수전도단, 2007.
- 조정아 외,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통일연구원, 2008.
- 좋은벗들 편,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좋은벗들 엮음, 1999.8.30.
- 좋은벗들, 2006-2007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 좋은벗들, 2007.11.
- 좋은벗들,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정토출판사, 1999.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114호, 2008.3.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66호, 2009. 2. 17.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67호, 2009. 2. 24.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94호, 2009. 9. 1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297호, 2009. 9. 22.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312호, 2009. 12. 8.
- 최규엽,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움(국가인권위원회, 2004.12.1).
- 최재천(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재외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6년 10월 25일.
- 통일부, 20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통일부, 2010.
- 통일부, 2010년도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 하나센터 업무 매뉴얼, 통일부, 2010.
- 통일부, 20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 실무편람, 통일부, 2011.1.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도우미 활동 표준 매뉴얼, 통일부, 2009.
-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제2권 1호), 통일연구원, 2007.

- 평화문제연구소, 독일통일 바로알기, 평화문제연구소, 2009.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리뷰, 2009년 10월호, 한국개발연구원(KDI), 2009.10.31.
 허영, 韓國憲法論, 박영사 1995.
 휴먼라이츠워치(HRW), 북한 도강자(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정책, 휴먼라이츠워치 인터넷 리뷰, 2007. 3. 5

2. 논문

- “서방식은 망국 자기식이 제일”, 친리마 9호, 친리마사, 2000.
 고유환, “권두언: 분단정권 수립 60년을 되새기며”,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8.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제2차 북한 인권포럼), 국가인권위원회, 2008.6.25.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법(안) 주요 내용과 과제”(제3차 북한인권 포럼), 국가인권위원회, 2008.9.18.
 김구섭, “북한대량난민 발생가능성과 동화정책방향”, 합참제5권, 1995.1.
 김동환, “北韓의人權과法”, 北韓法研究제8호, 北韓法 硏究會, 2005.
 김문수, “탈북에서 입국까지”(탈북자입국지원 법률개정 자료집), 2004.
 김병로, “북한으로부터의 대량난민문제에 대한 대책”, 한일저널제 31권, 1997.6.
 김성구,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실상과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학위논문, 2008.
 김성순, “난민의 대량적 유출사태에 대한 배경과 그 대응방안고찰”, 인도법논총제 19권, 1999.4.
 김수암,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북한의 인식 및 대응연구”, 북한실태(사회)V, 통일부, 2001.
 김수암, “해외탈북자 인권 현황과 수용대책”,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탈북자의 역할, 북한 민주화위원회 제1회 정책 세미나 자료집, 2008.2.15.
 김수암,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전략”,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반도 프로세스의 비전과 전략(심포지엄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010. 11. 18.
 김영자,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인권실태와 정책제언”(북한인권시민연합편, 제2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자료집, 북한인권시민연합, 2000).
 김윤영,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치안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치안정책연구소, 2010.

-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교정담론제3권 1호, 아시아교정포럼, 2009.
- 김인희,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탈북자의 인권토론회자료집, 대한변호사협회, 2002.12.2).
- 김일성, “미국《워싱턴타임즈》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김일성저작집 제 44권, 1996.
-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 김진환, “국제법상 탈북자의 인권보호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태천, “북한이탈주민의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법학논고제 14권, 1998.
- 董承哲, “새터민의 效率의定着支援方案에 관한 研究”, 동국대석사논문, 2005.
- 마커스 놀랜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경험한 억압과 처벌”, 북한경제리뷰, 2009년 10월 호, 한국개발연구원(KDI), 2009.10.31.
- 박기륜,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7.
- 박상봉, “중국내 탈북자 현황, 정책 및 전망”, 새로운 차원에서 접어든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 박순영, “중국체류 탈북어린이와 청소년 성장발육 상태와 그 기능적 함의”, NGO세계대회 자료집, 1999.
- 박영호 외, 2010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10. 8.
- 박은주, “최근 탈북자의 국내외 망명동향과 정책적 대안”,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6.
- 백충현, “2003년 북한인권의 채택의 의의와 우리의 과제”, 북한인권시민연합주최(제22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 기조연설), 2003.5.26.
- 북한자유이주민, 동남아시아 난민 의 국제사회역할, 제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총회 자료집, 대한민국국회, 2008.10.24~26.
- 신영호, “대량탈북사태와 사법적 대응”, 법제연구제 12호, 1997.
- 신창대, “대량탈북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대비방향”, 중앙대석사학위논문, 2005.
- 안재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일탈 실태와 관리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석사논문, 2005.

- 양수려, “재외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양운철, “출장보고소(요약)”, 세종연구소, 2009.3.2.
- 양첵밍(Yang Chengming), “중국의 탈북자문제와 해결책”(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2004.12.1).
- 오준교, “탈북자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민족통합을 향한 거시적 접근”, 고려대석사학위논문, 1998.
- 우 정, “탈북여성과 중국 남성의 동거(복혼)의 실재와 시사점”, 북한, 2009년 5월호, 북한연구소, 2009.
- 유동열, “위장탈북 실태와 대책”, 북한, 2010년 10월호(통권 466호), 북한연구소, 2010.
- 유지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5.
- 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실태와 지원체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제7권 제2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윤여상, “캐러리아 탈북자 실태와 지원방안”(제1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발표 자료, 1999.12.1-3, <http://cafe.daum.net/Nambuktongil/qhI/302>; 2009년 10월 3일 검색).
- 윤여상,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전망과 해결방안 모색”, 2003.10.8(<http://cafe.daum.net/NKPolitics/FiAl/80>, 2009.9.30 검색).
- 윤여상,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실태 조사 보고서”, 생명과 인권'98 겨울 No.10, 1998.
- 윤여상, “해외 탈북자 실태와 대책”, 北韓, 2008년 5월호, 북한연구소, 2008.
- 윤여상, “해외 탈북자 실태와 대책”, 北韓, 2008년 5월호, 북한연구소, 2008.
- 윤 우, “국제적 인권지도와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2011.
- 윤인진, “탈북자의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거버넌스 패러다임”(경인발전연구원 공동정책 심포지엄 기로에 선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주무부처 조정, 지자체·민간이양 가능한가?, (사)북한인권시민연합·(사)경인발전연구원, 2007.12.10).
- 이관형, “탈북에 대한 북한의 시각과 대응연구”, 북한대학원대학교, 2008.6.
- 이광수, “재외 탈북자의 국내법적 지위”(재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 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자료집), 2008.9.18.
- 이금순, “관련국의 탈북자정책: 변화와 전망”, 평화연구제28집, 경북대학교 평화문제 연구소 2003.12.

- 이기영, “대량 탈북사태에 대한 국내정착지원 대책방안”(북한 난민 대량발생사태의 대응 방안: NGO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23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 자료집, 2003.12.5).
- 이신화 외, 북한 난민 대량발생사태의 대응방안: NGO의 활동을 중심으로(제23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 자료집, 2003. 12. 5,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 이신화, “재외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현황 과제”(국회탈북자 공청회 발표논문), 2002.9
- 이영환, “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실태와 인권”, 국내외 탈북자 실태변화와 금후 과제, (사)북한전략센터, 2009.6.5.
- 이재은, “강제송환은 죽음의 고통의 시작”, 자유공론, 2008년 12월호 한국자유총연맹, 2008.
- 이장희, “재외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재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자료집), 2008.9.18.
- 이정우, “대량난민 발생 가능성과 한국측 대응방안”, 平和研究, 경희대 국제평화연구소, 1997.
- 이정우, “북한의 대량난민 발생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통일로제107권, 1997.7.
- 임연선, “위기에 처한 탈북민보호 구출과 그 의의”(탈북난민보호UN청원 1,180만명서명 전달 4주년기념 세미나 자료집 탈북난민보호·구출의 현주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2005.5.17).
- 임채완, “중국 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한국동북아논총제 19집, 한국동북아학회, 2001.
- 장 용, “대량탈북사태의 전략적 대응방안”, 자유, 제374권, 성우회, 2004.
- 장복희, “무국적 탈북자의 법적 지위”: 재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자료집), 2008.9.18.
- 정옥임, “해외 체류 북한자유이주민 현황과 대책”(북한자유이주민, 동남아시아 난민 의 국제사회역할, 제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대한민국국회), 2008.10.24~26.
- 제성호, “대량탈북자발생시 공법적 대응”, 법제연구 제12권, 1997.6.
- 제성호, “북한 난민 대량발생사태의 대응방안: NGO의 활동을 중심으로”(제23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2003.12.
- 조명철, “북한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7-3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7.23.
- 최덕성, “통일보다 더 시급할 일”(http://blog.daum.net/gajach, 2007년 5월 7일 검색).

- 최성철, “인권선언의 역사와 인권의 내용”, 북한인권의 이해,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1995.
- 최재천, 재외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6.10.25.
- 학습제강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 한영진, “北 국경강화, 中 올림픽 대비 탈북자 3만명 체포 돌입”, 북한 2008년 3월호, 북한연구소, 2003.
- John Grogan 영국 의원, “유럽지역 탈북자 난민 현황”(북한자유이주민, 동남아시아 난민의 국제사회역할, 제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대한민국국회, 2008.10.24~26).

3. 언론매체

- 김영식, “北주민 9명 서해로 귀순… 형제가 가족 데리고 탈출”, 동아일보, 2011.6.16.
- “김정은 “탈북자 사살해도 좋다” 명령에… 北, 중국땅 밟은 5명 추격해 사살”, 조선일보, 2011.1.11.
- “러시아 체류 탈북자 유엔 난민 지위 신청 중 실종”, 미국의 소리, 2007년 11월 6일자.
- “미국 정착 1호 탈북자는 죽음으로 뭉 알리려 했나”, 조선일보, 2010년 4월 17일.
- “반북단체 이번엔 ‘라디오 매단 풍선’ 살포”, 경향신문, 2009년 10월 8일자.
- “반북단체 이번엔 ‘라디오 매단 풍선’ 살포”, 경향신문, 2009년 10월 8일자.
- “北 인터넷 공세 강화”, KBS 뉴스(<http://news.kbs.co.kr>), 2010년 5월 1일자.
- “北 정치범만 20만명…고문 강제노역 공개처형”, 국민일보, 2011. 5. 4.
- “北신문 북한인권법 통과, 대가 치를 것”, CBS 뉴스, 2010년 2월 21일자.
- “북한 공개재판 판결문”, 데일리 NK(<http://www.dailynk.com>), 2005년 3월 18일자.
- “북한 인민보안부, ‘타격대’ 를 통한 주민통제 강화”, NK지식인연, 2011. 11. 8.
- “북한 인민보안부, ‘타격대’ 를 통한 탈북자 가족 감시”, 열린방송, 2010, 8. 16.
-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규모, 10년 전보다 커져”, 조선일보, 2011. 5. 5
- “北韓인권단체, 탈북자 보호=남북통일!”, 올인코리아, 2008년 1월 20일자.
- “北韓인권단체, 탈북자 보호=남북통일!”, 올인코리아, 2008년 1월 20일자.
- “새터민 정착촌 건립 추진 철원 민북마을 5개리 최적지”, 조선일보, 2007년 4월 15일자.
- “12세 탈북소녀 남녘땅 첫 한가위 가슴 설레요”, 조선일보, 2009년 10월 1일자.

- “양정아, “[中 탈북여성 현지르포 ③] 무국적 탈북 2세…국제사회 도움 절실”, 데일리NK, 2007년 4월 27일자.
- “엔지 공안국에 10여명 상주…전화연락망 추적”, 자유아시아방송(RFA), 2010년 3월 13일자.
- “위장탈북 심사 강화 합동심문기간 확대”, 연합뉴스, 2010년 4월 21일자.
- “인터뷰 하나원서 10년 근무 전정희 간호사”, 연합뉴스, 2009년 7월 8일자.
- “일본 거주 탈북자 63% 무직, 무직자의 52%는 무국적 상태”, 연합뉴스, 2006년 10월 27일자.
- “中 ‘모르쇠’에 속수무책…정치권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동아일보, 2009년 10월 23일자.
- “중국, 최근 탈북자 단속 강화”, 미국의 소리방송, 2009년 6월 10일자.
- “참다운 인권을 옹호하여”,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자.
- “캐나다, 작년 탈북자 66명 난민인정”, 연합뉴스 2010년 1월 31일자.
- “캐나다의 탈북자 난민 인정 점증”, 자유아시아방송, 2009년 2월 13일자.
- “탈북 주민 건강상태 열악”, 연합뉴스, 2007년 9월 28일자.
- “탈북자 2008-2009 회계연도에 총25명 미국입국”, 미국의소리방송, 2009년 10월 1일자.
- “탈북자 5명 벨기에서 난민으로 거주”, 자유아시아방송, 2006년 1월 6일자.
- “탈북자 72명, 지난 해 노르웨이에 망명 신청”, 미국의소리방송, 2008년 3월 16일자.
- “탈북자 보험사기의 실체”, 중앙일보, 2010년 3월 25일자.
- “탈북자 입국, 주변관련국 현황과 실태”, 연합뉴스, 2004년 7월 27일.
- “탈북자 합동심문 기간 연장될 듯”, 한겨레 21 제780호, 2009년 10월 9일자.
- “탈북자, 北수용소서 생체실험 당해”, 동아일보, 2009년 11월 5일자.
- “태국 입국 탈북자 최근 두달새 3배 증가”, 연합뉴스, 2009년 1월 3일자.
- “UNHER: ‘재정착 난민’ 입국자 포함, 2004년 현재 서유럽 5개국에 320명 북한난민 거주”, 자유아시아방송, 2006년 3월 8일자.
- 권경복, “중국 체류 탈북자 얼마나 되나”, 연합뉴스, 2001년 6월 26일자.
- 김 당, “탈북자 수용시설, 미얀마는 ‘모텔급’ 몽골은 ‘수용소’”, 오마이뉴스, 2006년 10월 26일자.
- 김남균, “북한 탈북자들 절대 용납안해”, 독립신문(<http://www.independent.co.kr>), 2010년 3월 26일자.
- 김상우, “탈북자 올림픽 후 급증…태국 입국 매달 80명”, YTN뉴스, 2009년 2월 4일자.
- 김소열, “자식 키워본 사람은 탈북고아 외면하지 말아야”, 데일리NK, 2008년 9월 5일자.

- 김소열, “태국, 탈북자 정책 강경으로 선회하나?”, 데일리안, 2009년 2월 15일자.
- 김영권, “중국, 최근 탈북자 단속 강화”, 미국의 소리방송, 2009년 6월 10일자.
- 김영식, “탈북박사 조명철 코리아안 드림”. 동아일보, 2011. 6. 8
- 김영식·조수진, “국군포로 가족체로 파문”, 동아일보, 2009년 10월 23일자.
- 김필재, “태국 밀입국 탈북자, 3년새 10배 증가”, 프리존 뉴스 (<http://www.freezonenews.com>, 검색일: 2008. 3. 27).
- 데일리 NK. 2006년 4월 15일자.
- 동아일보, 2007년 7월 31일자; 2009년 10월 23일자.
- 로동신문, 1995년 6월 24일자; 2001년 3월 2일자; 2001년 3월 16일자.
- 미국의 소리방송, 2008년 3월 26일자.
- 백나리, “김정은 재작년부터 국가안전부위부장 맡아”, 연합뉴스, 2011. 4. 2.
- 서은옥, “북한 인권법 탈북민 보호 항목 삭제된 채 수년째 방치 중”, 미래한국 2009.10.28-11.10(355호), 미래한국미디어, 2009.
- 세계일보, 1999년 11월 21일자; 1999년 11월 21일자.
- 안용현, “反김정일 세력 차단 … 탈북자 소탕 명령”, 조선일보, 2010년 4년 22일자.
- 양정아, “무국적 탈북 2세…국제사회 도움 절실”, 데일리 NK, 2007년 4월 27일자.
- 연국희, “해외 체류 탈북자, 과연 얼마나 되나”, 동아일보, 2004년 9월 3일자.
- 연합뉴스, 2007년 6월 16일자; 2007년 4월 27일자; 2002년 3월 14일자. 2005년 8월 21일; 2008년 9월 20일자; 2008년 9월 26일자.
- 영국 정부 ‘지난 해 영국 망명 탈북자 4백15명’, 미국의 소리방송, 2008년 3월 17일자.
- 유관희, “北, 탈북자 체포 위해 보위부 요원 중국 파견”, 데일리NK(www.dailynk.com), 2010년 3월 14일자.
- 이장훈, “난민고등판무관, 中 탈북자 북송 비판”, 올인코리아, 2006년 3월 28일자.
- 자유아시아방송, 2006년 3월 8일자; 2008년 9월 3일자.
- 장용훈, “제성호대사 탈북자 정착촌 필요”, 연합뉴스, 2009년 4월 30일자.
- 정락인 기자, “탈북자 2백여명 북한으로 다시 넘어갔다”, 시사저널 1085호, (주) 시사저널미디어, 2010. 8. 10.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남조선에 끌려간 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 2004년 8년 18일자.
- 조선일보, 2003년 6월 20일자.
- 주성하, “北 국경부근 탈북가족 수용소에 격리”, 동아일보, 2011. 4. 9.
- 중앙일보, 2001년 6월 27일자.

중앙통신,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2010년 3월 23일자.
 차대운, “탈북자 열에 넷은 강제 복송됐다 다시 탈출”, 연합뉴스, 2010년 4월 26일자.
 최덕성, “통일보다 더 시급할 일”(http://blog.daum.net/gajach, 2007년 5월 7일 검색).
 최승진, “무국적 탈북 고아, 최대 1만 5천명 추산”, CBS 노컷뉴스, 2008년 10월 6일자.
 최재천(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재외탈북자의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2006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06년 10월 25일.
 최정호, “권력 세습 앞둔 김정은, 탈북자 사냥으로 군기 잡기 나서나”, 헤럴드 경제 (http://biz.heraldm.com), 2011. 5 1.
 최철호, “유엔, 난민지위 부여로 탈북자 美 영주권 취득”, 뉴시스, 2009년 09월 17일자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CNKR 소식, 2004. 10. 18~11.2(http://www.cnkr.org, 검색일: 2007.10.1).
 평양방송, 인민보안성·국가안전보위부 연합성명, 2010년 2월 8일 3일자
 한겨레신문, 2005년 1월 12일자.
 MBC, 2006년 3월 31일자.

4. 인터뷰 및 탈북자 증언 자료

2009년 9월 16일, “북한구원운동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사무처장 송부근 목사 인터뷰.
 강제송환 탈북여성 김금춘(40), 2011년 6월 21일 인터뷰.
 경찰청 보안1과, 살맛나는 대한민국입니다(북한이탈주민 안보체험 수기모음집), 경찰청, 2010.
 대한변호사협회, 2008 북한인권백서, 2008.
 리준하, 교화소 이야기, 시대정신, 2008.
 박홍순 외, 북한정치범수용소 실태조사(강제송환·강제실종 포함, 2009 북한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09.
 영등포교도소 수용 탈북 재소자 강○○ 등, 2009년 6월 20일 인터뷰.
 천주교 ○○교구 민족화해위원회에서 하나원과 연계하여 2011년 6월 2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새터민가정체험’ 1박2일 프로그램에 멘토로 참여한 ○○성당 신자 ○○ ○ 마태오, ○○○ 스테파노 등 10명과 면담.
 탈북자 김○○(남), 2011년 6월 2일 면접.
 탈북자 김○○(여), 2011년 6월 2일 면접.
 탈북자 김○춘(여), 2011년 6월 2일 면접.

탈북자 김진수(가명), 2010년 1월 20일 인터뷰

탈북자 김혁, 2009년 6월 11일 심층면접.

탈북자 박○○(여), 2011년 6월 2일 면접.

탈북자 안용범(가명), 2009년 7월 15일 인터뷰.

탈북자 이○○(남), 2011년 6월 2일 면접.

탈북자 이○○(여), 2011년 6월 2일 면접.

탈북자 전○○(여), 2011년 6월 2일 면접.

탈북자 차○○(여), 2011년 6월 2일 면접.

탈북자 한○○(여), 2011년 6월 2일 면접.

5. 외국문헌

AI, “*Amnesty International Delegation Visits North Korea, Discusses Legal Reforms and Prisoner Cases*”, 1995.5.11.

International Crisis Group, “*Perilous Journeys: The Plight of North Koreans In China And Beyond*”, *Policy Report*(October 2006).

M.S. Teitelbaum, “*Right Versus Right: Immigration and Refuge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Foreign Affairs*, Vol.59,1980.

Norma Kang Muico, “*An Absence of Choice: The Sexual Exploitation of North Korean women in China*”, *Anti-Slavery International*, 2005.

US State Department, *The Status of North Korean Asylum Seekers and the USG Policy Toward them*, February 16, 2005.

Yoonok Chang,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Migration Experiences of North Korean Refugees Survey Evidence from China*,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rking Paper Series*(March 2008).

<부 록>

I. 북한 탈북자 비난 및 위협 보도 자료 원문

1.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담화

중앙통신, 2010년 3월 23일

최근 괴뢰보수패당은 반공화국대결모략책동에 환장이 된 나머지 월남도주자들을 비롯한 온갖 인간쓰레기들까지 그 돌격대로 내몰아 내외의 조소거리로 되고 있다.

괴뢰보수패당은 월남도주자 어중이떠중이들을 《미래통일력량》이니 뭐니 하면서 규합하여 그 무슨 《자유북한운동연합》이니, 《NK지식인련대》니 하는 반공화국모략단체들을 조작해내고있는가 하면 《통일인련대》라는 정당결성준비위원회를 내오고 《지방자치제선거》에도 내세우려는 가소로운 놀음을 벌리고 있다.

뿐만아니라 다른 대북협력예산들은 줄이면서도 《탈북자지원》 예산은 대폭 늘이고 《탈북자》들에 대한 세뇌, 모략교육의 거점인 《하나센터》라는것을 남조선 각지에 더 많이 내오며 《통일부》 장관 현인택을 비롯한 당국관계자들이 도주자떨거지들을 찾아다니며 《축하》요, 《격려》요, 《지원》이요 하는 역겨운 추태를 부리고 있다.

한편 《탈북자》들을 내세워 《북한개혁방송》이니, 《열린 북한방송》이니, 《데일리 NK》이니 하는 각종 대북모략선전간판들을 내달고 우리에게 대한 악담을 피대돌구어 불어대게 하는가 하면 그들이 괴뢰군부대들과 해외에까지 돌아치면서 그 무슨 《안보강연》과 《인터뷰》, 《토론회》같은데 나서서 공화국을 헐뜯게 하며 빠라살포놀음과 함께 《가극》과 《예술단》 공연, 소설 및 수

기창작 등 일빠진 반공화국광대극도 연출하게 하고 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괴뢰패당이 인간쓰레기들을 긁어모아 대북정탐모략행위에 피눈이 되어 날뛰면서 북내부형편이 어찌고저찌고 떠들다 못해 무엄하게도 우리 최고수뇌부를 모독하는것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우두머리들은 변절자, 도주자들을 백악관과 국회에 끌어들여 만나주고 그 무슨 《상》을 주는 놀음을 벌리는가 하면 미국의 반공화국인권모략단체들이 《탈북자》들의 활동을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해주고 있다. 일본반동들 역시 남조선에 있는 인간쓰레기들을 찾아가 만나거나 《초청》놀음을 벌리고 그들이 붙어대는 잡소리들을 그대로 받아물고 공식언론을 통해 모략보도를 날리는 등으로 반역자들의 등을 떠밀어주고 있다.

괴뢰보수패당과 미일의 비호밑에 남조선과 미국으로 도망간 인간추물들은 때를 만난듯이 그들이 던져주는 몇푼의 돈을 받아먹으며 너절한 목숨을 유지해보려고 반공화국모략책동에 적극 가담해나서면서 별의별 험담을 다 내뱉고 있다.

원래 변절자, 배신자들이 췌치는 소리란 더러운 잔명을 부지하기 위해 발라 맞추면서 꾸며낸것이므로 공신력이 전혀 없는 허위날조된 잡소리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일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까마귀 하루에 열두번 울어도 까옥소리뿐이라고 인간폐물들의 입에서는 악취 풍기는 독설밖에 나올것이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추악한 반역행위로 하여 정치적산송장이 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인간추물들이 뭐라고 지껄여대는것이나 그런자들에게 의존하여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매달리고있는자들이나 다 같고같은 가련한 존재로서 그들의 가공한 처지를 보여줄 뿐이다.

미국과 괴뢰패당은 인간쓰레기들에 대해 그 무슨 《난민》이니 뭐니 하며 《인권》의 미명하에 생각이나 해주는 듯이 놀아대지만 이른바 《탈북자》라는 것들이 공화국에서 죄를 짓고 달아난 범죄자들이거나 일신의 안락을 위해 가족과 부모, 형제, 친지들을 버리고 조국을 배반한 추악한 민족반역자, 너절한 속물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한때는 무료교육, 무상치료 등 고마운 사회주의시책이 좋다고 만세를 부르다

가 내외원썩들의 발악적책동으로 생활이 좀 어렵게 되자 배은망덕하게 저혼자 살겠다고 공화국의 품과 가족을 버리고 달아난 《탈북자》들이야말로 한조각의 인간의 량심과 도의마저 저버린 이 세상에 가장 더럽고 저주받을 추물중의 추물이다.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발광하는 괴뢰패당과 미일반동들이 오죽 궁했으면 물에 빠진자 짚오래기 잡는격으로 이런 인간오물들에게까지 매달리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겠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와의 대결에서의 쓰디쓴 참패를 의미할뿐이다. 《탈북자》와 같은 인간쓰레기가 없으면 없을수록 우리 공화국이 더 깨끗이 정화되고 우리 인민들의 일심단결이 더욱 굳건해질것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괴뢰패당과 미국, 일본은 제 체면이나 떨구고 조소거리로나 되는 수치스러운 회유, 유인, 랍치, 악선전리용과 같은 비렬한 놀음에 계속 매달린다면 불미스러운 일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자기를 키워준 품도, 자기 제도, 자기 생활의 파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피를 물고 달려드는 원썩의 편에 도망가 안기고 원썩을 도와 반공화국 악선전의 돌격대로 나서는 너절한 변절자, 배신자, 도주자들은 앞으로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첫째가는 처단대상으로 될것이라는것을 위임에 따라 공화국과 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경고한다.

우리 인민과 온 민족은 괴뢰보수패당과 미일반동들의 너절한 반공화국모략책동과 내외반통일분자들의 앞잡이들로 전략된 추악한 인간쓰레기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주체99(2010)년 3월 23일 평 양

2.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연합성명

평양방송, 주체99(2010)년 2월 8일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와 나라의 안전을 해치려는 반공화국광신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개버릴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는 8일 연합성명을 발표하여 극도에 이른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체제전복시도에 대처하여 그를 짓부시기 위한 전면적인 강력조치를 취하는 등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연합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근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체제전복시도는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민족의 존엄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외세에 추종하여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제거해보려는 «선택폐기»책동은 더욱더 집요하게 벌어지고있으며 우리의 신성한 령해, 령공, 령토에 대한 군사적도발과 체제전복을 노린 정탐모략소동은 극도에 이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조선서해에서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고수를 노리고 벌리고있는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모험적인 군사적준동이고 전연과 해안, 국경지역을 통하여 감행하고있는 분별없는 «대북내부교란»작전이다.

날을 따라 더욱 우심해지고있는 반공화국뼈라살포행위만 하여도 전연으로부터 중심으로 확대되고있으며 온갖 정탐력량과 수단이 투입된 어리석은 체제전복책동은 우리 나라 주변으로부터 내륙지대깊이까지 뻗치고 있다.

여기에는 남조선의 «국정원»과 «기무사»를 비롯한 악명높은 정탐모략기구들이 들격대로 나서고있으며 «국방부»와 «통일부», «외교통상부»를 포함한 당국기관들, 이들의 직접적인 조종과 지휘를 받고있는 군부호전집단들과 극우보수세력들, 지어 사람으로 살기를 그만두고 오물장으로 밀려간 인간쓰레기들까지 동원되고 있다.

모든 움직임은 남조선당국이 있을수도 없는 우리의 그 무슨 «급변사태»를 의도적으로 조장하면서 이미 완성한 «작전계획 5029»와 «비상통치계획-부흥»을 실행하는 길에 들어섰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일심으로 뭉치고 선군으로 위력한 필승불패의 우리 제도를 감히 건드려보려는 남조선당국의 무모한 책동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치솟는 증오와 분노를 백배해 주고 있다.

수수방관할수 없는 현 사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과 국가안전보위부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천명한다.

1. 우리의 인민보안 및 안전보위군은 존엄높은 사회주의체제전복과 내부와해를 노린 어중이떠중이들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이며 반평화적인 책동을 짓뭉개버리기 위한 전면적인 강력조치를 취할 것이다.

민족을 등지고 나라에 화를 몰아오는 역적무리들은 이 나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살아 숨쉴 곳이 없다.

2. 온갖 적대세력들의 준동으로부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백두산혁명강군의 총대는 물론 인민보안 및 안전보위군의 모든 역량과 수단이 총동원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다 말하지 않고 다 공개하지 않은 최첨단의 세계적인 타격역량과 안전보위수단이 있다.

3. 남조선당국은 역대 반공화국대결광신자, 민족반역자들의 쓰디쓴 말로를 뒤따르지 않으려거든 민족적화해와 협력, 평화통일과 번영에 역행하는 모든 모략기구들과 당국기관들을 즉시 해산하고 그 주모자들을 민족공동의 이름으로 매장해버리기 위한 응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대세의 흐름을 가로막기 위해 발광하고있는 온갖 불순세력들을 쓸어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정의의 보복성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고 나라의 안전과 인민의 행복을 보위하는것은 억만년 변함없는 우리 인민보안 및 안전보위군의 첫째가는 사명이고 본분이다.

남조선당국은 통일조국의 그날 «현대판 을사오적»이 되어 민족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으려면 더 늦기전에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주체99(2010)년 2월 8일 평양

3. 남조선에 끌려간 동포에게 보내는 편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남조선에 끌려간 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 2004년 8월 18일

남조선으로 끌려간 동포형제들! 우리는 나서자란 정든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의 곁을 떠나 혈육 한점 없는 외진 남조선으로 끌려간 당신들에게 아픈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낸다. 당신들은 자기를 낳아 키워준 어머니조국을 등지고 떠난 ‘탈북자’나 ‘망명자’가 아니다. 당신들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유인모략책동에 걸려들어 강제로 끌려간 동포형제들이다. …(중략)…

당신들은 결코 남조선에 가고싶어서 간 사람들이 아니다. 몇 푼의 돈이라도 벌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 위해 나라지경을 넘어섰던 당신들이었다. 그런데 당신들은 불행하게도 미국의 사측밀에 계획적으로 다른 3국에 파견된 남조선의 유괴범들에 의해 강제로 남조선으로 유인납치되어 갔다. 당신들은 이국당을 방황하던 그 고달픈 나날들에 돈과 물건을 뿌려가며 남조선으로 가면 팔자를 고칠 것처럼 유혹하는 자들의 감언이설에 속아 암흑의 세상으로 끌려가지 않았던가.

우리는 당신들이 절대로 조국과 민족 앞에 죄를 지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구태여 당신들에게 어떠한 죄도 물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당신들을 끝까지 믿고 언제나 따뜻한 동포애로 대할 것이다.…(중략)…

우리는 남조선에 끌려간 모든 동포형제자매들이 나서자란 공화국의 품에서 새겨안은 참다운 공민적 양심과 의리를 저버림 없이 부모처자들이 기다리는 공화국의 품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돌아오는 용단을 내릴 것을 호소한다. 사랑하는 공화국과 그리운 고향의 품으로는 집단적으로 와도 좋고 개별적으로 와도 좋을 것이다. 누구든지 따뜻이 맞이하고 환영해 마지 않을 것이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차 돌아올 경황이 못되는 사람이라면 공화국의 품을 굳게 믿고 통일의 그날 고향의 부모형제, 처자들과 몇몇이 만날 수 있도록 애국으로 사는 길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중략)…

우리는 남조선에 유인납치되어 간 동포형제들이 자주통일의 그날을 확신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한 의로운 애국의 길에 결연히 펼쳐 나서리라는 것을 믿는다.

II. “휴먼라이츠워치(HRW) 『북한 도강자(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정책』 보고서 원문

* 출처: 휴먼라이츠워치(HRW) 인터넷 리뷰, 2007년 3월 5일
(<http://www.hrw.org/en/news/2007/03/06-1>; 2011.5.20 검색)



March 2007

Number 1

북한

도강자(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 정책

개관.....	1
도강자들에 대한 강화된 처벌.....	3
한국인 또는 선교사 접촉에 대한 가중 처벌 계속	5
구금 시설에서의 학대.....	6
도강자 처우에서 북한의 국제법 위반.....	8
권고사항	9
휴먼라이츠워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9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9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최대 원조국이었던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들, 국제 단체들, 원조 제공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한다.....	10

개관

북한 정부는 당국의 허가 없이 중국 쪽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거나 중국이 강제로 송환한 주민들에 대한 처벌정책을 강화해 왔다. 2004년 11월 경까지, 많은 경우 식량을 찾기 위해 국경을 넘은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심문이 끝난 직후 혹은 길어야 몇 달간 로동단련대에서 복역한 후 석방되었다. 이는 불법 도강(탈

북)을 반역 행위로 간주하는 북한의 기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었다.¹⁾ 휴먼라이츠워치의 최근 인터뷰는 이러한 상대적으로 관대한 정책이 끝났음을 시사한다. 2004년 말 북한은 도강자들을 징역 5년까지 엄중 처벌한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북한에서 구금된 사람들은 누구나 구타, 강제노동, 일반 주민들 보다 훨씬 심한 굶주림을 포함하는 인권 침해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정책 변화는 남한 정부가 2004년 여름 베트남에서 468명의 북한 난민을 재정착 목적으로 남한으로 이송한 후에 일어났다. 북한은 그들의 송환을 요구했으며, 그 후 10개월간 남한과 모든 대화를 단절했다. 이들 난민이 한국에 도착한 직후, 북한의 공식 기관언론인 조선중앙통신은, 대남 관계를 담당하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인용, “남조선 당국이 백주 대낮에 북조선 주민들에게 자행한 계획적인 유인, 납치, 테러”라고 말했다. 이 성명은 또한 한국이 미국 의회와 공모했다고 비난했다. 미국 의회는 이 사건이 있기 바로 며칠 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을 통과시켜, 미국이 북한 난민을 받아들여 재정착 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²⁾ 북한은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촉진한다는 구실로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³⁾

강화된 처벌과 관련하여, 적어도 2006년 초 이후 북한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조직된 인민반회의, 포고, 방침, 그리고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경고를 통해,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반면, 국경 지역의 일부 중국 당국자들과 거주자들은 북한에서 식량 부족이 계속되는 가운데 2006년-2007년 겨울 및 그 이후에 북한 주민들의 새로운 대거 탈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⁴⁾ 만연된 식량부족

1) 식량을 찾아 떠난 사람들을 관대하게 대하겠다고 약속하는 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처벌이 약화되었으며, 2000년 2월 16일자로 발효되었다. 이 교시에 따라 대부분의 도강자(탈북자)들이 몇 일 또는 길어도 몇 달 후에 석방되었다. 참조 : 휴먼라이츠워치, 보이지 않는 탈출 : 중국 내의 북한인들(The Invisible Exodus : North Koreans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vol. 14, 8(C), 2002년 11월, <http://www.hrw.org/reports/2002/northkorea/>, p.21.

2) “북한, 한국을 난민들에 대한 테러범이라고 비난,” 로이터 통신, 2004년 7월 29일.

3) “북한 당국, 미국의 인권 정책 맹비난”, KBS Global, 2005년 11월 5일. http://english.kbs.co.kr/news/newsview_sub.php?menu=8&key=2005110501(2007년 2월 13일 확인)

은 2006년 7월 북한의 7개 탄도 미사일 시험 발사에 따른 남한의 식량 원조 중단에 의해 더욱 악화되었으며, 더 많은 주민들이 식량과 다른 생필품을 찾아 국경을 넘도록 만들었다.⁵⁾

이 보고서에서 논의되고 인용되는 북한 주민들은 난민, 망명 요청자, 탈출자 또는 다른 용어가 아닌, 일반적으로 “도강자(border crosser)”⁶⁾로 칭한다. 다른 각각의 용어들은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의 일부를 지칭할 수 있으나 전부를 대표하지는 못한다.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인도주의 구호 종사자들에 따르면, 중국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이르는 북한 주민들이 있다. 그들 중에는 정치적, 종교적 박해로부터 피신한 사람들, 중국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들, 인신매매의 희생자가 된 사람들,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 (대부분의 경우 허가 없이) 임시로 중국을 방문했으나 귀향할 의도를 가진 사람들, 식량 부족과 다른 경제적 이유로 탈출한 사람들, 그리고 장사를 위해 비밀리에 혹은 국경 경비대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기적으로 도강하는 상인들이 포함된다.

북한은 1991년 9월 이후 유엔의 회원국이며, 1981년 12월 이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CCPR)의 가입국이다.⁷⁾ 북한은 주민들이 자의에 의해 북한을 떠나고 또한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허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는 또한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났다는 것 이외에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은 도강자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할 책임을 수반한다.

중국은 생명의 위협, 고문 및 기타 학대의 위협, 또는 기타 심각한 인권 침해

-
- 4) 국경 지역의 한 중국인은 지역 당국으로부터 올 겨울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예상되고, 따라서 모든 주민들은 탈북자들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북한 쪽 국경 지대에 살고 있는 한 거주자와 2006년 11월 28일 인터뷰.
 - 5)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 대표 장-피에르 드 마저리(Jean-Pierre de Magerie)는 일반 주민들, 특히 어린이들이 1990년대 기근 이후 가장 굶주린 겨울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제프리 요크(Geoffrey York), “캐나다인이 북한의 굶주림을 위해 싸우다”, Globe and Mail (Toronto), 2006년 12월 9일.
 - 6) 북한 당국은 그들을 도강자라고 부르며, 이는 문자 그대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만, 많은 경우 “border crosser,” 즉, 국경을 넘는 사람들, 탈북자로 번역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 두 개의 강으로 이루어져있다. 여름에는, 장마철 직전, 일부 지역에서 걸어서 강을 건널 수 있을 정도로 물이 얕아진다. 겨울에는 강물이 얼고 따라서 얼음 위로 걸어서 도강한다.
 - 7)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CCPR), 1966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 1976년 3월 23일 발효.

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말아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가 있다. 강제송환금지(nonrefloutment)의 원칙으로 불리는 이 의무는 1951년 난민 협약(Refugee Convention)과 그에 따른 1967년 의정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중국은 1982년 이후 두 협약 모두의 가입국이다.⁸⁾ 중국 당국은 그러나 북한 주민들을 일괄적으로 불법적인 경제 이주자로 분류하고, 체포와 송환을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다. 이는 난민들을 보호하고 쉼터를 제공하고 고문 및 학대가 있는 지역으로 송환하지 말아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에 전적으로 반하는 행위이다.⁹⁾

* * *

2006년 11월 말과 12월 초 휴먼라이츠워치는 2006년 7월 중순에서 12월 초 사이에 중국에 도착한 16명의 북한인 도강자들을 인터뷰했다. 그 수는 작지만, 그들은 8개의 다른 지역 출신들이며, 도강을 하던 중 체포되거나 중국에서 송환된 사람들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증언을 휴먼라이츠워치에 제공했다. 그들과 가족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이 보고서의 모든 인터뷰 대상자들은 성별, 나이, 출신 지역만 표시한다.

중국 당국은 북한 주민들을 돕는 일부 구호 종사자나 선교사들을 박해하고 구금하기까지 한다. 그러한 정책들과 관행들은 중국에 있는 북한 주민들과의 만남을 어렵게 하는데, 그들 대부분이 낯선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을 두려워하며 숨어 살기 때문이다. 이는 휴먼라이츠워치가 이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대거 탈출하리라는(중국국경지역 주민들의) 예상이 현재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을 뜻한다.

도강자들에 대한 강화된 처벌

최근의 도강자들에 따르면, 2004년 말 이후 북한 정부는 북한 전역의 주민들에게 향후 도강자들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징역에 처해질 것이라는 경고를 해왔다. 그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정부는 1년에서 5년까지 이르는 다양한 징역 기

8)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1954년 4월 22일 발효.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 1967년 10월 4일 발효.

9) 더 자세한 내용은 휴먼라이츠워치의 보이지 않는 탈출(The Invisible Exodus) 참조.

간을 암시해 왔다. 북한 당국자들은 수많은 집회를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경찰과 공안원들을 통해 새로운 정책을 공고함으로써, 주민들이 북한을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강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관대했던 정책이 악화되었음을 반영한다. 2000년에서 2004년 말 사이에 체포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이나 선교사들 혹은 구호 종사자들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심문이 끝난 후 또는 몇 개월간 로동단련대에서 복역한 후 석방되었다. 남한 사람들이나 선교사들 혹은 구호 종사자들과 접촉한 경우 처벌이 가중되며, 몇 개월에서 무기 징역까지 이를 수 있다.¹⁰⁾

휴먼라이츠워치가 인터뷰한 북한 주민들에 따르면 새로운 정책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북한을 떠난 이유, 또는 북한 밖에서 무엇을 했는가 또는 중국에서 누구를 만났느냐에 상관없이 모두 다 징역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삼수 출신의 32세 여성은 “이제는 도강자들이 교화소 3년형에 처해진다는 걸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중국에서 특별히 나쁜 짓을 안했으면 풀어주곤 했습니다.”라고 말했다.¹¹⁾ 휴먼라이츠워치가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모든 지역 당국자들에 의해 엄격히 지켜지는지, 그리고 그러한 당국자들이 형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히 어느정도의 결정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국자들은 우선 북한 주민들에게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나 규정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정기적이고 의무적인 모임인 인민위원회를 통해 이 새로운 정책들을 공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산 출신의 한 남자는 “도강자들이, 특히 전 가족이 도강을 시도했을 때, 엄중히 처벌될 것이라는 얘기를 인민위원회에서 들었습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이제는 초범이라도 징역 1년에서 5년을 받습니다.”¹²⁾ 회령 출신의 또 다른 남성은 “올해[2006년] 10월에 모든 도강자들이 최소 2년의 징역에 처해질 거라는 당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초범인 경우 6개월간 로동단련대에 보내졌었습니다. 인민위원회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적인 교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고 말했다.¹³⁾

10) Ibid., pp. 21-22.

11) 휴먼라이츠워치와 삼수 출신 32세 여성과의 인터뷰, 2006년 11월 28일, 중국.

12) 무산 출신의 30대 남성, 2006년 11월 28일, 중국.

일부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했다. 평양 출신의 한 젊은 남성은 휴먼라이츠워치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도강을 하기 전에 이틀간 회령에서 인민위원회에 참가했습니다. 당국자들은 국경을 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게 했고, 서약을 어길 경우 전 가족이 강제 이주를 당할 거라고 했습니다. 당국자들은 올해[10월] 초부터 초범이라도 교화소[정규 교도소] 5년형에 처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¹⁴⁾

인터뷰 대상자들은 저마다 서로 다른 시기에 이 새로운 정책에 대해 들었다. 평양 출신의 50대 여성은 그 정책이 예를 들어 위에 인용한 남성이 언급한 2006년이 아니라 2005년에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고 말했다.¹⁵⁾ 다른 인터뷰 대상자들의 말을 토대로 하면, 지난 수년간 사실상 반복적인 경고가 있어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새로운 정책이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인 변화임을 반영한다. 이에 대해 청진 출신의 한 여성이 좀 더 상세히 증언했다. “2005년 2월 모든 도강자들이 교화소에 보내질거라고 들었습니다. 2006년 3월 또는 4월에 인민위원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¹⁶⁾

또 다른 인터뷰 대상자는 그러한 경고가 일반인뿐만 아니라 돈을 받고 도강자들을 돕는 국경 경비대원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2004년 11월 27일에, 그 해 7월에 북한 주민들이 남한으로 귀순한 사건에 대응해서 도강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그들 모두를 교화소로 보내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공안원들에게 들었습니다. 2006년 7월에는 도강을 시도한 사람도 엄중 처벌하라는 또 다른 지시가 있었습니다. 도강을 돕는 국경 경비대원들은 군사 재판에 회부되거나 불명예 제대를 당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¹⁷⁾

인터뷰 대상자들 중 누구도 군사 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해주지는 못했지만, 한국의 온라인 뉴스 매체 데일리 NK(Daily NK)는 2006년 8월 남한 출신의 국군포로인 것으로 믿어지는 한 남자의 도강을 도운 혐의로 국경 경비대

13) 회령 출신의 38세 남성, 2006년 11월 27일, 중국

14) 평양 출신의 27세 남성, 2006년 11월 30일, 중국.

15) 평양 출신의 50대 여성, 2006년 11월 28일, 중국.

16) 청진 출신의 66세 여성, 2006년 11월 29일, 중국.

17) 원산 출신의 59세 여성, 2006년 11월 30일, 중국.

소속의 군인 3명이 처형당했다고 보도했다.¹⁸⁾ 또한 데일리 NK는 최근 북한내의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하여, 돈을 받고 도강을 도운 혐의로 또 다른 두 명의 군인이 2007년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 이후에 처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¹⁹⁾

남한의 인도주의 구호 단체 좋은 벗들(Good Friends)은 최근, 북한 당국이 국경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도강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경비대원들을 교체하고, 제대한 군인들을 지난해에[2006년] 도강을 도운 혐의로 체포하기까지 했다고 보도했다.²⁰⁾ 그와 별도로 데일리 NK는 북한 내의 확인되지 않은 취재원을 인용하여, 북한 당국이 도강을 도운 사람들을 잡기 위해 국경 보안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실행했다고 보도했다.²¹⁾

한국인 또는 선교사 접촉에 대한 가중 처벌 계속

중국에 있는 동안 선교사들과 접촉했거나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에 대해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원칙은 새로운 정책 하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건국 이후 북한 정부는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박해해 왔으며, 이들은 일반적으로 “적대 분자”로 분류되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 반혁명 제국주의 침략의 도구로 여겨졌다. 북한이 종교 활동을 억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주체 사상에 따른 김일성, 김정일의 우상화와 충돌하기 때문이다.²²⁾

18) 안윤숙, “북한, 8월 초 국경 경비대원 3명 처형,” 데일리 NK, 2006년 8월 29일.

19) 한영진, “두명의 국경 경비대원, 도강을 도운 혐의로 2월 말 처형될 것,” 데일리 NK, 2007년 2월 1일.

20) 좋은 벗들(Good Friends) 오늘의 북한소식, 2007년 1월 10일. 이 보도는 또한, 2006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중국 당국자들이 북한 주민들 및 범죄용의자들을 찾기 위해 국경 지역의 여관과 호텔에 대한 검문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21) 신주현, “북한, 4,000명의 국경 경비대 교체,” 데일리 NK, 2007년 1월 11일.

22) 1945년에 북한 인구 1900만 중 카톨릭, 불교, 개신교, 그리고 한국 토속 종교인 천도교를 포함해 2백만 명, 약 22,2%가 종교 활동을 했다. 1970년대까지 약 40만명의 종교 활동자들이 처형되거나 수감된 것으로 믿어진다. 생존자들 중 많은 수가 신앙을 철회하도록 강요 받았다. 1970년대에 북한은 종교 단체들을 창설했으나, 종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순수한 대표라기보다는 북한의 대외 선전 및 북한에 식량 등을 지원하는 남한 종교 단체들과의 연계를 위한 도구인 것으로 믿어진다. 통일연구소, 2006 북한 인권 백서, pp. 152-171.

셋별 출신의 한 여성은 새로운 정책의 이러한 측면이 발표된 적이 있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2004년 이전에는 도강자들은 두 달에서 석 달 간 로동단련대에 보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범은 교화소에서 1년, 두 번째는 3년입니다. (중국에 있는 동안) 교회에 다닌 사람은 10년간 관리소(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2004년 말 인민반회의에서 이 새로운 방침에 대해 들었습니다.”²³⁾ 무산 출신의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2005년 말, 도강자들을 다른 범죄자들과 똑같이 처리하라는 당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은 최하 3년형에 처해졌고, 별도의 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남한으로 가려다가 잡힌 사람들도 같습니다.”²⁴⁾

구금 시설에서의 학대²⁵⁾

북한 당국자들이 이제는 허가 없이 북한을 떠나는 행위를 보다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면서, 몇몇 인터뷰 대상자들은 도강자들이 현재, 일반적으로 비교적 경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로동단련대가 아닌, (더 가혹한 체제의) 교화소, 즉 정규 교도소로 보내진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금 시설의 유형에 상관없이, 북한 주민들은 수감자들이 특히 나체 수색, 언어 폭력, 위협, 구타, 강제 노동, 식량과 의약품의 심각한 부족을 겪는다고 휴먼라이츠워치에 말했다. 고문 및 기타 잔인하고 모욕적인 대우가 만연된 것으로 보이며, 북한에서는 체포 및 심문에서 복역에 이르는 구금의 전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인터뷰 대상자들 중 일부는 개인적인 구금의 경험을 가지고 있

23) 셋별 출신의 40세 여성, 2006년 12월 1일, 중국

24) 무산 출신의 33세 여성, 2006년 11월 26일, 중국.

25) 북한의 구금 시설의 주요 유형으로는 집결소, 로동단련대, 교화소, 관리소가 있다. 집결소는, 문자 그대로 모이는 장소이며, 무단 결근과 같은 경범죄에 대해 심문을 받고, 판결을 기다리거나, 일년까지 짧은 형을 복역하는 곳이다. 로동단련대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비교적 가벼운,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수용한다. 교화소는 비정치적인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구금 시설이다. 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관리소로 보내진다. 통일연구소, 2006 북한인권백서, 2006년 3월, pp. 45-57.

다. 2006년 집결소(판결을 기다리는 임시 구금소)에서 몇 달을 보낸 적이 있는 한 여성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먹고, 세수하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움직이지 않고 똑바로 서 있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움직이면 처벌을 받았어요. 쓰러질 때까지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게 하거나, 감옥 창살에 매달리게 하거나, 창살에 머리를 부딪히게 했어요. 때로는 한 사람이 못하면 다 같이 처벌을 받았어요. 경비대원들은 사람들을 자주 구타하곤 했습니다. 몽둥이나 허리띠를 사용해서요. 조금이라도 말을 안 들으면 수감자들을 때리고 발로 찼습니다.²⁶⁾

또 다른 북한 주민은 그녀가 2006년 상반기에 로동단련대에서 목격한 학대에 대해 설명했다. “한 여자가 강제로 앉았다 일어서기를 100번쯤 하는 걸 봤어요. 여자는 입에 하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마사지 했고, 그러자 다시 정신이 돌아 왔습니다.”²⁷⁾

북한에서는 어떤 유형의 구금 시설로 보내졌는가에 상관없이, 몇 달 혹은 몇 년의 구금 기간의 차이가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만성적인 식량 및 의약품 부족에 기인한다. 구금소의 경험이 있는 몇몇 북한 주민들은 “옥수숫대 가루 한 줌”이 일반적인 한 끼이며 그것이 복통과 설사를 일으킬 때가 많다고 설명했다. 우리가 인터뷰한 한 노인 여성은 “집결소이건, 로동단련대이건, 교화소이건, 다 똑같습니다. 모두 다 먹을 걸 아주 조금 밖에 안줘요. 2005년 2월에 보안서 감옥에 있을 때 한 끼에 옥수숫대 가루 한 줌을 받았어요. 먹을 게 충분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²⁸⁾ 라고 증언했다.

혜주 출신의 또 다른 여성은 “수용소에는 약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매일 시체가 실려 나가는 걸 봤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들 중 대부분은 옥수숫대 가루를 먹고 일주일 정도 설사를 앓은 후에 죽었어요. 수감자들이 하도 많이 죽으니까 시체를 비닐에 싸서 산에 묻었어요.”²⁹⁾ 라고 말했다. 회령 출신의 남성은 “로동단련대에 있는 동안 하루 세 번, 옥수숫대 가루 한 줌씩을 받았어요. 너무 적었어요. 영양이 전혀 없었죠. 일부는 영양실조 때문

26) 무산 출신의 33세 여성, 2006년 11월 26일, 중국.

27) 무산 출신의 33세 여성, 2006년 11월 26일, 중국.

28) 청진 출신의 66세 여성, 2006년 11월 29일, 중국.

29) 혜주 출신의 42세 여성, 2006년 2월, 중국.

에 집으로 보내졌어요.”³⁰⁾

도강자 처우에서 북한의 국제법 위반

도강자들을 처벌하는 북한의 정책은 자신의 나라를 떠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다. 세계인권선언(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3조 2항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나라를 포함한 어떤 나라에서든 떠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신의 나라로 돌아올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³¹⁾ 시민적, 정치적 권리 협약(ICCPR) 12조 2항은 “모든 사람이 자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에서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위에 설명된 구금시의 구타, 스트레스 포지션(stress positions, 특정 자세나 행동을 통해 육체적 고통이 가해지도록 하는 행위), 기타 폭력적인 물리적 처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협약에 보장된 기본권의 일부를 침해한다. 시민적, 정치적 권리 협약 7조는 “어는 누구도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욕적인 처벌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10조는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이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대우 받아야 하며 인간의 생득적 존엄성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북한은 1981년 9월부터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협약(ICESCR)의 가입국이다. 협약에 따라, 북한은 당국의 직접적인 통제와 관리를 받는 수형자들에게 적합한 (양의) 식량을 제공할 국제법적 의무가 있다.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는 일반 논평 1(General Comment 1)에서 적합한 식량의 접근을 가능하게 해야 할 당사국들의 의무를 상세히 설명한다. “개인 또는 집단이, 통제 불가능의 이유로 인하여, 임의의 방법을 따라 적합한 식량을 얻을 권리를 누릴 수 없을 때에는 언제든지 국가가 직접 그들의 권리를 실현시킬 의무가 있다.”³²⁾

30) 해주 출신의 42세 여성, 2006년 2월, 중국.

31) 세계인권선언(UDHR),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 13조 2항.

32) UN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의 이행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문제들,” 일반 논평 12, 적합한 식량의 권리(11조), E/C.12/1999/5(1999); [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3d02758c707031d58025677f003b73b9?Ope](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3d02758c707031d58025677f003b73b9?Ope)

위원회는 또한 일반 논평 3조 10항에서 “당사국이 최소 의무의 달성에 실패한 원인을 가용 자원의 부족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최소 의무를 실현하려고 노력하면서 당사국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한다.³³⁾

2006년 11월 유엔 총회는, 유엔 인권위원회(UN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여러 차례의 결의가 있는 후, 북한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에서는 사상의 자유, 결사, 이주, 조직화된 정치적 반대, 노동 운동, 종교의 자유 등을 포함한 여러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는 임의 체포, 고문, 적법 절차 및 공정한 재판의 결여, 처형이 포함된다. 국제적인 인권 단체들은 인권 침해를 조사하기 위해 북한에 입국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북한은 3년째 UN 북한 특별 보고관인 비티트 문타혼(Vitit Muntarbhorn)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권고사항

도강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생존을 위한 목적으로 국경을 넘는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는 행위를 불법화하고 송환된 사람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 권리중 하나인 자신의 나라를 떠날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다. 모든 주민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한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박해를 피하기 위해 혹은 북한 당국이 자국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의지 또는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국경을 넘는 가운데, 그러한 인권 침해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 다음과 같이 권고 한다.

ndocument (2007년 2월 13일 확인)

33)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 일반논평(General Comment 3), 당사국 의무의 성격 (2조, 1절),(1990), [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ESCR+General+comment+3.En?Open](http://www.unhchr.ch/tbs/doc.nsf/(symbol)/CESCR+General+comment+3.En?Open)

Document (2007년 2월 13일 확인)

- 모든 북한 주민들이, 특히 굶주림을 피할 목적인 경우, 나라 안팎을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허용하라.
-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중지하라.
- 범죄 용의자 및 수형자에 대한 학대를 중단하라.
- 북한의 인도주의 및 인권 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인권운동가들의 입국을 허용하라.
- 원조 제공자들이, 세계식량계획(WFP)이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과 빈도로 원조 배분을 감시하도록 허용하라.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중화인민공화국(중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북한 주민들의 체포와 송환을 중단하라.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UHCHR)이 국경 지역 및 중국 북동부 지역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조사하고, 난민 지위가 보장되는 제3국으로의 재정착을 촉진하도록 허용하라.
- 중국인과 결혼한 북한 여성들에게 합법적인 거주 지위를 보장하라.

휴먼라이츠워치는 지난 수년간 북한의 최대 원조국이었던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들, 국제 단체들, 원조 제공국가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권고한다.

- 영유아, 임신 및 수유 여성, 노인을 포함한 북한의 최취약 계층에 대한 식량 원조를 재개하라.
- 원조를 제공하는 가운데, 국제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과 빈도로 원조 배분 감시를 실행하고 목적인 수혜자들에게 식량이 전달되게 만들도록 허용할 것을 북한 정부에게 요구하라.
- 북한 국경 지역의 인도주의 구호 종사자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허용하도록 중국 당국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라.

책임연구보고서 2011-07

강제송환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 및 인권보호 개선방안

2011년 12월 20일 발행

발행인 : 한 광 일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남로 74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